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동향

김 용 현*

◆ 경기회복 조짐

- 1월 경기는 수출호조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회복(그림 1 참조)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년동기대비 1.3포인트 낮지만 2003년 8월 이후로 소폭 개선되고 있음.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
 - 1월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입·이직자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 보다 0.4% 증가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는 2.3%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수출액,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전년동기보다 5.6% 증가한 121.7을 기록
 - 2003년 1월 후행종합지수 또한 전년동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5.2% 상승한 123.0를 나타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2002	2003						200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1/4분기
						11월	12월	
선행종합지수 ¹⁾	108.6	108.1	106.7	108.7	110.5	110.5	111.0	111.4
동행종합지수 ²⁾	113.6	115.3	115.3	116.4	119.7	119.7	120.8	121.7
후행종합지수 ³⁾	115.5	117.4	118.9	120.3	121.6	121.6	122.1	123.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8	100.5	98.8	98.0	99.2	99.1	99.5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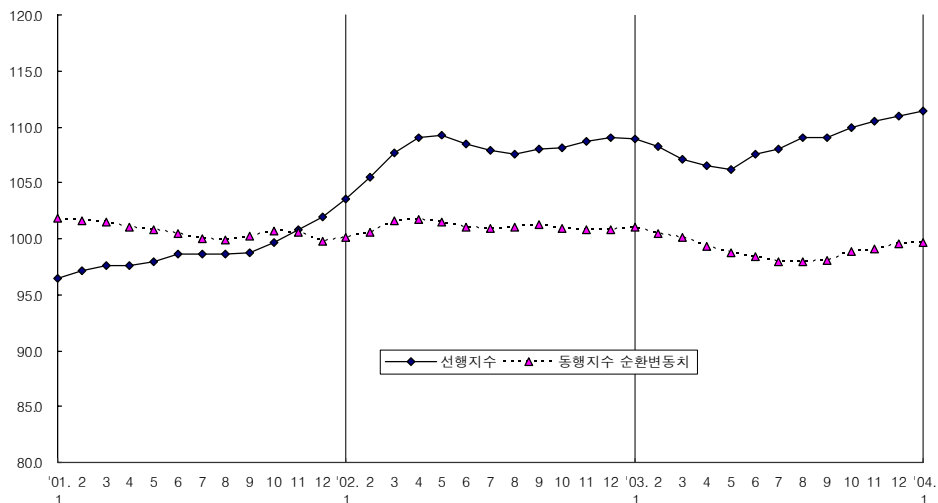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분기별 자료는 월별자료의 평균치임.

- 1) 선행종합지수란 사전에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장래의 경제활동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나 수입승인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 동행종합지수란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국민경제의 변동 그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
- 3) 후행종합지수란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기계류 수입액, 생산자 재고지수 등과 같은 지표들로 구성.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그림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 소비 감소

○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 도소매 판매는 115.8(2000=100.0)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9.8%), 소매업(-2.5%), 도매(-0.9%), 백화점(-13.6%)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 계절조정지수를 고려한 소비¹⁾는 전월에 비해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도매업에서 증가하여 1.8% 증가

○ 1월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02.1(2000=100.0)로 내구소비재(-12.9%)와 비내구소비재(-6.3%)에서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8.4% 하락

- 내구소비재에서 휴대용전화기, 싱크대 등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냉장고 등에서 감소하여 12.9% 감소
- 비내구소비재는 담배, 의약품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서적, 남녀기성복 등에서 감소하여 6.3% 감소

<표 2> 소비 동향

(단위 : 2000=100.0, 불변,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1/4분기
							11월	12월p	
도소매 판매	115.4 (8.3)	113.9 (-1.3)	113.4 (1.5)	113.4 (-1.7)	110.8 (-2.5)	118.0 (-2.2)	115.9 (-3.7)	121.0 (-1.2)	115.8 (-2.5)
내수용소비재 출하	111.1 (8.3)	104.5 (-5.9)	106.4 (-1.6)	103.2 (-7.4)	102.2 (-6.4)	108.7 (-6.5)	104.1 (-9.2)	111.9 (-2.7)	102.1 (-8.4)
내 구 재	120.6 (17.1)	106.7 (-11.5)	109.8 (-4.4)	109.4 (-12.6)	100.6 (-15.0)	106.7 (-13.8)	104.0 (-16.5)	106.7 (-10.7)	96.9 (-12.9)
비 내 구 재	106.9 (4.1)	103.4 (-3.1)	104.9 (-0.1)	100.3 (-4.6)	102.9 (-1.9)	109.7 (-2.7)	104.1 (-5.4)	114.3 (1.2)	104.5 (-6.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도소매업 판매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동태조사』에 기초하는 지수임.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1) 도소매 판매는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감안하여 전기대비 증감률을 계산할 때는 계절조정치를 기준으로 함(도소매 판매 계절조정지수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를 참조할 것).

◆ 투자 부진

○ 설비투자 부진

- 설비투자지수는 100.4(1995=100.0)로 정밀기기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1% 감소
-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조선, 영상음향통신 및 부동산서비스업) 및 공공부문(주택용 엘리베이터, 철도 배전용 차단기)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 건설투자 둔화

- 지난 2년 동안 호조를 보인 건설경기는 1월 들어 둔화되고 있음.
-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도로교통, 주택, 철도궤도) 발주는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주택, 사무실, 학교병원) 발주는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
- 국내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에서 발주된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7.4% 증가
- 국내 건설기성의 공종별로는 건축공사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증가하여 17.5%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일반토목 등이 감소하여 8.2% 감소

<표 3> 투자 동향

(단위 : 1995=100.0, 십억원,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4/4분기
							11월	12월	1월p
설비투자지수	123.0 (1.6)	117.3 (-4.6)	120.3 (-3.4)	121.1 (-3.7)	108.6 (-7.0)	119.3 (-4.7)	115.1 (-8.3)	123.2 (-1.6)	100.4 (-3.1)
국내기계수주	24,511 (21.0)	22,436 (-8.5)	5,574 (-16.8)	5,758 (-3.4)	5,458 (-7.5)	5,643 (-5.0)	1,707 (-10.8)	1,864 (-9.1)	2,054 (13.2)
국내건설수주 ¹⁾	67,834 (33.0)	83,072 (22.5)	16,520 (3.3)	24,320 (50.5)	18,814 (47.6)	23,418 (2.1)	6,261 (-14.8)	10,958 (6.7)	4,492 (-14.3)
국내건설기성 ²⁾	56,216 (11.2)	66,775 (18.8)	14,035 (20.7)	16,497 (18.4)	16,082 (17.9)	20,161 (18.6)	6,193 (12.2)	8,053 (24.4)	4,871 (7.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1), 2)는 민간유치사업과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 포함.
설비투자지수는 1995=100.0으로 산출된 지수이며, 나머지는 경상금액임.

1) 국내 건설수주란 일반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국내 건설기성이란 국내 건설공사기성액(도급공사액과 직영공사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 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1.

◆ 수출입 증가세 확대

- 2004년 2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9% 증가한 194.6억달러 기록
 - － 1988년 8월의 수출증가율(52.6%) 이후 최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월 수출규모로는 사상최대치
 - － 2월 중 일평균 수출액은 8.5억달러로 전월에 이어 3개월 연속 8억달러대 기록
 - － 품목별로는 반도체(75.6%), 선박(49.4%), 무선통신기기(48.1%), 컴퓨터(50.5%), 자동차(60.5%) 등 주요 품목이 모두 40% 이상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 －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급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EU·아세안·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세 기록
- 2월 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6% 증가한 174.1억달러 기록
 - － 원자재가격 상승과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폭이 확대된데 기인하여 수입액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
 - － 원자재는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증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원유는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
 - － 소비재는 소비심리의 회복세에 따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전월(1.6%)에 비해 다소 호전
 - － 국가별 수입은 일본이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한 28.2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미국(15.2억달러, 2.8%) 중국(12.6억달러, 29.7%)순임.
- 평균환율은 전월대비 1.4% 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1,166.2원 기록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2004	
							12월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수 출 액	162,471 (8.0)	193,817 (19.6)	43,036 (20.7)	46,053 (14.4)	47,828 (15.9)	56,900 (25.6)	19,729 (31.3)	18,999 (32.7)	19,460 (45.9)
수 입 액	152,126 (7.8)	178,827 (17.5)	44,223 (30.9)	41,711 (12.2)	42,971 (10.5)	49,922 (18.1)	17,624 (22.0)	16,122 (11.2)	17,409 (25.6)
평 균 환 율	1251.2	1191.9	1,202.5	1,208.8	1,174.7	1,181.8	1,191.9	1,182.2	1166.2

주 : 통관기준(수출액(FOB), 수입액(CIF)), 수출·수입액은 산업자원부 자료, 평균환율은 종가기준임.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4년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4. 2.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생산 증가세 지속

- 1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 자동차(-9.2%), 사무회계용기계(-20.6%)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53.8%), 영상음향통신(16.2%) 등이 증가한데 기인
 - － 제조업 생산지수는 113.6(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중 중화학(9.3%)의 생산증대가 경공업(-8.5%)의 생산감소를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 － 1월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²⁾은 113.7(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료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부진하여 감소세를 보임.
- 1월 제품 출하는 113.4(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고, 재고는 112.9(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 출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 출하가 3.1% 감소한 반면, 수출출하는 17.7% 증가
 - － 재고는 제1차금속(-8.6%), 섬유제품(-5.6%)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46.2%), 화학제품(6.7%), 비금속광물(22.3%) 등에서 증가
-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5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고 전기대비 0.1% 증가
 - － 반도체,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

2) 통계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서비스업동태조사』결과와 다른 통계(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및 외부기관 자료(금융·보험업, 의료업 등)를 종합하여 2000년을 기준(2000=100.0)으로 작성한 것임(기준년도가 2000년으로 변경되었음).

<표 5> 생산 동향

(단위 : %, 2000=100.0)

		2002	2003							2004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11월	12월p	1월p	
생 산	108.8	114.4	110.0	112.6	109.6	125.4	122.3	127.8	115.3	
	(8.0)	(5.1)	(6.1)	(3.0)	(3.0)	(7.4)	(4.9)	(10.9)	(4.8)	
제 조 업	108.4	114.0	108.6	112.6	109.5	125.3	122.3	126.9	113.6	
	(8.2)	(5.2)	(5.8)	(3.1)	(3.1)	(8.3)	(5.3)	(11.4)	(5.2)	
서 비 스 업	116.0	117.0	114.1	117.9	117.2	120.7	117.7	124.9	113.7	
	(9.8)	(1.3)	(3.2)	(1.1)	(0.6)	(0.4)	(0.0)	(1.1)	(-1.7)	
출 하	109.3	113.9	109.6	112.7	108.9	124.3	121.5	126.0	113.4	
	(7.9)	(4.2)	(4.5)	(2.8)	(2.5)	(6.8)	(3.7)	(9.9)	(4.0)	
재 고	104.5	110.5	111.7	112.3	110.4	110.5	109.4	110.5	112.9	
	(-0.8)	(5.7)	(9.6)	(9.2)	(8.1)	(5.7)	(5.9)	(5.7)	(3.2)	
평 균 가 동 률		78.4	78.3	78.5	77.3	76.9	80.4	79.6	80.4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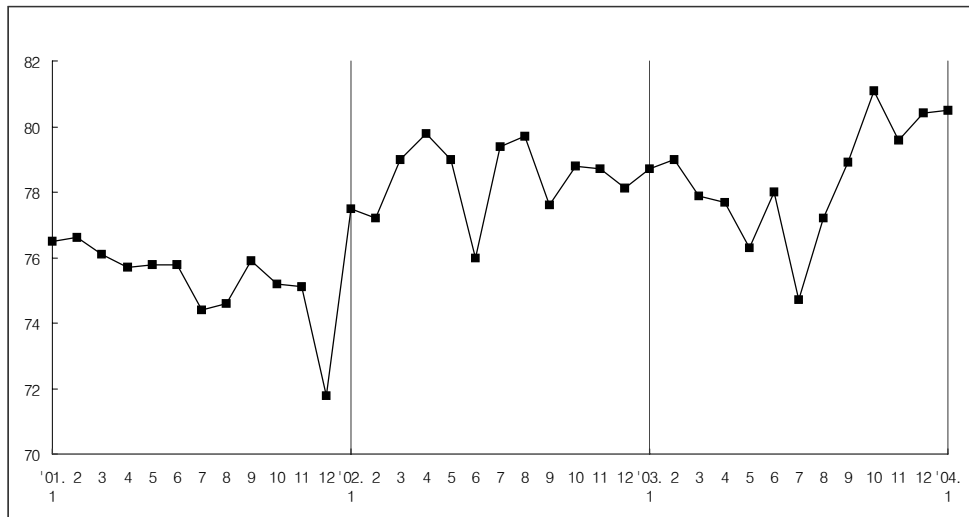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평균가동률은 %,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_____, 『2004년 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4. 3.

[그림 2] 제조업 평균가동률 동향

(단위 : %)



자료: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 지속

- 200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113.2이며, 전기대비로도 0.4% 상승
 - － 전기에 비해 농축수산물(감자, 꿀, 닭고기, 돼지고기)이 상승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부문도 상승
 - － 전년동기대비 주요 도시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울(3.9%), 울산(3.6%), 광주(3.5%), 대전(3.0%), 인천(2.9%), 부산(2.6%), 대구(2.4%)순임.
-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4.2% 각각 상승한 115.3임.
- 2004년 2월 중 생산자물가는 105.6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전기대비 1.2% 각각 상승
 - － 부분별로 농림수산물(20.7%)이 출하량 감소로 채소류 및 과일류가 상승하고 수요증가로 축산물의 생산자 가격이 상승
 - － 공산품(4.0%)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오르고 고철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금속1차제품 및 전기기계장치가 오른데 기인
 - － 서비스도 부동산 및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상승

〈표 6〉 물가지수 동향

(단위 : %, 2000=100.0)

	2002	2003						2004	
							12월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¹⁾	106.9 (2.7)	110.7 (3.6)	109.8 (4.1)	110.5 (3.4)	110.8 (3.2)	111.7 (3.4)	112.0 (3.4)	112.7 (3.4)	113.2 (3.3)
생활 물가지수 ²⁾	107.7 (2.5)	112.1 (4.1)	111.1 (4.6)	111.7 (3.4)	112.1 (3.6)	113.3 (4.2)	113.5 (4.2)	114.5 (4.3)	115.3 (4.2)
생산자 물가지수 ³⁾	99.2 (-0.3)	101.4 (2.2)	101.2 (3.0)	101.0 (1.3)	101.1 (1.9)	102.3 (2.5)	102.9 (3.1)	104.3 (3.8)	105.6 (4.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분기별 자료는 월별자료의 평균치임.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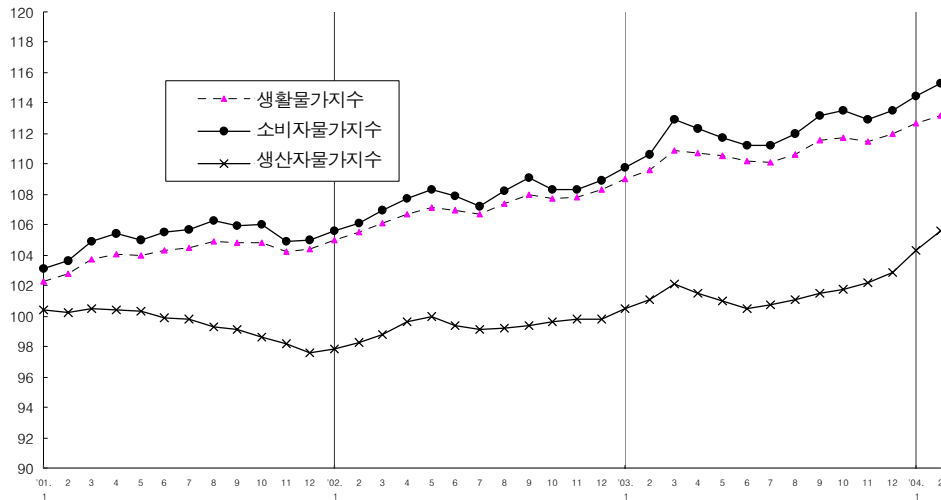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2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4. 3.

통계청, 『200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4. 2.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2003년 국민계정(잠정)³⁾

- 200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과 건설 투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3.1% 성장
- 경제활동별 성장내역을 보면, 농림어업(-7.1%)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4.8%), 건설업(8.1%), 서비스업(1.8%)에서는 증가
 - － 농림어업은 벼 등 재배작물의 생산이 감소한 데다 축산업의 생산도 부진하여 전년대비 7.1% 감소
 - － 제조업은 섬유·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 등 내수관련 업종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운수장비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늘어나 전년대비 4.8% 증가
 - － 건설업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8.1% 증가
 - －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한 데다 운수통신업 등 여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1.8% 성장에 그침.

3) 본 내용은 한국은행의 '2003년 국민계정(잠정)'과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 결과'에 대해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http://www.bok.or.kr/>)보도자료 참조.

<표 6>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2000년 가격 기준)

(단위 : %)

	연간 성장률		성장기여율	
	2002	2003p	2002	2003p
국내총생산(GDP)	7.0	3.1	100.0	100.0
농림어업	-3.5	-7.1	-2.1	-8.8
제조업	7.6	4.8	28.0	40.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7	5.7	2.6	4.4
건설업	2.8	8.1	3.0	19.2
서비스업	7.8	1.8	54.9	28.5
국민총소득(GNI)	7.0	1.8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국민계정(잠정)』, 2004. 3.

- 산업별 GDP 성장기여율을 보면 제조업이 전년의 28.0%에서 40.3%로 높아지고 건설업도 전년의 3.0%에서 19.2%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의 54.9%에서 28.5%로 하락

◆ 2003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내용

- 국민계정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1995년에서 2000년으로 개편
 - － 통상적인 기준년 개편작업 외에 UN,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요구와 개선요청 내용 등을 반영
- 개편대상 계열은 1995~2003년 연간 및 분기계열로 그 결과는 2003년 연간 잠정 국민계정 발표시 함께 공표하며, 2차 1970~1994년 계열은 2004년 말경 공표 예정
- 개편범위는 생산, 지출 및 분배에 관한 계정과 부표를 포함.
- 주요 개편내용
 - － 199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상대가격 체계변화를 반영하고 주요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준년 변경(1995년→ 2000년)
 - － 기준년 개편을 완료한 통계명과 개편완료시기는 산업연관표(200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0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03년 1월), 수출입단가지수(200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02년 1월), 생산·출하·재고지수(2002년 12월), 농가판매(구입)가격지수(2003년 1월)임.

-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이행하여 GDP 산출물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 금융중개 서비스(FISIM)의 배분, 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 범위 확대, 연쇄지수(Chain Index)의 적용 확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의 산업분류체계 변경
-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의 전면 적용, 서베이 확대 및 사교육비 반영 등과 같은 추계방법의 개선 및 포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계정 통계의 품질 제고와 IMF 통계품질평가시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 부가가치 추계부문의 대폭 확대(77개 부문→368개 부문) 및 제조업의 산업형태별 분류 도입 등 통계제공의 세분화 및 다양화 등을 통한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 제고 등임.

노동동향

고용 동향

김 용 현*

◆ 실업자 증가

- 2월 중 실업자는 90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9천명(9.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0.2%포인트 증가
 - － 실업자와 실업률의 증가는 2월 졸업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전년동기(822천명, 3.7%)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다소 낮은 3.3% 수준
 - － 2004년 2월 실업자는 2001년 3월(1,066천명) 이후 최고치
 - － 성별 실업자를 보면, 남성 실업자는 53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8천명(3.5%) 증가하여 실업률은 4.0%, 여성 실업자는 36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천명(4.3%) 증가하여 여성 실업자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실업률은 3.9%임.
- 2004년 2월 중 취업자는 22,00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7천명(2.4%) 증가
 - － 성별 취업자를 보면 남성은 12,97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1천명(1.4%) 증가하였으며, 여성 취업자는 9,031천명으로 326천명(3.7%) 증가
- 2004년 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22,906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4,671천명
 -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기에 비해 1.0%포인트 상승
 - － 전기대비 경제활동인구는 586천명(2.6%) 증가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84천명(-0.6%) 감소하였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2,877 (2.1)	22,916 (0.2)	22,439 (0.4)	23,055 (-0.2)	23,050 (-0.1)	23,119 (0.6)	22,922 (0.7)	22,790 (2.0)	22,906 (2.6)
참가율	61.9	61.4	60.3	61.8	61.6	61.7	61.1	60.7	61.0
취업자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실업자	708	777	806	751	756	794	825	854	900
실업률	3.1	3.4	3.6	3.3	3.3	3.3	3.6	3.7	3.9
비경제활동인구	14,086 (-0.5)	14,424 (2.4)	14,755 (1.9)	14,243 (3.2)	14,341 (2.8)	14,357 (1.7)	14,584 (1.5)	14,755 (-0.4)	14,671 (-1.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40대와 대졸여성 실업자 증가

- 2004년 2월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 실업자는 40대(33천명, 27.7%)의 증가가 두드러짐.
 - － 실업률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는데, 15~19세의 실업률이 14.3%로 전년 동기대비 2.9% 포인트 상승
 - － 청년층(15-2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1천명(2.4%) 증가한 460천명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9.1%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음.
- 2004년 2월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34천명, 0.6%포인트), 고졸(18천명, 0.1%포인트), 대졸 이상(26천명, 0.1%포인트) 등 모든 교육정도에서 증가하였음.
 - － 전월에 비해서는 대졸 이상(86천명, 1.1%포인트)은 증가하였으나, 고졸(35천명, -0.3%포인트)과 중졸 이하(5천명, -0.1%포인트)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음.
 - － 대졸 이상 실업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2월 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도 무관하지 않음.
 - － 특히 대졸여성의 실업자수는 14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천명(26.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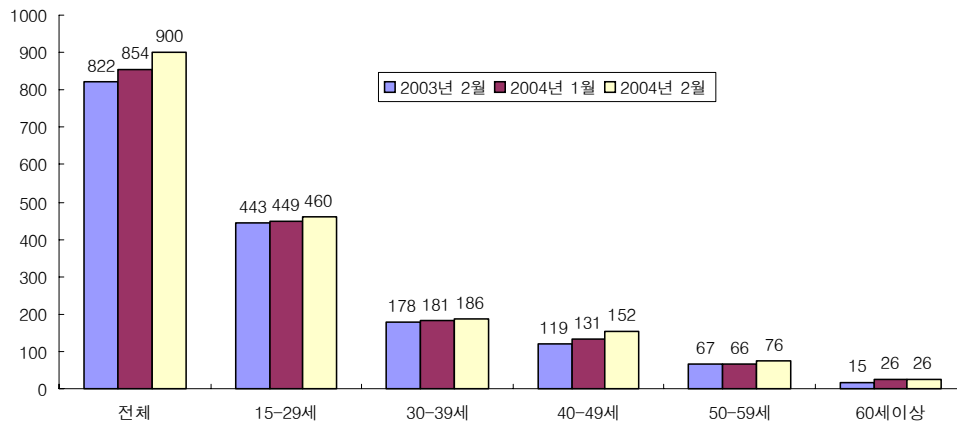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전 체	708 (3.1)	777 (3.4)	806 (3.6)	751 (3.3)	756 (3.3)	794 (3.4)	825 (3.6)	854 (3.7)	900 (3.9)
15~29세	341 (6.6)	383 (7.7)	424 (8.4)	362 (7.3)	350 (7.0)	394 (7.9)	432 (8.6)	449 (8.8)	460 (9.1)
15~19세	39 (11.1)	37 (12.0)	38 (11.6)	31 (11.2)	36 (11.1)	45 (14.7)	56 (16.0)	60 (15.3)	47 (14.3)
20~29세	302 (6.3)	345 (7.4)	387 (8.2)	331 (7.1)	314 (6.7)	349 (7.5)	376 (8.0)	389 (8.3)	413 (8.7)
30~39세	177 (2.8)	182 (2.9)	177 (2.8)	179 (2.8)	184 (2.9)	188 (3.0)	180 (2.8)	181 (2.9)	186 (2.9)
40~49세	111 (1.9)	128 (2.1)	118 (2.0)	126 (2.0)	197 (2.2)	129 (2.1)	129 (2.1)	131 (2.1)	152 (2.4)
50~59세	56 (1.8)	66 (2.0)	69 (2.2)	67 (2.0)	66 (2.0)	60 (1.8)	60 (1.8)	66 (2.0)	76 (2.3)
60세 이상	22 (1.0)	19 (0.9)	18 (0.9)	18 (0.8)	19 (0.8)	23 (1.0)	24 (1.2)	26 (1.3)	26 (1.3)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12월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전 체	708 (3.1)	777 (3.4)	806 (3.6)	751 (3.3)	756 (3.3)	794 (3.4)	825 (3.6)	854 (3.7)	900 (3.9)
중 출 이 하	138 (2.1)	122 (2.0)	116 (2.0)	110 (1.8)	131 (2.2)	132 (2.2)	145 (2.5)	150 (2.7)	145 (2.6)
고 출	358 (3.5)	411 (4.1)	426 (4.3)	385 (3.9)	396 (4.0)	438 (4.3)	471 (4.6)	494 (4.8)	459 (4.5)
대 출 이 상	212 (3.5)	243 (3.5)	264 (3.9)	256 (3.7)	229 (3.3)	224 (3.2)	209 (3.0)	210 (3.0)	296 (4.1)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취업자수 증가

- 2004년 2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507천명(2.4%) 증가한 22,005명을 기록하고, 전기대비로는 69천명(0.3%) 증가
 -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취업자수는 농림어업(91천명, -5.5%),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7천명,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명, 0.0%)은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453천명, 7.7%), 제조업(120천명, 2.9%)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제조업의 취업자는 지난 연말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전기대비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천명, -0.3%), 건설업(12천명, -0.7%),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2천명, 0.1%)은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66천명, 4.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20천명, 0.3%), 제조업(18천명, 0.4%)은 증가하였음.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전 산 업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303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농림어업	2,069 (-3.7)	1,950 (-5.8)	1,699 (-1.6)	2,127 (-5.5)	2,090 (-7.2)	1,882 (-8.0)	1,575 (-11.0)	1,489 (-6.7)	1,555 (-5.5)
제조업	4,241 (-0.6)	4,205 (-0.8)	4,168 (-1.7)	4,238 (-0.5)	4,166 (-1.1)	4,246 (-0.1)	4,257 (0.4)	4,254 (2.7)	4,272 (3.0)
건설업	1,746 (10.2)	1,816 (4.0)	1,734 (8.3)	1,854 (3.5)	1,821 (2.2)	1,854 (2.3)	1,851 (2.5)	1,740 (2.1)	1,728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98 (2.1)	5,852 (-2.4)	5,919 (-1.2)	5,834 (-2.8)	5,805 (-3.5)	5,851 (-2.1)	5,902 (-1.6)	5,939 (-1.5)	5,919 (0.0)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40 (7.2)	6,139 (3.4)	5,927 (2.6)	6,055 (1.6)	6,253 (4.6)	6,322 (4.5)	6,325 (4.8)	6,327 (7.1)	6,347 (7.7)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57 (0.7)	2,160 (0.1)	2,168 (0.8)	2,178 (1.5)	2,142 (-0.8)	2,153 (-1.0)	2,167 (-0.9)	2,167 (-0.1)	2,165 (-0.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임금근로자 소폭 증가

- 2004년 2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45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천명(0.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도 14,54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2천명(3.6%) 증가
 -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95천명, 4.1%)와 임시근로자(191천명, 3.9%), 일용근로자(18천명, 0.9%) 모두 증가
 - － 2004년 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1.2%로 2004년 1월의 수준과 동일
- 전기대비로도 비임금근로자(28천명, 0.4%)와 임금근로자(41천명, 0.3%)는 모두 증가하였음.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12월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전 체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비임금근로자	7,988 (0.9)	7,736 (-3.2)	7,466 (-2.4)	7,794 (-4.6)	7,938 (-3.1)	7,748 (-2.5)	7,472 (-2.3)	7,428 (0.0)	7,456 (0.1)
임금근로자	14,181 (3.8)	14,402 (1.6)	14,168 (2.2)	14,509 (1.8)	14,356 (0.9)	14,577 (1.4)	14,624 (1.5)	14,508 (2.6)	14,549 (3.6)
상용근로자	6,862 (2.2) [48.4]	7,269 (5.9) [50.5]	7,176 (6.2) [50.6]	7,250 (5.8) [50.0]	7,268 (5.7) [50.6]	7,383 (6.1) [50.6]	7,411 (6.2) [50.7]	7,426 (4.0) [51.2]	7,453 (4.1) [51.2]
임시·일용 근로자	7,319 (5.4) [51.6]	7,134 (-2.5) [49.5]	6,992 (-1.6) [49.4]	7,259 (-1.9) [50.0]	7,088 (-3.7) [49.4]	7,194 (-3.2) [49.4]	7,213 (-3.0) [49.3]	7,082 (1.2) [48.8]	7,098 (-0.8) [48.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안의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신규실업자 감소, 전직실업자 증가

- 2004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900천명 중 신규실업자는 8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천명(-31.7%)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18천명으로 116천명(16.1%) 증가
 - － 신규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3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천명(-35.0%) 감소하고, 여성도 43천명으로 17천명(-28.3%) 감소
 -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3~5개월된 실업자수가 전월에 비해 상당히 증가(20.0%, 41천명)하고, 6~11개월과 12개월 이상 된 전직실업자수도 소폭 증가하여 실업상태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
 - －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477천명(58.3%)으로 3~5개월(246천명, 30.1%), 6~11개월(85천명, 10.4%), 12개월 이상(10천명, 1.2%)보다 많음.
 - － 전직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1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천명(13.6%) 증가하고, 여성도 261천명으로 69천명(35.9%) 증가

<표 6>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신규실업자	44 [6.2]	67 [8.6]	106 [13.2]	60 [8.0]	46 [6.1]	58 [7.3]	72 [8.7]	86 [10.1]	82 [10.1]
전직실업자	664 [93.8]	710 [91.4]	700 [86.8]	692 [92.1]	710 [93.9]	736 [92.7]	754 [91.3]	768 [89.9]	818 [89.9]
3개월 미만	387 [58.3]	450 [63.4]	459 [65.6]	443 [64.0]	435 [61.3]	461 [62.6]	465 [61.7]	473 [61.5]	477 [58.3]
3~5개월	186 [28.0]	188 [26.5]	189 [27.0]	186 [26.9]	193 [27.2]	184 [25.0]	198 [26.3]	205 [26.7]	246 [30.1]
6~11개월	75 [11.3]	68 [9.6]	51 [7.3]	60 [8.7]	77 [10.4]	84 [11.4]	83 [11.0]	83 [10.8]	85 [10.4]
12개월 이상	16 [2.4]	4 [0.6]	2 [0.3]	2 [0.3]	4 [0.6]	8 [1.1]	8 [1.1]	8 [1.0]	10 [1.2]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시간 다소 증가

- 2004년 2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8.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7시간 감소하였으나, 전기에 비해서는 0.2시간 증가
 - － 2004년 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4시간 감소
 - － 2004년 2월 중 임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6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9시간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40.7시간으로 1.4시간 감소
 -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월		
임금근로자	49.1	48.2	48.8	49.3	45.7	48.8	48.7	47.9	48.1	
상용직	50.0	49.0	49.1	50.6	45.9	50.1	50.0	48.6	49.1	
임시직	50.9	49.7	50.6	50.4	47.9	50.0	50.1	49.7	49.6	
일용직	43.0	41.5	42.0	42.4	40.2	41.3	40.8	41.1	4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동향

강승복*

◆ 2003년 임금 9.2% 상승

○ 2003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2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2% 상승

- 이는 2002년의 임금총액 상승률 11.2%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12월(4/4분기) 임금총액은 2,22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상승하여 전년 동기(13.8%)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2월 임금총액은 2,71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하여 전년동기(15.7%)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임금변화의 특징으로는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가운데 초과급여 상승률은 증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으로 대표되는 경기양극화로 인한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둔화,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체간 임금격차의 확대 지속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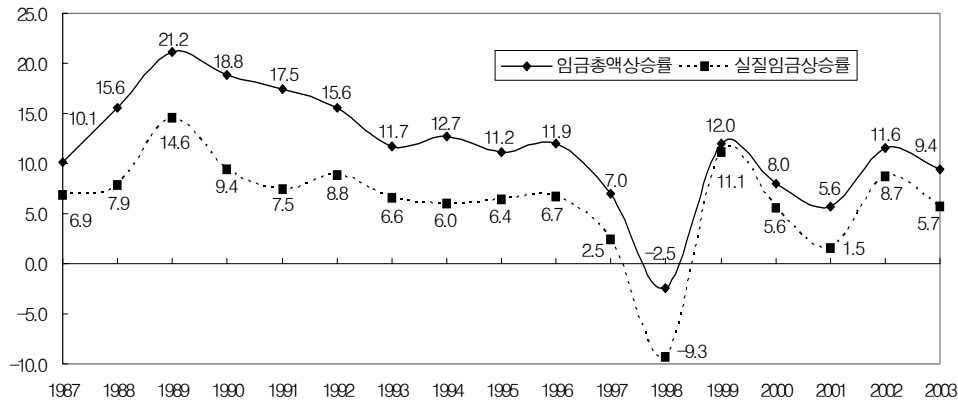
○ 실질임금은 5.5%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2003년 실질임금은 전년에 비해 5.5% 상승
- 이를 임금총액 상승률 9.2%와 비교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3.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2003년에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쇄되었기 때문임.
- 10~12월(4/4분기)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3.7%, 1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2.2% 각각 상승함.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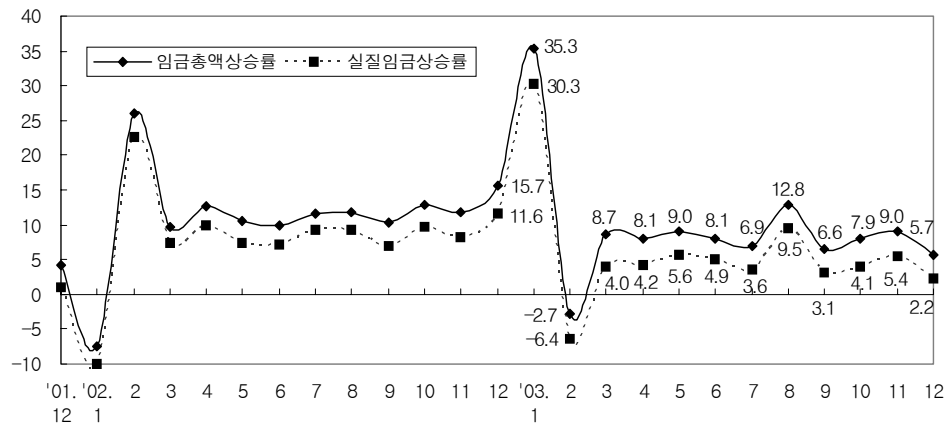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



[그림 2] 월별 임금상승률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



◆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

-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증가
 - 2003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32천원으로 전년 (1,408천원)에 비해 8.8% 상승하였으나 전년의 상승률 12.1%보다는 낮은 상승률 기록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12월
임 금 총 액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정 액 급 여	1,408 (12.1)	1,532 (8.8)	1,494 (9.0)	1,513 (8.4)	1,536 (8.6)	1,583 (9.0)	1,545 (8.2)	1,553 (9.0)	1,652 (9.7)
초 과 급 여	126 (-3.9)	135 (7.3)	128 (9.3)	135 (6.5)	133 (4.7)	145 (8.5)	148 (10.1)	143 (9.7)	143 (5.8)
특 별 급 여	413 (13.4)	460 (11.4)	481 (28.5)	366 (8.4)	496 (9.7)	499 (2.0)	341 (5.9)	243 (8.6)	915 (-0.9)
실 질 임 금 지 수	109.3 (8.2)	115.2 (5.5)	114.8 (8.5)	109.3 (4.7)	117.2 (5.3)	119.6 (3.7)	109.2 (4.1)	104.3 (5.4)	145.1 (2.2)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06.9 (2.7)	110.7 (3.6)	109.8 (4.1)	110.5 (3.4)	110.8 (3.2)	111.7 (3.5)	111.7 (3.7)	111.5 (3.4)	112.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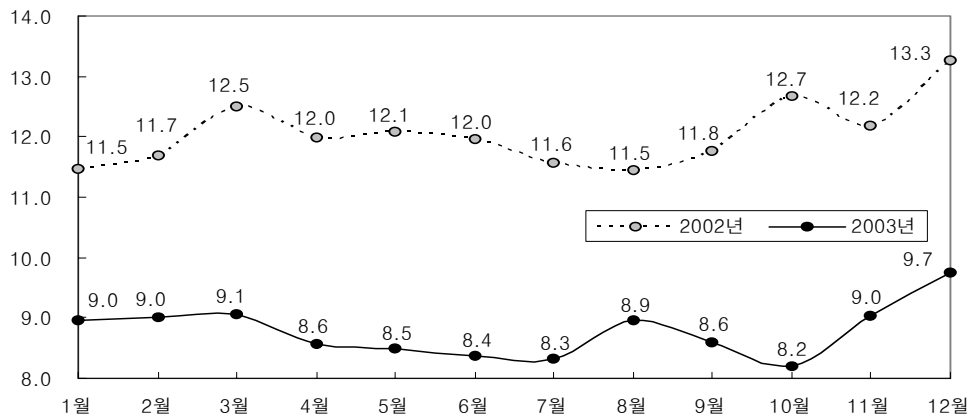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특별급여는 46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상승률 13.4%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치임.
-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7.3%로 전년의 -3.9%에 비해 11.2%포인트 높게 나타남.
- 10~12월(4/4분기)은 정액급여 9.0%, 초과급여 8.5%, 특별급여 2.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2월은 정액급여 9.7%, 초과급여 5.8%, 특별급여 -0.9%를 기록

[그림 3]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 경기양극화에 따라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저조

-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은 낮은 상승률 기록
 - － 2003년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1.5%, 12.6%로 전산업 평균 상승률(9.2%)보다 높게 나타남.
 - － 반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
 - － 2003년 중 내수시장의 위축에 따라 이들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2002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짐.

〈표 2〉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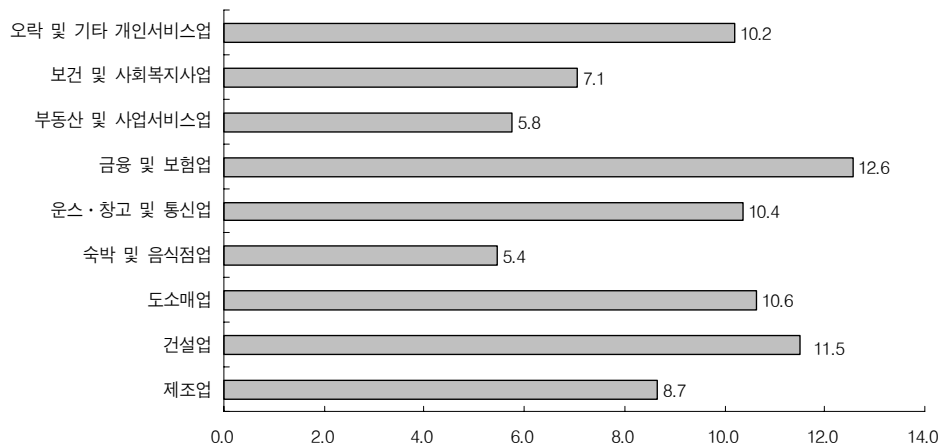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제조업	1,857 (11.9)	2,018 (8.7)	1,984 (13.7)	1,873 (7.2)	2,056 (7.7)	2,155 (6.3)	1,963 (6.9)	1,781 (10.8)	2,722 (3.2)
건설업	1,859 (10.2)	2,072 (11.5)	2,058 (14.7)	1,937 (9.3)	2,144 (11.0)	2,152 (11.1)	1,976 (12.3)	1,979 (12.0)	2,501 (9.6)
도매 및 소매업	1,888 (9.4)	2,089 (10.6)	2,064 (13.0)	1,985 (9.1)	2,141 (11.2)	2,158 (8.9)	1,983 (7.9)	1,892 (12.0)	2,600 (7.5)
숙박 및 음식점업	1,364 (16.2)	1,439 (5.4)	1,409 (8.5)	1,415 (5.8)	1,436 (3.7)	1,491 (3.8)	1,507 (6.6)	1,388 (3.2)	1,577 (1.9)
운수·창고·통신업	1,926 (8.4)	2,126 (10.4)	2,040 (15.6)	2,115 (9.6)	2,163 (10.4)	2,179 (6.2)	2,085 (13.1)	2,015 (0.0)	2,438 (6.2)
금융 및 보험업	2,941 (13.4)	3,310 (12.6)	3,520 (16.3)	3,050 (12.1)	3,286 (11.9)	3,383 (9.9)	2,813 (8.8)	2,921 (9.3)	4,413 (10.8)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753 (13.1)	1,854 (5.8)	1,817 (6.9)	1,811 (4.9)	1,877 (6.4)	1,915 (5.1)	1,758 (4.3)	1,728 (5.5)	2,259 (5.4)
사회개인서비스업	2,042 (12.4)	2,218 (8.6)	2,165 (10.6)	2,131 (8.2)	2,288 (7.8)	2,296 (8.3)	2,166 (8.5)	2,132 (9.2)	2,588 (7.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4] 2003년 산업별 임금상승률

(단위 : %)



◆ 규모간 임금격차는 최근 2년간 확대 지속

- 2003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51.5% 수준
 - 2003년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대비 11.9%로 가장 높고, 300~499인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2003년의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
 - 전년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5.4포인트를 기록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냄.

<표 3>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12월	
전규모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5 ~ 9인	1,466 (9.1)	1,543 (5.2)	1,509 (5.0)	1,479 (4.1)	1,595 (5.0)	1,586 (5.5)	1,495 (5.9)	1,482 (6.7)	1,781 (4.2)
10 ~29인	1,705 (6.2)	1,808 (6.1)	1,787 (6.5)	1,728 (4.5)	1,857 (6.4)	1,862 (5.4)	1,694 (4.9)	1,712 (6.7)	2,180 (4.7)
30 ~99인	1,856 (10.5)	2,005 (8.0)	1,965 (9.5)	1,910 (6.8)	2,061 (7.4)	2,078 (7.9)	1,901 (9.3)	1,864 (7.2)	2,468 (7.4)
100~299인	2,067 (15.8)	2,230 (7.9)	2,150 (12.7)	2,160 (10.4)	2,249 (6.1)	2,357 (5.6)	2,162 (6.3)	2,112 (8.4)	2,797 (3.0)
300~499인	2,357 (10.4)	2,474 (5.0)	2,394 (9.1)	2,380 (6.6)	2,501 (4.9)	2,623 (1.8)	2,418 (2.7)	2,233 (1.5)	3,221 (1.4)
500인 이상	2,718 (17.5)	3,043 (11.9)	3,123 (23.0)	2,763 (9.1)	3,048 (11.3)	3,243 (5.8)	2,905 (6.9)	2,488 (12.8)	4,33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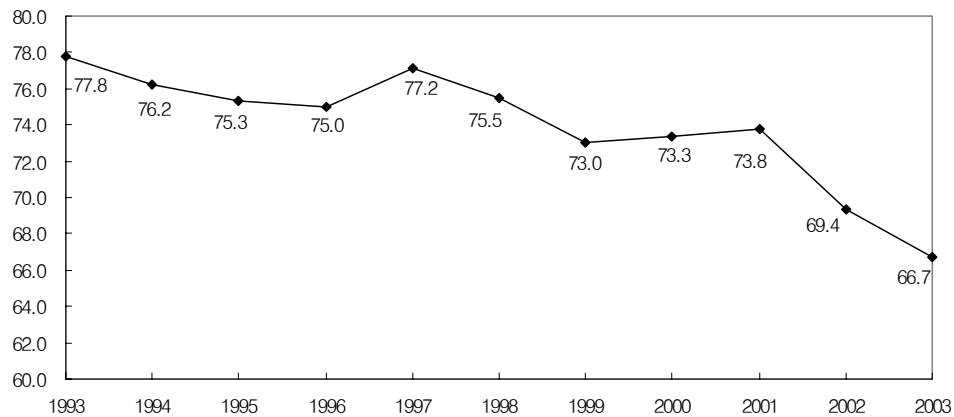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50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간 임금격차, 1993년 이후 가장 높아
- 2003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3,043천원으로 전년대비 11.9% 상승하였으며, 10~499인 사업체는 2,031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
 -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을 100.0으로 하였을때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2003년에 66.7을 기록하여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음.

[그림 5]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 추이

(단위 : 500인 이상=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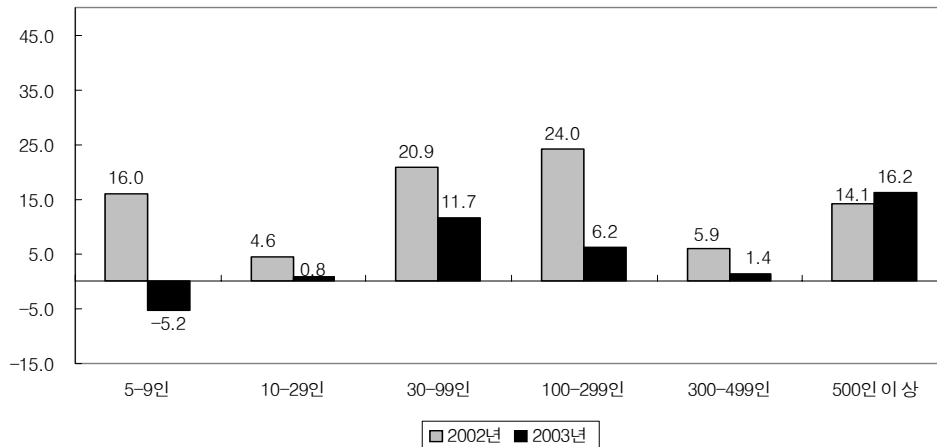


○ 특별급여가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 2003년의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전년대비 5.2% 하락한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는 16.2% 상승하여 규모별 차이가 뚜렷
- 2003년에 500인 이상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별급여 상승률을 나타낸 이유는 1월의 5~9인 사업체 특별급여 상승률이 119.1%이었던 것에 비해 500인 이상 사업체는 28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의 영향이 지속된 것임.
- 2003년에 나타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높은 특별급여 상승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 남녀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남.

- 2003년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9.7%를 기록하여 여성의 7.7%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남.
- 2003년의 남성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62.4로 나타나 전년(63.5)과 비교하여 남녀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전년인 2002년의 여성 근로자 임금수준은 남성의 63~64%대였으나, 2003년에는 이보다 낮은 62%대를 유지

<표 4>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2	2003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12월	
전 체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남 성	2,193 (11.0)	2,406 (9.7)	2,376 (13.8)	2,274 (8.8)	2,447 (9.1)	2,527 (7.4)	2,298 (7.9)	2,188 (9.6)	3,094 (5.6)
여 성	1,393 (10.8)	1,501 (7.7)	1,487 (10.6)	1,430 (6.7)	1,532 (6.4)	1,554 (6.8)	1,441 (7.8)	1,379 (7.0)	1,84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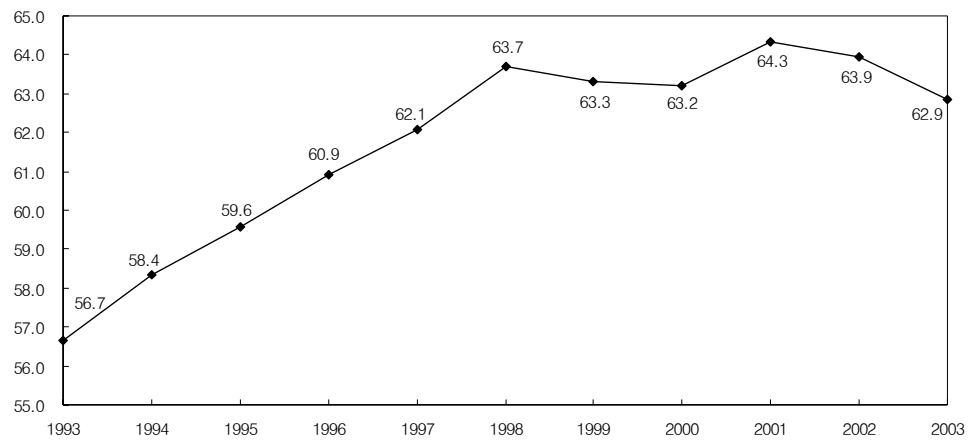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7] 연도별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남성 임금총액=100.0)



노

동

동

향

노사관계 동향

김정우*

I. 노사분규 동향

◆ 분규발생건수 감소, 분규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대폭 증가

- 2004년 3월 1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늘어남(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전년동기 22건에 비해 다소 감소
 - 근로손실일수는 59,661일로 전년동기 37,230일에 비해 크게 증가
 - 분규참가자수가 전년동기의 2,271명에서 21,0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3년 초의 분규참가자수가 예외적으로 적었고, 올해 들어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에서 부분 및 전면파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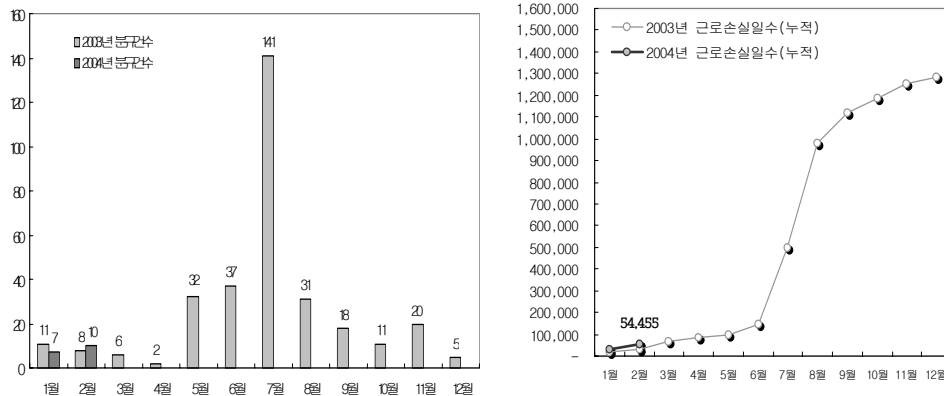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천일)

	2002. 3. 15	2003. 3. 15	2004. 3. 15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	23	22	16
분 규 참 가 자 수(명)	16,904	2,271	21,037
근 로 손 실 일 수(천일)	152	37	60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jw@kli.re.kr).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3, 2004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년의 노동부 7개 중점과제로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 ‘퇴직 연금제 도입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발표함.¹⁾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을 금년 내에 추진’할 방침임.

· 관련법률 :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 추진할 계획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 요지 :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업무내용 등을 감안,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정부용역

1) 노동부 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뉴스란(<http://molab.news.go.kr>)의 첨부파일 『2004년 주요 업무계획』(2004. 3. 4.)을 참조.

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산업 부문과 고용복지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전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임.
- 주5일 근무제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 보전·휴가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감과 동시에 법정시기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등 인프라도 확충함.
 - ※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입법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공포, 시행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월 25일 공포된 후, 3월 10일 시행규칙과 고시가 공포되어 시행되게 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주요 내용
 - 목적
 -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으로 한정됨.

－ 지원요건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경우(현재 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2006년 7월 1일임)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 보다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와 단축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함.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해당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됨.

◆ 노동부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의 제정 및 추진계획을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 － 이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을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고용목표와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
- － 한편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계약과 연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 이상의 “고용평등프로그램”은 기업부담을 고려, 올해는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은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2004년 임금협상의 내용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 진행

- 경총과 전경련은 각각 성명을 통해 2004년 임금조정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
 - 경총은 3월 17일, “2004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발표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2003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급격한 임금경쟁력 악화를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생산성 기준에 입각한 3.8%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할 것을 권고
 - 올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개정
 -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장기계획 수립을 권고
 -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의 비중을 높여 임금관리의 유연성 제고
 - 전경련은 3월 19일 “경총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과 관련한 전경련 입장”을 발표
 - 전경련은 경총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의 위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 높은 청년실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안으로 평가함.
-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총의 임금조정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
 - 한국노총은 경총 주장대로 임금을 동결할 경우, 작년 물가인상률 3.6%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6% 하락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에도 휴일·휴가가 줄어드는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불가피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밝힘.
 -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경총의 임금조정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기업의 수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급격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대화상대에서 경총을 배제할 것을 검토할 것임을 경고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를 둘러싼 노정간 공방 진행

- 노동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 고려 언급
 - － 노동부는 3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2004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파견대상업무는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
- 양대노총, 성명을 통해 파견업무 확대방침 반대 표명
 - － 한국노총은 ‘파견대상업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금도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파견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표명
 - － 민주노총 역시 ‘파견노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의 불법파견에 대해 합법의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되어 비정규직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표명

◆ 금속산업연맹 완성차 4사 노동조합,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제안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금속산업연맹 산하 완성차 4사 노동조합은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의 조성을 제안
 - － 이들은 ‘고용비중과 산업연관성이 매우 큰 자동차산업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지니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상징할 때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 구체적으로 순이익의 5%(제안액 1,781억)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며, 기금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숙련향상 등에 쓰여야 함을 피력
- 경총, 완성차 4개사 노동조합의 제안 거부
 - － 경총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서 다시 이익에 대해 교섭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힘.

정책과제도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법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간 법정근로시간 단축
 - － 1일 8시간은 동일하나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연소자 42시간에서 40시간)
- 토요일의 법적 성격
 - － 1주 40시간 단축으로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
- 통상 시급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야 함.
 - － 토요일 무급시 산정기준시간 계산에서 이를 제외함(다만, 노사가 유급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 연소자 근로시간 적용
 -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 연소자의 경우 연장근로할증을 특별규정 적용되지 않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 현행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

* 본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은 2003. 12.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 시행지침

-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서면합의로 가능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특정주의 근로시간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 연·월차휴가의 조정

- 1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제57조), 1년간 개근시 10일, 9월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 초과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며 총 20일이 초과하는 휴가일수 금전보상(제59조)하던 것을 월차유급휴가 폐지, 8월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2년마다 1일 가산, 휴가일수 25일로 한도로 정함.

-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월 이상 출근 하는 경우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함.

○ 시행지침

- －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은 2004. 1. 1.~2004. 6. 30.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함.
- －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하여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됨.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개정법 부칙 제5조).

- 개정법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함.
-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함.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마다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다만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함.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됨. 다만, 최초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 가산휴가를 미부여한 경우에는 제113조에 의하여 벌칙조항이 적용됨(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부여시에도 동 처벌조항 적용).

○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 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처리에 유의하여야 함.
 - 2004년 7. 1부터 12.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 1., 9. 1., 10. 1., 11. 1., 12. 1., 05.1.1에 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05.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함.

- 2005년 1. 1.부터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 1., 3. 1., 4. 1., 5. 1., 6. 1.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06.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함.
- 2007. 1. 1부터는 정상적인 휴가 부여함(2007. 1. 1. 15일, 2008. 1. 1. 16일, 2008. 1. 1. 16일, 2010.1. 1 17일 등).

◆ 휴가사용의 촉진

- 현행 근로자 휴가사용의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제59조 제3항)하고 있음. 특히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휴가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개정법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 신설(제59조의 2)

○ 시행지침

- －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 연차휴가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개정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써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 현행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라 할지라도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님. 다만 1년 이상 근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동 휴가에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 휴가일수에 대해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음.
- －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에라는 것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도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0일간을 의미함.
 - 다만, 그 이전이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사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제59조의 2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금전보상의무 면제)는 없음.
- － 휴가사용촉진조치와 휴가사용 시기변경

-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제55조의 2)
- 시행지침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함.
 - 보상휴가 부여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함.
 -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가산임금부분만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름. 다만,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동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음.

— 휴가부여방법

- 동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이를 적치하여 ‘일(日)’단위로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여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

—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에는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할 것인지 등의 부여방식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보상휴가부여 기준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의 범위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임금지급의무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산하여야 함.

◆ 생리휴가

- 현행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을(제71조)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 시행지침
 -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함.
 - － 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생리휴가 청구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
 - － 생리휴가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 상한선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주 12시간이나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함.
- 시행지침
 - － 개정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제52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을 적용에 있어 1주 12시간을 16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개정법 부칙 제3조).
 - 이에 따라 성인근로자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됨.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은 노사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음(주 16시간까지는 서면합의 불필요).
 - －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최초 4시간’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함(주말이 아닌 주주의 연장근로가 최초 4시간에 해당할 수 있음).
 - － 연장근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만 연장근로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67조의 연소자 연장근로, 제69조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노·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개정법 부칙 제4조).
- 시행지침
 -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개별임금 항목별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의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을 하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아니함.
 - － 임금보전방법은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 기존의 임금수준의 저하여부는 법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고 개별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야 함.
 - － 정부는 법시행후 1년에 한하여 임금보전지도를 할 계획임.

◆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 노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함(개정법 부칙 제4조).
- 시행지침
 - －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됨.

◆ 시행시기

-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함.
 -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4.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7. 1
 - 100인 이상 사업장 : 2006. 7. 1
 -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7. 1
 - 20인 이상 사업장 : 2008. 7. 1
 -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 :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만 업종·규모별 의무시행시기 이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지침
 -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봄. 이때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함.
 -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함.
 -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
 - 개정법 적용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개정법이 계속 적용됨.
 - 법정근로시간 단축 외의 사항들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와 동시에 적용됨.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 외의 사항들도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됨.
 - 개정법을 우선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 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내용¹⁾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지원요건
 - ①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②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 지원내용
 - ① 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와 단축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1인당 월 50만원)
 - ②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

1) 2004. 3. 10. 노동부 발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이슈분석

자동차산업의 공급구조와 근로자간 격차

조성재*

◆ 자동차산업의 공급구조 변화와 근로자 계층분화

○ 자동차산업의 공급구조

-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과 소재가 결합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종합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광범한 기업간 생산네트워크를 필요로 함.
- 사외도급은 전통적 부품조달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1차 하청업체가 다시 2, 3차 하청업체로부터 조달받는 중층적 구조가 형성됨.
- 사내도급은 한 공장 내에서 생산라인의 일부를 위탁생산하는 형태로서, 자동차산업 내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일부에서는 불법파견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사외도급구조의 수직적 특성 강화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의 특정 완성차업체 전속적 단층조달 구조와 주로 계열사들로 구성되는 대규모 업체들로 구분되면서 수직계열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음.
-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구조재편에 따라 국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그룹(현대, 기아자동차)의 수요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었으며,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계열사 체제가 성립됨.
- 과거에 비해 복수업체에 대한 중층적 거래가 증가하고 120여개사에서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거래특성은 오히려 심화됨.
- 플랫폼 통합(차량 성능관련 부품을 공유하면서 차체 외관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모델 공급)과 모듈화(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덩어리로 납품), 외주화, 전자조달 등의 경영기법이 확산되면서 부품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상호 경쟁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hosj@kli.re.kr).

이 심화됨.

○ 외환위기 이후 부품업체로 사내도급 활용 확산

- 완성차 공장 내의 사내하청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에도 광범하게 존재하였음.
- 외환위기 당시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크게 줄어들었던 사내하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급속히 증가함.
- 외환위기 이후 특징적인 것은 부품업체들에서도 사내하청을 널리 활용하게 된 것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활용을 시작하거나 비중을 늘린 경우는 제조업의 같은 규모보다 더 많음.

<표 1>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 변화

		자동차			제조업	
		완성차	부품 300인 이상	부품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① 채용한 적 없음	빈도 백분율	1 16.7%	5 33.3%	11 25.0%	66 25.5%	253 43.2%
② 채용을 시작하였음	빈도 백분율	1 16.7%	5 33.3%	9 20.5%	52 20.1%	78 14.6%
③ 비중 유지	빈도 백분율	1 16.7%	2 13.3%	14 31.8%	76 29.3%	173 29.6%
④ 비중 늘림	빈도 백분율	2 33.3%	3 20.0%	5 11.4%	49 18.9%	48 8.2%
⑤ 비중 줄임	빈도 백분율	1 16.7%	0 0.0%	5 11.4%	16 3.5%	33 5.6%
전체	빈도 백분율	6 100.0%	15 100.0%	44 100.0%	259 100.0%	5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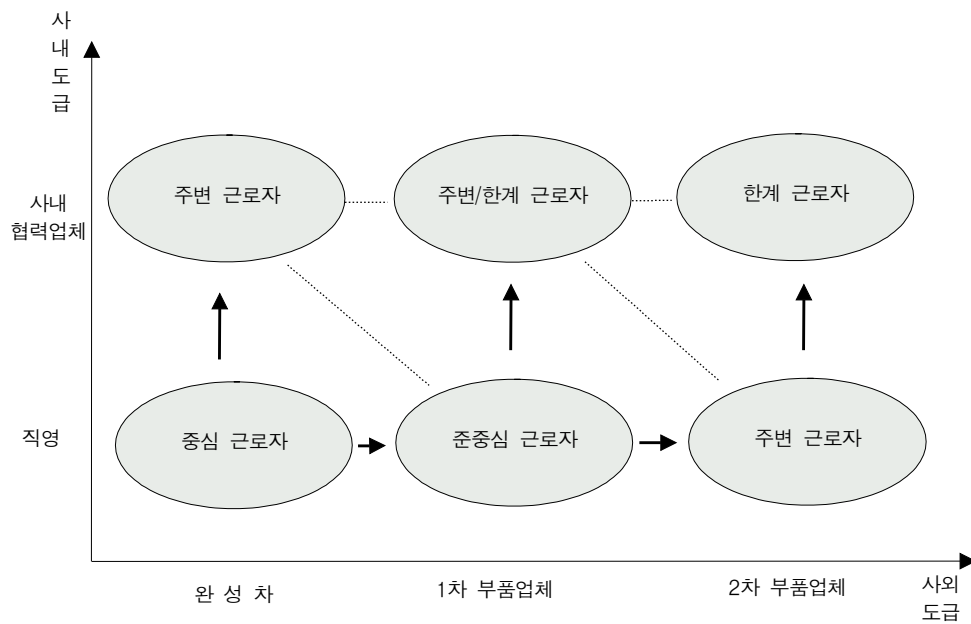
주: 여기서 비정규직은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 용역, 독립도급근로 등 거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만, 자동차산업에서는 사내 도급이 일반적인 형태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 추출.

○ 도급구조 변화와 근로자간 계층분화

-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고용이 거의 보장된 완성차업체 및 부품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소규모이거나 2차인 부품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수준 및 고용보장 정도가 매우 낮음.
- 특히 일부 사내하청 근로자 및 2, 3차 부품업체 근로자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의 한계근로자).

[그림 1] 자동차산업의 공급구조와 근로자간 계층분화



◆ 규모간·부문간 경영지표 격차와 노동소득

- 자동차산업 기업경영의 활동성, 수익성, 안전성 제고
 - 최근 자동차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 20% 내외에 달하며,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1.3을 넘어섬.
 - 외환위기 이전 대기업 집단간 과당경쟁과 과잉투자로 인하여 제로 수준에 머물던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5~10%로 크게 높아짐.
 -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채비율이 100~150%로 낮아져 기업경영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
- 안전성에 대한 집착과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투자활동 위축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부채비율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미국보다 매우 낮음.
 - 차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기업들은 주로 내부자금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부문별·규모별·국가별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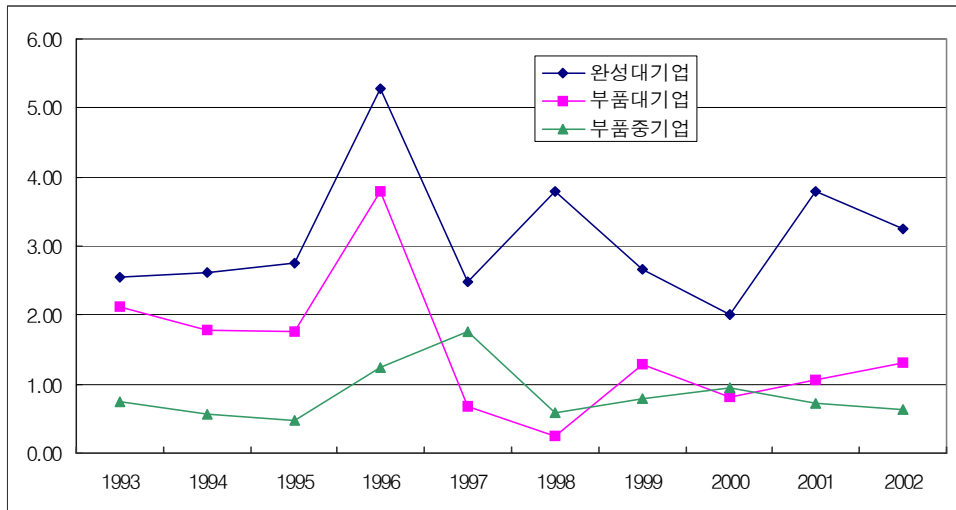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완성대기업	415.79	460.48	463.29	532.54	822.16	503.86	323.86	N.A.	136.22	115.15
부품대기업	377.65	345.98	340.20	402.97	661.68	N.A.	791.05	257.04	164.06	150.73
부품중기업	421.15	405.72	824.85	654.77	436.51	280.76	157.12	162.42	105.25	102.08
미국(자동차)	502.54	321.29	253.56	258.91	280.19	314.57	255.55	261.55	326.44	343.28
일본(수송기계)		149.09	134.88	137.14	126.97	124.54	121.43	117.44	117.44	110.89

주: 부품대기업은 300인 이상, 부품중기업은 50~300인 규모임.

자료: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 설비투자의 내용에서는 외환위기 전후의 과잉생산능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화 투자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려스러운 것은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그림 2]에서 보듯이 위축된 것임.

[그림 2] 부문별·규모별 연구개발투자 대 매출액 비율



자료: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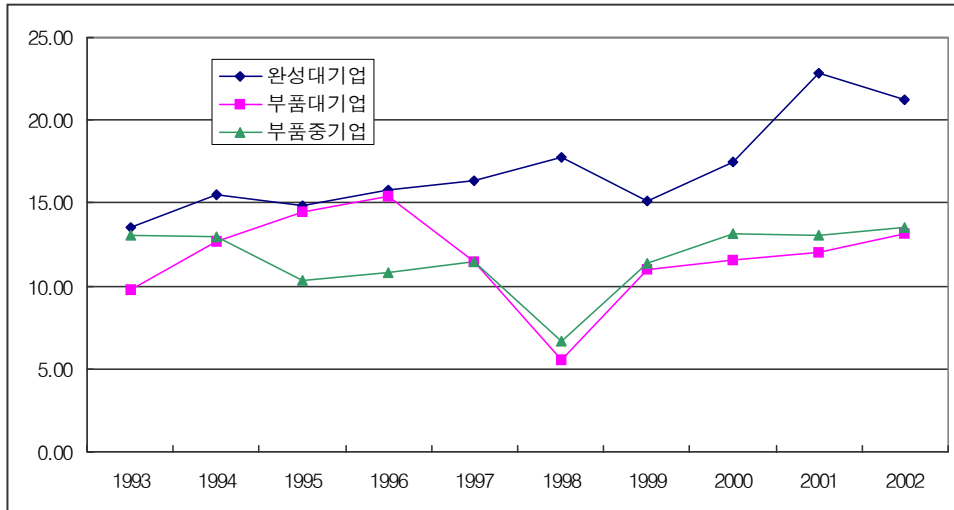
○ 완성차업체의 원가절감과 부품업체의 비용 압박

- [그림 3]에서 보듯이 매출총이익률 측면에서 완성차업체는 상승하고 부품대기업은 하락함. 이는 부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 압박이 심했음을 나타냄.
- <표 3>의 제조원가 구성 변화를 보면 원재료비 비중이 불변인 가운데 노무비 비

중이 줄어들었음.

- 특히 부품중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주가공비가 급증했는데, 이는 사내하청의 확산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3] 부문별·규모별 매출 총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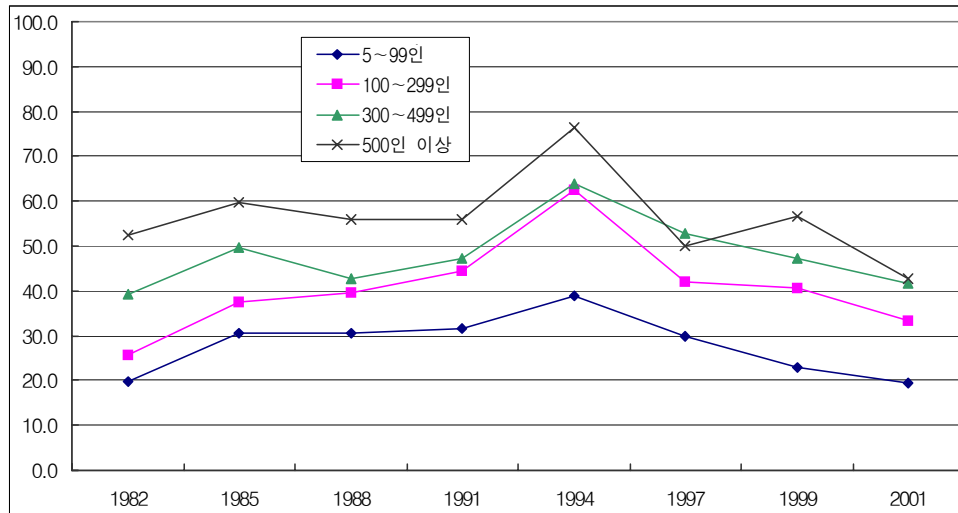
자료: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표 3> 부문별·규모별 제조원가 구성 비교

	1994			2002		
	완성 대기업	부품 대기업	부품 중기업	완성 대기업	부품 대기업	부품 중기업
원재료비	79.09	67.84	63.71	79	67.04	60.66
노무비	11.60	15.85	16.06	9.83	13.63	10.25
급여	10.05	13.74	14.19	8.27	11.34	9.11
퇴직급여	1.54	2.11	1.87	1.56	2.29	1.13
경비	11.82	19.53	21.51	12.38	20.43	29.82
감가상각비	5.66	5.66	4.87	3.65	5.17	5.42
복리후생비	0.84	1.86	1.82	1.21	1.85	1.30
외주가공비	0.13	3.6	5.33	0.13	5.01	13.12
연구비·경상개발비	0.16	0.35	0.06	0.89	0.46	0.39

자료: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그림 4] 자동차부품기업의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상대비(완성대기업=1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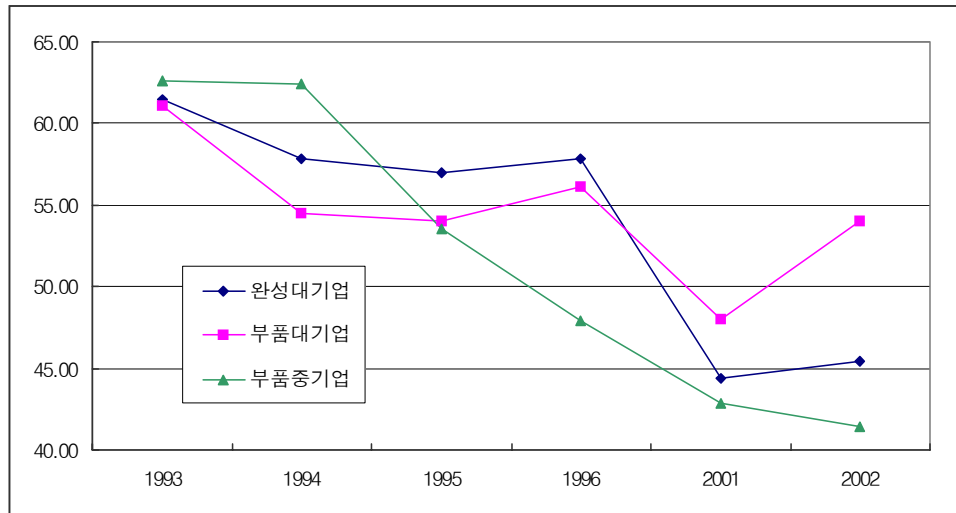
○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본 지불능력 격차 확대

- [그림 4]에서 보듯이 1인당 부가가치 격차가 1994년 이후 크게 확대됨.
- 이는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자본장비율의 격차가 확대된 데다가 납품 단가 인하 등으로 부품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떨어졌기 때문임.

○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의 하락 경향

- [그림 5]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자동차산업 전부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함. 지불능력 격차확대과정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부품산업에서 인건비 압박이 매우 심했을 것임을 시사함.
- 이와는 달리 부가가치 구성에서 경상이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이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쟁구조와 금융시스템(이자보상배율 중시, 주로 내부자금으로 투자하는 관행 등)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고용의 감소, 혹은 임금의 상대적 하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노동시장 계층화가 심화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

[그림 5] 부문별·규모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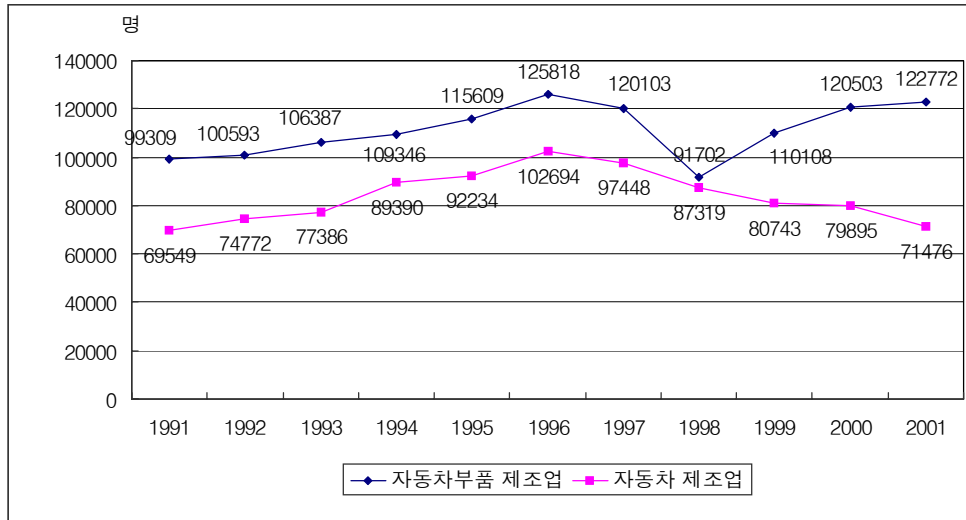
자료: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 고용의 변화

○ 총고용 규모와 종합 생산성

- 자동차산업(표준산업분류 D34)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외환위기 이전 22만명 수준에서 1999년 20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으나, 과거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완성차부문의 고용은 계속 감소한 반면 부품산업의 고용은 빠르게 회복되어 왔음. 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듈화, 외주화 등이 널리 확산되었음을 의미함.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고용의 감소와 부품부문의 고용증가 속에서 종합 생산성은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상승함.

[그림 6] 완성차(D341, 500인 이상)산업과 부품(D343)산업의 종업원수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년도.

<표 4> 자동차산업(D34)의 1인당 생산대수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인당 생산대수 I	11.5	11.9	12.6	10.4	14.2	15.3	14.5
1인당 생산대수 II (CKD 포함)	11.9	12.8	13.4	11.6	15.8	16.5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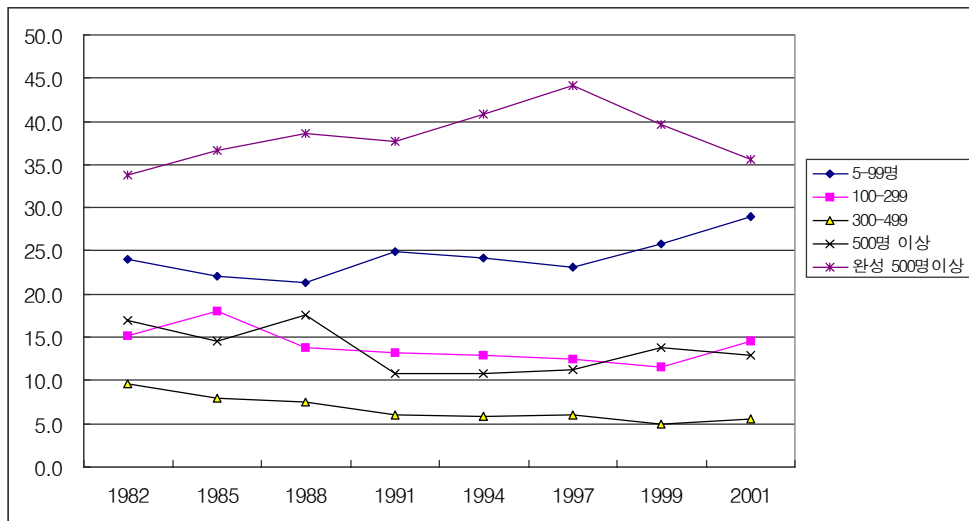
주: CKD는 Completely Knock Down의 약자로서 분해부품을 세트로 생산한 후 해외공장에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도록 한 것임.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CKD를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와 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 생산대수 자료에서 계산.

○ 소규모 부품기업의 고용 증가

- [그림 7]이 보여주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부품부문 중에서도 100인 미만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임. 이는 2차 하청으로의 외주화와 더불어 사내하청(일반적으로 100인 미만)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임.
- 다시 말해서 생산네트워크에서 하청 부문으로 작업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7] 자동차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추이



주: D34 산업 전체에 대한 각 부문의 비중이므로 D342 산업과 D341 중소규모 기업 등이 누락되어 합계는 100에 미달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노동이동률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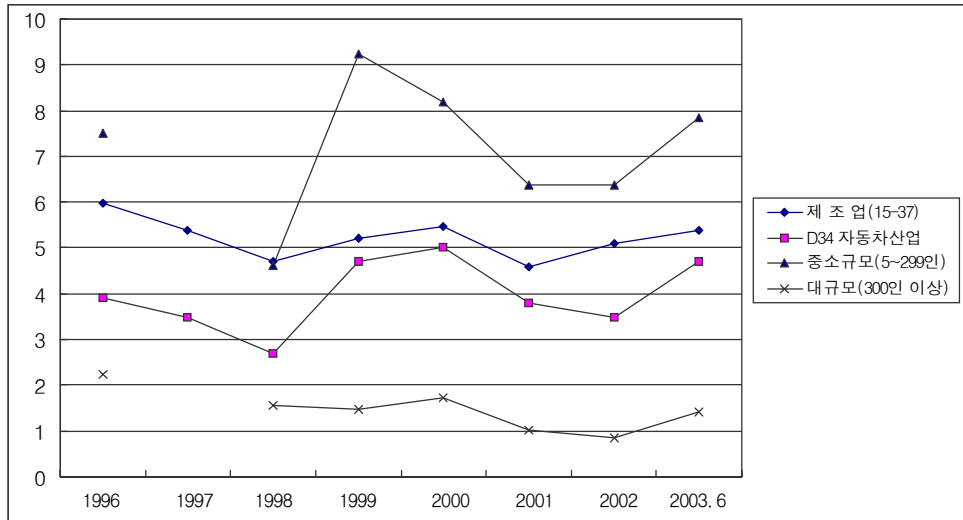
- [그림 8]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규직들의 노동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중소규모 부품업체들에서만 입직과 이직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이는 대기업에서의 내부노동시장 발달과 외부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분단을 시사함.

◆ 임금격차

○ 제조업보다 더 큰 자동차산업의 규모간 임금격차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규모간 임금격차는 제조업보다 더 큰데, 표본에서 현대자동차 등이 누락되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시계열로 보아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총임금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
- 임금구성상으로 보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격차가 정액급여보다 더욱 큼.

[그림 8] 자동차산업의 노동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5> 생산직 노동자의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월평균 임금격차

(단위: 원 %)

		전체(1996~2002)	1996	1999	2002
제조업	1	1,079,501.9 (58.9)	981,183.2 (63.1)	968,188.5 (54.0)	1,244,424.5 (52.3)
	2	1,063,552.4 (58.0)	928,527.4 (59.7)	987,700.5 (55.1)	1,255,823.9 (52.8)
	3	1,243,159.2 (67.8)	1,023,601.1 (65.9)	1,163,634.8 (64.9)	1,526,069.5 (64.2)
	4	1,493,780.4 (81.5)	1,169,935.9 (75.3)	1,382,886.7 (77.1)	1,898,539.2 (79.8)
	5	1,667,763.8 (91.0)	1,244,289.7 (80.1)	1,513,267.2 (84.4)	2,110,134.6 (88.7)
	6	1,832,315.0 (100.0)	1,554,120.8 (100.0)	1,793,941.7 (100.0)	2,378,615.4 (100.0)
자동차	1	1,068,263.8 (51.7)	1,118,479.8 (61.4)	878,823.7 (42.8)	1,130,232.3 (43.0)
	2	1,057,381.3 (51.2)	829,289.1 (45.5)	946,266.5 (46.0)	1,212,843.1 (46.1)
	3	1,420,643.5 (68.8)	1,164,102.5 (63.9)	1,439,558.1 (70.1)	1,690,544.4 (64.3)
	4	1,714,826.4 (83.0)	1,239,736.9 (68.0)	1,743,816.2 (84.9)	2,026,467.3 (77.1)
	5	1,923,036.0 (93.1)	1,136,589.7 (62.4)	1,482,285.7 (72.1)	2,527,705.6 (96.10)
	6	2,066,065.6 (100.0)	1,822,487.7 (100.0)	2,054,957.3 (100.0)	2,629,797.8 (100.0)

주: ()안은 규모 6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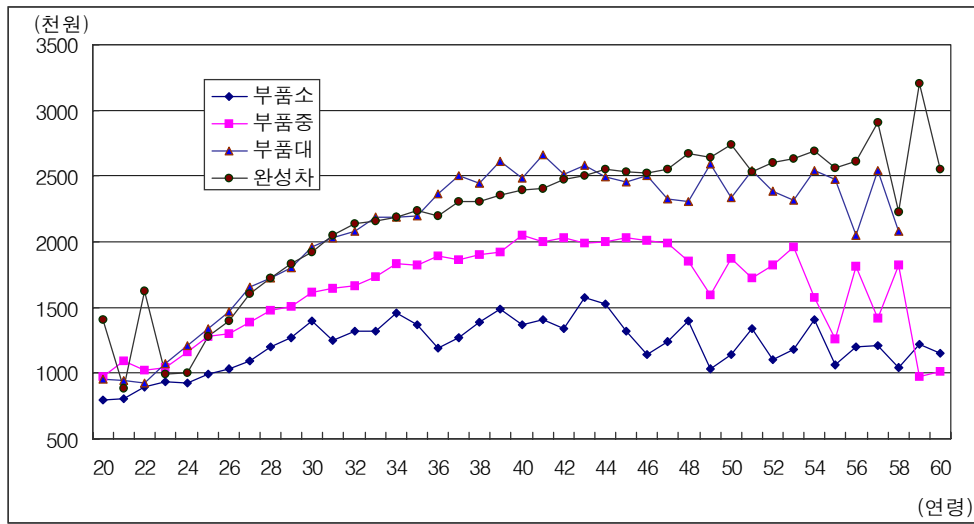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 1규모: 10~29명, 2규모: 30~99명, 3규모: 100~299명, 4규모: 300~499명, 5규모: 500~999명, 6규모: 1,000명 이상.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에서 추출.

○ 인적자본 격차와 노동시장의 분단

- 자동차산업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큰 것은 규모가 클수록 교대제 비중과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저근속, 저학력, 여성근로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등 인적자본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9]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승하는 연령-임금곡선을 나타내며, 이것은 이들 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임.

[그림 9] 자동차산업 생산직의 연령별 평균임금(남성, 1996, 1999, 2002년)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계산.

○ 순임금격차 확대 경향

- 인적자본과 사업체 특성 등을 통제한 이후 순임금격차를 추정해 보면(부표 참조) 기업규모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었음을 보여줌. 예를 들어 2002년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순임금은 50%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완성차업체 여부는 2002년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본에서 현대자동차 등 호황기업이 누락된 데 따른 것임.

○ 단가인하와 임률고정의 원칙

- 이처럼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은 단가결정시에 임률이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모델

생산주기 동안 부품업체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률이 고정되기 때문임.

- 부품업체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가공비에 연동되며 가공비는 임률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표 6>에서 보듯이 납품 단계와 기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임률이 달리 설정됨.
- 더욱이 정례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강제되는 단가인하(CR; Cost Reduction)로 인하여 부품업체들의 지불능력은 크게 제약됨.

<표 6> 부품업체 거래 단계별 단가결정식과 임률

	기본식	특 징	임 률
1차 도급거래	재료비+가공비+일반관리비+이윤+연구개발비+(금형개발비)	일반관리비=가공비의 24% 이윤=(가공비+일반관리비)의 15% 연구개발비 인정: 승인도업체와 대어도 업체의 구분 VE제안제도 활용 정례화된 CR	17,500원(a사: 295명) 19,500원(b사: 985명) 10,800원(c사: 287명)
2차 도급거래	재료비+가공비+일반관리비+이윤	일반관리비=가공비의 15-18% 이윤=(가공비+일반관리비)의 15% 정례화된 CR 연구개발비 불인정 VE제안제도 활용 거의 없음	7,000원(d사: 70명) 8,500원(e사: 40명)
3차 도급거래	재료비+가공비+일반관리비+이윤	정례화된 CR 연구개발비 없음 VE제안제도 활용 없음	4,500원(f사: 37명)

자료: 조성재 외,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비정규직(사내하청)의 임금수준

- <표 7>은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의 75% 정도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상대적으로 비용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

<표 7> 비정규직의 총노동비용과 생산성 비율(정규직=100에 대한 상대치)

	자 동 차				제 조 업		
	평균	완성차 300인 이상	부품 300인 이상	부품 300인 이하	평균	300인 이상	300인 이하
1인당 총노동비용	74.76	80.00	79.20	72.64	73.53	76.76	71.65
생산성	83.59	95.00	81.00	82.93	80.58	81.63	7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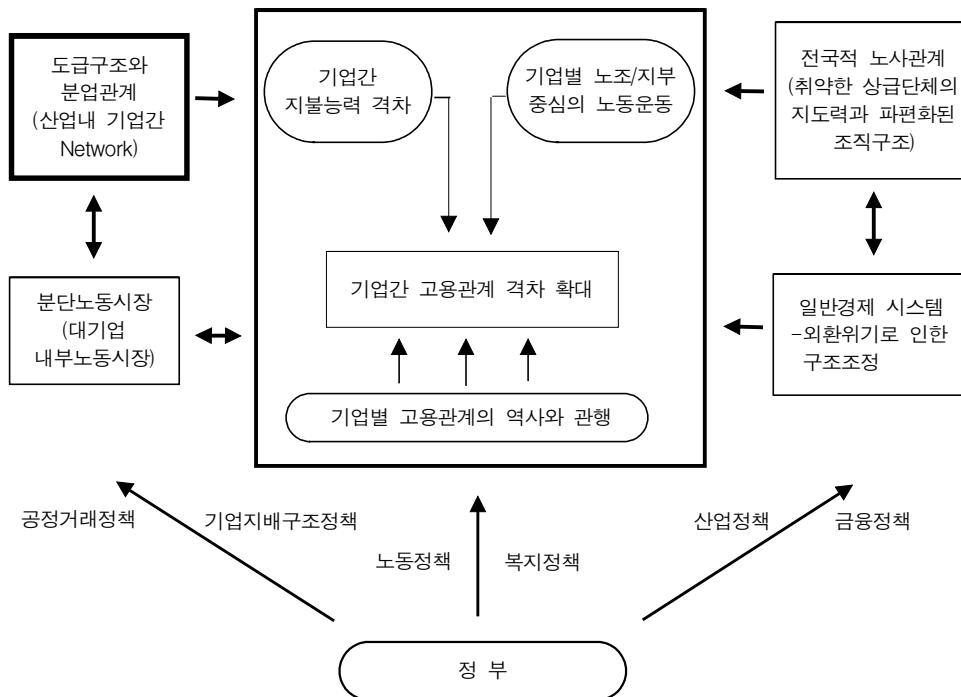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 추출.

◆ 격차 축소방안과 노사관계

○ 도급구조와 노동시장의 계층성

- 이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도급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노동시장의 계층성이 강화되고, 특히 임금과 고용안정 수준이 낮은 하층으로 작업량이 집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그림 10]에서 보여주듯이 이는 한편으로 기업별로 분산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이 이러한 계층화를 방조하거나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임.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수익성과 안전성 위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한 정부 정책과 금융시스템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함.
-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과 비용 압박의 결과 이제 부품기업들은 장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투자조차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새로이 사내하청을 널리 활용하게 됨.

[그림 10] 자동차산업내 고용관계의 계층화



○ 노사정의 노력 방향

- 완성차업체들은 지난 20여년간 수직계열화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진업체들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으나(catch-up), 향후 중국과 차별화되는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혁신능력을 갖출 것이 요망됨.
- 자동차산업 생산네트워크 내부에서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특수적 숙련을 지닌 근로자들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자격증제도의 정비, 그리고 사회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망됨.
- 이러한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계층성 치유, 노사관계의 파편화와 대립성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함.
-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기존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노사가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

<부표> 순임금격차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996>		<모형 1999>		<모형 2002>		<모형 1996~2002>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항	7.5041 ***	(219.8)	7.3127 ***	(131.2)	7.5738 ***	(161.8)	7.2360 ***	(278.2)
근속년수	0.0504 ***	(26.3)	0.0431 ***	(16.7)	0.0473 ***	(18.8)	0.0500 ***	(36.9)
근속년수제곱	-0.0010 ***	(-11.6)	-0.0008 ***	(-8.0)	-0.0012 ***	(-11.6)	-0.0010 ***	(-17.4)
경력년수	0.0575 ***	(23.2)	0.0177 ***	(5.2)	0.0459 ***	(14.0)	0.0491 ***	(28.0)
경력년수제곱	-0.0029 ***	(-23.4)	-0.0010 ***	(-5.6)	-0.0026 ***	(-15.4)	-0.0026 ***	(-28.7)
연령	0.0234 ***	(12.0)	0.0284 ***	(9.4)	0.0333 ***	(13.4)	0.0296 ***	(20.6)
연령제곱	-0.0003 ***	(-12.1)	-0.0003 ***	(-8.8)	-0.0004 ***	(-13.6)	-0.0004 ***	(-21.2)
초졸이하	-0.0690 ***	(-6.7)	-0.0056	(-0.4)	-	-	-	-
중졸	-0.0253 ***	(-4.0)	-0.0714 ***	(-7.0)	-0.0340 ***	(-3.8)	-0.0537 ***	(-11.0)
전문대졸	0.0001	(0.01)	-0.0599 ***	(-3.3)	-0.0373 ***	(-3.2)	-0.0261 ***	(-3.1)
대졸	0.0873 ***	(3.3)	0.0633 *	(1.73)	0.0935 ***	(3.8)	0.1137 ***	(6.9)
노조유무 (노조유=1)	0.0679 ***	(10.8)	0.3290 ***	(22.9)	0.0847 ***	(9.0)	0.0826 ***	(16.6)
비정상근로 (교대있음=1)	0.0488 ***	(10.3)	-0.0138 **	(-2.0)	0.0185 ***	(2.7)	0.0182 ***	(5.2)
감독자더미(=1)	0.0669 ***	(8.6)	0.1318 ***	(13.7)	0.0944 ***	(12.0)	0.0883 ***	(17.9)
남성(=1)	0.1550 ***	(20.4)	0.3045 ***	(27.6)	0.2233 ***	(24.0)	0.2248 ***	(41.7)
혼인상태 (기혼=1)	-0.0252 ***	(-4.2)	0.0126	(1.4)	0.0340 ***	(4.0)	0.0117 **	(2.5)
자격증 소지(=1)	-0.0337 ***	(-5.4)	-0.0274 ***	(-3.9)	0.0101	(1.0)	-0.0165 ***	(-3.8)
산업코드341, 500+(=1)	0.1952 ***	(30.1)	0.2130 ***	(22.4)	-0.1008 ***	(-7.6)	0.1434 ***	(27.0)
기업체규모 (100~299인)	-0.0176 **	(-2.2)	0.1735 ***	(14.8)	0.1367 ***	(10.8)	0.1021 ***	(16.5)
기업체규모 (300~499인)	0.0760 ***	(6.76)	0.0530 ***	(2.7)	0.3143 ***	(22.3)	0.2014 ***	(24.4)
기업체규모 (500~999인)	-0.0400 ***	(-4.4)	0.0732 ***	(4.0)	0.3629 ***	(28.7)	0.1960 ***	(28.5)
기업체규모(1000인 이상)	0.1780 ***	(18.6)	0.2248 ***	(12.6)	0.4760 ***	(30.8)	0.3211 ***	(42.9)
1999년 더미(=1)							0.1336 ***	(32.2)
2002년 더미(=1)							0.4412 ***	(109.6)
Adj-Rsq.	0.7784		0.7469		0.7738		0.7680	
OBS.	9,998		8,271		6,601		24,870	

주: 1) ()안은 t값, *** 1%에서 통계적 유의, ** 5%에서 통계적 유의, * 10%에서 통계적 유의, 경력년수 (a)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구간변수를 평균함.

2) 기준변수는 고졸, 노조비조직, 교대없음(시간제포함), 비감독자(직급), 여성, 미혼, 완성차산업(D341) 500인 이하와 자동차부품산업(D343) 전규모, 기업체규모(5~99인), <모형 1996~2002>의 연도 더미에서 기준변수는 1996년.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이슈 분석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무기*

I. 들어가며

- 최근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초 제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에서는 ‘실업자(구직중인 근로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초기업단위(지역) 노동조합의 노조설립 신고증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¹⁾이 나와 주목되고 있음.
 - － 이하에서는 먼저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노조법상 근로자의 해당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새로운 법리에서 제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gmoon@kli.re.kr).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서울여성노동조합사건).

II. 서울여성노조사건 판례

◆ 사건의 개요

- 원고 서울여성노동조합(이하 ‘서울여성노조’)은 ‘서울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9. 1. 10. 설립된 비법인(非法人) 사단(社團)으로서, 설립 당시 그 구성원에는 취업자 22명 이외에 미취업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음.
 - － 서울여성노조의 규약 제2조(목적) 제1항에서는 “노조는 규약 전문의 정신을 이어 받아 여성노동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설립취지와 근본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음.
 - － 아울러 같은 규약 제6조(구성)에서 “노조는 서울지역의 미조직 여성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로서 본 노조 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직 중인 여성근로자’를 그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서울여성노조는 2000. 8. 21. 위와 같은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0. 8. 23.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 － 이러한 처분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²⁾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³⁾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서울여성노조의 규약 제6조는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라는 것을 이유로 하였음.

- 이에 서울여성노조는 서울시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2001. 1. 16. 서울여성노조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시의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⁴⁾을 하였음.
 -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1. 9. 19.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⁵⁾을 내린 바 있음.
 - － 이에 서울시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이 확정·종결됨.

◆ 판결요지

- 대법원이 제시한 판결이유는 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각 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②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대법원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와 그 사용 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음.
 - － 결국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 즉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

4) 서울행정법원 2001. 1. 16. 선고, 2000구3092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1구2234 판결.

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임.

- 아울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음.
- 한편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
 - －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임.
 - － 이러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⁶⁾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근거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조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여성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6) 동 단서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해 제1심 판결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이 사용자에게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일 뿐, 그 조항 하나만으로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 범위를 한정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원이 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행정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저지되거나 적어도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그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III. 관련 판례·학설의 검토

◆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관계에 관한 판례·행정해석 및 학설을 살펴보면 ① 양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파악하여 사용종속관계 및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에 판단기준을 두는 경우, ② 노조법상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및 ③ 법규정 및 입법취지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⁷⁾.

가.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에 근거하는 입장

- 대다수 판례와 행정해석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완전히 동일하게 파악하는 가운데,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와 이러한 노무공급관계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품의 임금 해당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음.
 - － 이에 따른 경우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됨.
- 예를 들어 한국전력(주)사건⁸⁾에서 대법원은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 아울러 서울건해산물사건⁹⁾ 및 하급심 판결로서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동조

7)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167~173쪽 참조.

8) 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원심: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판결)에서는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와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서울건해산물노동조합이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소외회사는 소외조합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소외조합의 규약상 그 조합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소외조합은 그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어 그 조합원과 소외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

합사건¹⁰⁾에서도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이해하고 있음.¹¹⁾

- 대다수의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¹²⁾ 내지 ‘종속적 관계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지급’¹³⁾에 주목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음.
- 학설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노조법상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동일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입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취하는 사례¹⁴⁾를 발견할 수 있음.

며 근로시간과 장소 등 작업조건 및 조합원의 인사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단체협약 소종의 작업비용율표에 따른 보수를 소외회사로부터 매일 수령하여 적립한 후 그 조합원들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있으며 소외회사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료보험 또한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소외조합의 조합원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에 따라 소외회사 내지 그 회사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10)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판결에서는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인(캐디)이 골프장운영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내장객과 조를 이루어 그들이 경기하는 동안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내장객의 골프장입장료(그린피)에 포함된 봉사료(캐디피)를 전달받는 이외에 경기종료후 내장객이 임의로 주는 봉사료를 지급받을 뿐 위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또한 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수입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경기보조인들은 골프장운영회사의 중개로 내장객과 고용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그들이 위 회사로부터 출근시간, 근무상태, 경기과정에서 생긴 잔디파손 부분의 손질이나 청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함에 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들과 위 회사 및 내장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11) 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서울행법 2002. 8. 8. 선고, 2002구합2598 판결(에스케이생명보험(주)사건; 서울고법 2003. 6. 19. 선고, 2002누14111(항소기각)) 및 서울행법 2002. 4. 30. 선고, 2001구47029 판결(제일콘크리트공업(주)사건)에서는 보험모집인 및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법 2001. 4. 13. 선고, 2001카합177 판결(유진기업(주)사건)에서는 레미콘 운반차량의 소유권이 비록 운송차주에 있다하더라도 운송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12) 1981. 5. 7. 노조 1454 - 14115.
- 13) 1988. 7. 16. 노조 01254 - 10696.
- 14) 백재봉, 『근로자의 개념과 조합가입자격』, 『법정』, 1977. 8., 165쪽 참조.

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

-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동일하게 접근하면서도,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일정한 수입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견해임.
 - － 이에 따른 경우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이들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
-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사건¹⁵⁾에서 대법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지만, 봉사료가 ‘기타 임금에 준하는 수입’임을 감안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음.¹⁶⁾
 - －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범위가 넓혀짐으로써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는 행정해석¹⁷⁾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음.
- 한편 학설상으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기본적으로 사용종속성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실업자나 피해고자를 포함하는 ‘임금생활자’의 단결활동 보장의 필요성, 노무의 성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보수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의 포함 가능성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관계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사례¹⁸⁾가 있음.
 - － 다만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현실적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판단

1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16)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실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성질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략> 회사가 내장객을 임의 지정하는 것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봉사료(캐디피)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에 준하는 수입’임을 고려할 때 골프장의 캐디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

17) 1995. 1. 6. 노조 01254 - 54.

18) 김유성,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 『법률신문』, 1993. 8. 16., 16쪽 참조. 우리나라 노동법학계의 다수 견해라고 하겠음.

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대한 접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겠음.

다. 법규정 및 입법취지의 차이에 주목하는 입장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규정의 차이에 기초하여 양 법률이 취한 입법목적의 상이하다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사용종속성에서 출발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단결권의 보호필요성에 기초한 광범위한 노무공급자, 즉 현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및 잠재적으로 그러한 자를 포함한다는 견해임.
 -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 및 ‘임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한 접근방법이 기본적으로 상이하게 됨.
- 판례로는 앞에서 소개한 서울여성노조 대법원 판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해석은 발견되지 않음.
- 학설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사업과의 결합정도를 중심으로 한 사용종속성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해석상 단결활동 및 노조운동의 주체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¹⁹⁾가 있음.
 - － 다만 노조법상 ‘임금·급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는 일정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여러 사업과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된다고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음.
 - － 그런데 이 조항은 1987. 11. 28. 구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 그러다가 1997. 3. 13. 현행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그 단서가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19) 강성태, 앞의 논문, 173~176쪽 참조.

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이와 같은 입법적 과정을 거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이 위축·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학설의 일반적 경향임.
 - － 아울러 이 규정은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활동에 있어서도 보호되며,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조합위원장)의 조합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고²⁰⁾ 사업장 출입·조합임원 출마·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²¹⁾ 일반적이라고 하겠음.
-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의 신설에 따라 해고근로자의 지위가 일정기간 보장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동 단서 조항의 신설에 따라 마치 취업중인 자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우려²²⁾가 있음.
- 이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서울여성노조사건의 모든 재판부는, 위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
 - － 노동법학계의 다수설도 이 규정은 기업별 단위노조에게만 적용되고, 산별노조 등 초기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 그러나 종래 일반적인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르면 ‘해고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됨.

20)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신영택시사건).

2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충남택시사건);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건양기업사건); 행정해석으로는 1993. 9. 10. 노조 01254 - 1103 등이 있음.

22) 앞에서 살펴본 제1심 판결이 그 예임.

IV.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행정해석 및 학설의 주류는 근로자성,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공급관계의 사용종속성 및 지급된 임금의 임금성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왔음.
 - － 비록 일부 판례·행정해석 및 다수 학설에 의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리구성(예를 들어, ‘임금’의 범위 확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한 의미부여 등)이 있었지만,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체계 및 해석상의 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본 법리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에 구속되지 않는 노조법 특유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노동관련 판례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
 - －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규정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규정의 문구상의 상이점은 물론 양 법률의 입법취지상의 차이에 착안함으로써,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 아울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산업·직종·지역별 노동조합 등과 같은 초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출발하여, 조합원의 자격범위도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게의 종속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조직·가입 및 산별노조 건설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아울러 조합임원의 자격제한(노조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합원 및 노조임원의 자격요건 결정을 노조 스스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ILO의 입장(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2002), 490항)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번 대법원의 해석법리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체계상의 불일치,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실업자의 범위(신규실업자 포함 여부 등) 및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법리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정리가 예상되지만, 그 방향이 어디로 모아질 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힘든 영역이 있음.
- 따라서 현행 노동법체계의 불일치 및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단서의 삭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노 동 판 례

주요노동판례

윤 문 희*

1. 정리해고를 해야 할 요소들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
- (주) 전북은행 사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사건개요

원고 (주) 전북은행(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그 노동조합은 2001. 3. 15. 고임금의 인력구조로 인한 은행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2001년도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단체교섭회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정리인원수는 비조합원 30명 내외, 조합원 45명 내외로 정함과 동시에,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에 원고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1. 3. 20. 피고보조참가인(2급,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3급 이상 비조합원 30명, 4급 이하 조합원 45명 등 7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면서 만약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대기발령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01. 3. 23. 명예퇴직을 신청한 77명(비조합원 29명, 조합원 48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의결하여 목표보다 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명예퇴직의 인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자 참가인에 대하여 2001. 3. 26. 대기발령을 명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1. 9. 26. 퇴직처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1. 9. 26. 당시 그 수익성이 호전되어, 흑자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조합과도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명예퇴직 실시 후 48명에 이르는 인원내에 대하여 승진조치하고, 2001 9. 20.에는 대졸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여 같은 해 10. 25. 26명을 정식임용하였다.

원고가 위 명예퇴직 권고대상자 선정기준을 3급 이상 직원 131명에 대하여 적용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결과, 참가인은 권고대상 18위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와 그 노동조합이 위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명예퇴직 이외에 승진인사와 대졸사원의 신규채용의 점까지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부당해고구제심판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는 소¹⁾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²⁾

또한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³⁾ 이때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⁴⁾

본 사안에서 원고는 정리해고 당시에 해고인원을 이미 초과달성하였고, 참가인 등을 명예퇴직시킨 때에는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흑자를 이루었고, 직원의 승진 및 신규채용을 하는 등 경영상태나 해고회피노력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2.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임용기간 만료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사례(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병합) 결정)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의 사립학교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1999. 2. 1.부터 2001. 2. 말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8. 선고, 2002누18373 판결.

2)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대학이 운영하는 K공업대학의 부교수(청구인 황○○·이○○·최○○·김○○) 또는 조교수(청구인 박○○·김◇◇·이○·차○○·김□□)로 임용되었다.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신들이 위 한국산업기술대학으로부터 재임용거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으며 2001. 3. 2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에 의거하여 당해사건의 피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당해사건 피고는 위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청구인들을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문에서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1.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다.⁵⁾ 동 소송이 계속 중, 자신들에 대한 교원임용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전문과 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불복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전문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학문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4항·제6항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교원지위법정주의,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판결요지

청구인들은 당해소송에도 적용된 사립학교법조항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동 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이 조항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의결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재심청구사유에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은 ‘재임용거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소위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문제로⁶⁾ 현재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사건의 사립학교법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 2000헌바26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2000헌바26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이 사건의 사립학교법조항과는 연혁만 다를 뿐, 그 규정내용이 똑같다. 다만,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은 그 후문으로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립대학 교수의 임용에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에

5) 2002헌바14 사건의 청구인들은 서울행법 2001구32362(2002. 1. 17. 선고 원고패), 2002헌바32 사건의 청구인들은 서울행법 2001구32379호(2002. 2. 5. 선고 원고패)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

6) 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바27 결정 참조.

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으나 ‘기간임용제’의 본질은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2000헌바26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기만료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이 거부되는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은 소정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교원지위법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중 교원지위법조항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3. 단체협약 상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우자동차판매(주) 사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사건개요

원고 정○○은 1985.8.9, 원고 박○은 1987.2.5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각 입사한 후 1993.1.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로 자동 전입되어, 원고 정○○은 관리직 4급 사원으로 송도출고사무소에서, 원고 박○은 관리직 3급 대리로 직판부 직판 3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원고 정○○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지부 지부장으로, 원고 박○은 사무지부 회계감사로 활동해왔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정○○이 1998. 4. 16 및 같은 달 17일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외출한 후 귀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단결근하고, 타 직원들에 대한 인사명령과 징계에 개입하여 같은 해 6. 1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사이에 본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본사 정문 앞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농성을 벌여 근태불량(무단결근, 무단미귀사), 규율질서문란, 회사의 대외적 명예훼손, 지시불이행,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 제1, 2, 4, 8, 10호 및 제67조 제1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7.31 원고 박○을, 같은 해 8.19 원고 정○○을 각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 5. 1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7)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약이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특별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단순히 노조법 제5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노조법 제35조8)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9)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 제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7)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9)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참조.

노동일지

주요노동일지

(2004. 2. 16~2004. 3. 14)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 16		· 노동부: 김대환 장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신임인사	
2. 17			· 전주지역노사정: 산업평화선언문 채택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퇴직근로자: 하청노조 인정 등 요구 크레인 점거농성
2. 18		· 전경련: 제29대 회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선출	
2. 19	· 노동부: 김대환 장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 참석		
2. 20			·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 비정규직 노조원 정규직 노조 직가입 추진방안 확정 · 금속노조 한국에바라지회: 단협체결 지연 반발, 전면파업 계속(2003. 11. 27~) 중 수원노동사무소장 면담
2. 22			· 외환신용카드노조: 합병추진 및 임단협타결 지연 반발, 전면파업 계속(1. 13~)중 사측 직장폐쇄신고
2. 23			· 금속노조 월드텔레콤지회: 생산설비 사외반출 반발, 작업중단 계속(1. 8~)중 '04년 2월분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
2. 24	· 전경련: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경제인클럽	· 경총: 신임회장, 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선출	· 기아자동차노조: 노조원 2명 체포영장 집행반발, 2시간 작업거부 · 금속노조 대우종합기계지회 공동대책위: 분할매각 반대,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면담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 25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업재해 대책마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2. 26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기아특수강노조: 해고자 2인, 굴뚝 위 철야농성 계속(03. 11. 6~)중 비대위·사측 일부내용 합의
2. 27			· 외환신용카드노조: 쟁점사항 잠정합의 · 한국개발리스노조: 명예퇴직 실시에 반발 파업(03. 11. 21~)중 사측 직장폐쇄신고
2. 28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산업공동화저지 집회” 개최	
3. 2		· 전국공무원노조: 2기 지도부 출범식	
3. 3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개소식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개최	· 양산지역 노사관계자: “산업평화공동선언문” 채택
3. 4			· 대전시 노사정협의회: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 · 금속노조 만도지부: 특별상여금 지급 사측안 관련 잔업거부(2. 27~)중 노사합의
3. 5			· 서울지역 노사장: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문” 채택
3. 6		·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3. 8		·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3. 10		·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 개최	· 기아자동차노조 화성지부: 생산라인 일부 이전반발, 2시간 잔업거부 계속(3. 9~)
3. 11			·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노사정 공동합의문” 채택
3. 12		· 민주노총 공공연맹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3. 13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입단협 체결지연 등 반발, 부분파업 계속(3. 6~)

주요 통계

<표 1-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소비지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¹⁾		
실 적 액	1997	523,034.7	544,131.5	115,274.3	53,667.3	10,778.6	257,324.0	363,911.2	192,033.8
	1998	487,183.5	499,004.0	106,173.0	48,295.2	10,742.0	247,182.1	325,361.8	147,991.7
	1999	533,399.3	545,970.1	129,287.5	44,458.6	11,708.4	263,424.6	357,016.3	160,336.3
	2000	578,664.5	576,160.0	151,243.0	42,926.7	13,212.5	279,605.0	382,398.2	179,907.7
	2001	600,865.9	592,408.5	154,503.3	45,279.0	14,169.1	293,128.9	401,191.4	179,576.3
	2002	642,748.1	633,842.1	166,242.9	46,529.4	15,258.0	316,104.8	431,484.2	191,464.6
	2003	662,474.4	645,497.0	174,201.2	50,308.7	16,128.9	321,719.7	429,315.6	198,378.6
	1999 4/4	150,274.6	153,715.6	36,263.4	12,573.5	2,994.9	69,249.9	95,855.1	46,271.9
	2000 1/4	133,383.4	134,501.5	36,108.6	7,668.2	3,468.7	67,902.5	93,958.3	38,139.9
	2000 2/4	144,171.4	142,942.8	37,838.2	11,681.4	3,200.3	69,542.9	93,900.6	47,819.5
	2000 3/4	144,350.1	143,441.3	38,088.3	11,338.5	3,320.7	69,825.0	94,829.4	46,053.3
	2000 4/4	156,759.7	155,274.2	39,207.9	12,238.6	3,222.7	72,334.8	99,709.9	47,895.1
	2001 1/4	138,047.3	136,026.1	37,329.3	7,800.4	4,000.4	70,831.8	96,068.8	36,714.4
	2001 2/4	149,503.6	146,555.5	39,382.8	11,828.2	3,326.2	72,580.0	97,856.4	46,148.2
	2001 3/4	149,311.5	147,117.0	38,085.9	12,316.5	3,437.0	73,284.1	100,245.4	45,842.2
	2001 4/4	164,003.6	162,710.0	39,705.2	13,333.9	3,405.5	76,432.9	107,020.9	50,871.6
	2002 1/4	147,076.1	145,751.7	39,253.9	8,360.7	4,190.9	75,744.3	105,129.6	39,528.2
	2002 2/4	159,990.3	156,554.3	41,828.8	12,145.1	3,567.2	78,628.4	106,140.3	49,501.8
	2002 3/4	159,407.1	157,215.8	40,909.0	11,724.1	3,771.1	79,708.3	107,562.3	46,947.6
	2002 4/4	176,274.6	174,320.2	44,251.1	14,299.5	3,728.8	82,023.9	112,652.0	55,487.0
	2003 1/4	152,491.3	146,454.9	41,237.1	9,064.1	4,488.9	77,167.9	106,121.8	41,363.9
	2003 2/4	163,493.5	158,940.5	42,906.2	13,076.6	3,883.7	79,504.0	105,260.5	51,347.1
	2003 3/4	163,301.5	160,545.6	42,277.2	12,673.3	3,888.8	81,023.5	106,576.3	48,190.3
	2003 4/4	183,188.1	179,556.0	47,780.7	15,494.6	3,867.5	84,024.2	111,357.0	57,477.2
성 장 률	1997	4.7	2.7	4.9	2.8	10.0	5.1	3.2	-2.3
	1998	-6.9	-8.3	-7.9	-10.0	-0.3	-3.9	-10.6	-22.9
	1999	9.5	9.4	21.8	-7.9	9.0	6.6	9.7	8.3
	2000	8.5	5.5	17.0	-3.4	12.8	6.1	7.1	12.2
	2001	3.8	2.8	2.2	5.5	7.2	4.8	4.9	-0.2
	2002	7.0	7.0	7.6	2.8	7.7	7.8	7.6	6.6
	2003	3.1	1.8	4.8	8.1	5.7	1.8	-0.5	3.6
	1999 4/4	10.9	10.1	26.6	-8.5	14.3	7.1	11.2	13.2
	2000 1/4	13.1	10.0	24.9	-7.0	17.8	9.3	10.3	23.7
	2000 2/4	9.4	6.1	17.7	-3.1	14.3	6.7	8.7	14.8
	2000 3/4	8.2	6.1	19.2	-2.2	11.8	4.4	5.8	10.8
	2000 4/4	4.3	1.0	8.1	-2.7	7.6	4.5	4.0	3.5
	2001 1/4	3.5	1.1	3.4	1.7	15.3	4.3	2.2	-3.7
	2001 2/4	3.7	2.5	4.1	1.3	3.9	4.4	4.2	-3.5
	2001 3/4	3.4	2.6	0.0	8.6	3.5	5.0	5.7	-0.5
	2001 4/4	4.6	4.8	1.3	8.9	5.7	5.7	7.3	6.2
	2002 1/4	6.5	7.1	5.2	7.2	4.8	6.9	9.4	7.7
	2002 2/4	7.0	6.8	6.2	2.7	7.2	8.3	8.5	7.3
	2002 3/4	6.8	6.9	7.4	-4.8	9.7	8.8	7.3	2.4
	2002 4/4	7.5	7.1	11.4	7.2	9.5	7.3	5.3	9.1
	2003 1/4	3.7	0.5	5.1	8.4	7.1	1.9	0.9	4.6
	2003 2/4	2.2	1.5	2.6	7.7	8.9	1.1	-0.8	3.7
	2003 3/4	2.4	2.1	3.3	8.1	3.1	1.7	-0.9	2.6
	2003 4/4	3.9	3.0	8.0	8.4	3.7	2.4	-1.1	3.6

주: 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1-2> 주요 거시경제지표(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 종 소비지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¹⁾		
실 질 금 액	1997	423,006.7	402,655.4	126,117.2	46,137.4	9,809.0	175,956.0	268,722.6	145,294.6
	1998	394,710.4	366,026.0	116,734.8	42,161.3	9,868.0	163,287.2	241,688.0	114,563.5
	1999	437,709.4	400,521.2	141,295.1	38,305.8	10,897.0	182,771.9	264,480.4	118,772.9
	2000	478,532.9	415,098.8	163,733.1	37,125.3	12,425.3	200,170.6	282,313.2	132,337.3
	2001	493,380.3	420,774.3	167,172.3	39,207.0	13,064.4	208,031.3	292,260.7	129,926.6
	2002	524,689.4	441,463.1	177,737.3	40,449.1	14,782.4	226,421.0	312,644.3	136,219.6
	1999. 2/4	107,613.4	98,305.5	35,109.7	9,916.4	2,591.2	45,065.7	64,474.1	30,364.8
	3/4	110,085.2	100,234.5	35,672.7	10,143.7	2,680.8	45,364.3	67,192.6	30,382.0
	4/4	123,085.7	112,196.2	39,401.9	10,961.9	2,866.5	48,583.0	70,045.3	33,539.7
	2000. 1/4	109,670.5	96,000.5	38,226.6	6,774.3	3,289.4	49,201.4	69,189.3	30,064.6
	2/4	118,563.0	102,552.8	41,112.4	9,545.3	2,984.0	49,873.2	69,817.7	34,383.2
	3/4	121,061.2	105,343.2	42,265.4	9,967.3	3,035.3	49,565.1	70,884.8	33,690.2
	4/4	129,238.1	111,476.2	42,128.7	10,838.4	3,116.8	51,531.0	72,421.5	34,199.3
	2001. 1/4	113,830.6	96,123.6	39,983.5	6,901.6	3,619.0	50,995.6	70,382.4	28,591.1
	2/4	122,125.5	103,950.2	42,128.9	9,679.9	3,068.8	51,805.4	72,580.0	32,599.4
	3/4	123,645.2	105,951.8	41,922.0	10,730.7	3,118.5	51,523.1	74,320.1	32,848.7
	4/4	133,778.9	114,748.6	43,138.0	11,894.8	3,258.1	53,707.4	76,978.1	35,887.4
	2002. 1/4	120,860.9	103,532.6	41,654.4	7,498.3	4,115.3	55,121.0	76,307.2	30,482.1
	2/4	130,226.6	109,729.0	44,915.1	9,977.9	3,471.4	56,566.8	77,971.3	34,370.8
	3/4	130,758.2	108,767.5	44,230.7	10,324.2	3,482.1	56,397.8	78,443.1	33,026.5
	4/4	142,843.7	119,434.0	46,937.1	12,648.6	3,713.6	58,335.3	79,922.7	38,340.2
	2003. 1/4	125,315.3	101,629.6	43,810.6	8,150.2	4,430.5	56,218.9	77,189.1	31,937.3
	2/4	132,730.9	109,990.1	45,916.5	10,772.4	3,677.3	56,988.3	76,875.2	35,575.0
	3/4	133,725.0	109,758.6	45,280.4	11,178.8	3,695.5	57,393.0	77,375.6	33,778.7
성 장 률	1997	5.0	2.1	6.6	1.4	11.5	5.4	3.2	-2.2
	1998	-6.7	-9.1	-7.4	-8.6	0.6	-7.2	-10.1	-21.2
	1999	10.9	9.4	21.0	-9.1	10.4	11.9	9.4	3.7
	2000	9.3	3.6	15.9	-3.1	14.0	9.5	6.7	11.4
	2001	3.1	1.4	2.1	5.6	5.1	3.9	4.2	-1.8
	2002	6.3	4.9	6.3	3.2	13.2	8.8	6.2	4.8
	1999. 2/4	11.2	9.6	20.9	-6.9	8.6	12.0	9.5	4.2
	3/4	13.0	10.6	26.2	-8.4	10.0	13.4	10.5	6.7
	4/4	13.0	10.2	26.4	-8.7	17.2	14.2	10.8	7.2
	2000. 1/4	13.1	6.5	22.9	-7.0	19.2	12.4	10.2	22.8
	2/4	10.2	4.3	17.1	-3.7	15.2	10.7	8.3	13.2
	3/4	10.0	5.2	18.5	-1.7	13.2	9.3	5.5	10.9
	4/4	5.0	-0.6	6.9	-1.1	8.7	6.1	3.4	2.0
	2001. 1/4	3.8	0.6	4.6	1.9	10.0	3.6	1.7	-4.9
	2/4	3.0	1.4	2.5	1.4	2.8	3.9	4.0	-5.2
	3/4	2.1	0.6	-0.8	7.7	2.7	4.0	4.8	-2.5
	4/4	3.5	2.9	2.4	9.7	4.5	4.2	6.3	4.9
	2002. 1/4	6.2	7.7	4.2	8.6	13.7	8.1	8.4	6.6
	2/4	6.6	5.6	6.6	3.1	13.1	9.2	7.4	5.4
	3/4	5.8	2.7	5.5	-3.8	11.7	9.5	5.5	0.5
	4/4	6.8	4.1	8.8	6.3	14.0	8.6	3.8	6.8
	2003. 1/4	3.7	-1.8	5.2	8.7	7.7	2.0	1.2	4.8
	2/4	1.9	0.2	2.2	8.0	5.9	0.7	-1.4	3.5
	3/4	2.3	0.9	2.4	8.3	6.1	1.8	-1.4	2.3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 단, 금융위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2> 각 기관의 2003년 및 2004년 거시경제 전망

2003년 전망 (이 전)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4	2003년 1/4분기 KDI 경제전망	4.2	3.8	15.0	3.4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3.5	4.0	13.0	-
LG 경제연구원	2003. 4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3.8	3.8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4	현 경기국면평가와 국내외 경제전망	4.0내외	3.9	-10.0	3.5
한 국 은 행	2003. 4	향후 경제전망	4.1	3.9	-1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6	매월노동동향 통권 23호	-	-	-	3.3

2003년 전망 (최 근)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10	2003년 3/4분기 KDI 경제전망	2.6	3.4	64.0	3.5
LG 경제연구원	2003. 6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3	3.2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6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4.0내외	3.7	-10.0	3.5
한 국 은 행	2003. 7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1	3.5	2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9	매월노동동향 통권 26호	-	-	-	3.4

2003년 전망 (수정 전망)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 국 은 행	2003. 12	2004년 경제전망	2.9	3.6	120.0	-
삼성경제연구소	2003. 9	최근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2.7	3.3	31.7	3.3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2003년 4/4분기 KDI 경제전망	2.7	3.5	112.0	3.4
LG 경제연구원	2003. 9	2004년 경제전망 및 시사점	2.8	3.4	32.0	3.4
현대경제연구원	2003. 9	2004년 국내경제전망과 경제회생과제	2.8	3.5	23.0	3.5
한국경제연구원	2003. 12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8	3.6	86.3	3.4

2004년 전망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 국 은 행	2003. 12	2004년 경제전망	5.2	2.9	60.0	-
삼성경제연구소	2003. 9	최근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4.3	2.8	24.7	3.0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2003년 4/4분기 KDI 경제전망	5.3	2.8	74.0	3.4
LG 경제연구원	2003. 9	2004년 경제전망 및 시사점	5.1	2.8	17.0	3.3
현대경제연구원	2003. 9	2004년 국내경제전망과 경제회생과제	4.5	3.0	20.0	3.3
한국경제연구원	2003. 12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4.8	2.6	40.1	3.3
한국노동연구원	2004. 1	매월노동동향 통권 30호	-	-	-	3.2

<표 3> 대외거래

(단위 : 십억원, 백만달러)

	국민소득계정 ¹⁾				국제수지			
	수 출	상품수출	수 입	상품수입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1998	175,640.5	149,968.1	109,798.1	88,004.2	40,371.2	41,665.0	132,251.2	90,586.2
1999	203,443.5	178,074.5	141,443.0	116,848.9	24,521.9	28,463.0	145,375.4	116,912.4
2000	245,132.6	218,952.5	169,715.7	141,443.4	12,250.8	16,953.6	176,220.5	159,266.9
2001	246,733.3	219,608.5	164,594.4	134,989.9	8,032.6	13,488.0	151,478.3	137,990.3
2002	283,418.0	257,114.2	191,512.9	157,844.9	5,393.9	14,777.4	163,414.0	148,636.6
2003	-	-	-	-	12,320.7	22,161.3	197,637.2	175,475.9
1999. 3/4	51,070.4	44,711.9	34,729.3	28,860.3	6,610.9	6,947.4	36,487.8	29,540.4
4/4	56,001.0	49,217.7	39,625.9	32,841.5	5,665.7	6,769.0	41,681.2	34,912.2
2000. 1/4	57,606.3	51,449.7	42,099.3	35,417.6	1,616.4	2,545.7	41,615.1	39,069.4
2/4	61,274.3	54,552.3	42,306.3	35,319.6	2,939.3	4,653.0	44,164.6	39,511.6
3/4	62,252.8	55,678.8	42,499.8	35,167.1	4,233.0	5,480.4	45,498.2	40,017.8
4/4	62,999.2	57,271.7	42,810.3	35,539.1	3,462.1	4,274.5	44,942.6	40,668.1
2001. 1/4	62,795.8	55,922.7	42,224.0	35,382.2	2,666.9	3,224.8	40,664.6	37,439.8
2/4	61,652.6	54,518.4	39,145.6	32,037.8	3,738.2	5,127.9	38,720.8	33,592.9
3/4	59,504.0	52,660.7	40,028.4	32,345.6	1,185.3	2,964.9	36,271.5	33,306.6
4/4	62,780.9	56,506.7	43,196.4	35,224.3	442.2	2,170.4	35,821.4	33,651.0
2002. 1/4	64,334.0	58,044.2	44,961.2	36,908.7	1,400.6	3,259.9	36,215.8	32,955.9
2/4	69,542.9	62,867.0	46,489.2	38,413.0	1,569.7	4,450.7	40,831.4	36,380.7
3/4	71,573.4	64,701.1	48,247.4	39,614.8	547.2	3,012.2	41,134.4	38,122.2
4/4	77,967.7	71,501.9	51,815.1	42,908.4	1,876.4	4,054.6	45,232.4	41,177.8
2003. 1/4	75,384.3	69,536.1	53,010.8	43,942.6	-1,758.8	1,232.1	44,563.2	43,331.1
2/4	76,636.3	70,370.0	49,973.5	41,681.3	2,486.8	5,725.6	46,553.9	40,828.3
3/4	82,431.9	75,562.7	52,626.1	43,134.9	3,992.3	7,046.4	49,135.1	42,088.7
4/4	-	-	-	-	7,660.6	8,345.0	57,529.6	49,184.6
2001. 12					-192.3	613.5	11,773.2	11,159.7
2002. 1					153.5	656.0	11,725.5	11,069.5
2					328.4	690.4	10,899.3	10,208.9
3					918.7	1,913.5	13,591.0	11,677.5
4					-197.0	1,200.0	13,452.2	12,252.2
5					931.5	1,495.5	13,984.4	12,488.9
6					835.2	1,755.2	13,394.8	11,639.6
7					16.1	767.1	13,512.6	12,745.5
8					215.7	1,111.8	13,644.5	12,532.7
9					315.4	1,133.3	13,977.3	12,844.0
10					1,470.9	2,169.9	15,645.9	13,476.0
11					1,137.8	1,452.6	15,053.8	13,601.2
12					-732.3	432.1	14,532.7	14,100.6
2003. 1					-432.3	787.0	14,945.2	14,158.2
2					-118.4	510.5	14,046.3	13,535.8
3					-1,208.1	-65.4	15,571.7	15,637.1
4					-380.5	1,266.0	15,823.2	14,557.2
5					1,168.0	1,688.6	14,900.2	13,211.6
6					1,699.3	2,771.0	15,830.5	13,059.5
7					417.8	1,574.6	16,038.7	14,464.1
8					1,377.5	2,366.4	15,613.1	13,246.7
9					2,197.0	3,105.4	17,483.3	14,377.9
10					2,485.6	3,047.4	19,160.3	16,112.9
11					2,948.0	3,101.0	18,655.8	15,554.8
12					2,452.3	2,609.0	19,958.7	17,349.7
2004. 1					2,343.7	2,975.5	18,811.1	15,835.6

주: p는 잠정치.

1) 1995년 불변가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4> 기업 및 산업활동

(단위 : 개소, 2000=100, %)

	어음부도율			산업활동(원계열)				
	부도업체	신설법인 ¹⁾	어음부도율	생 산	출 하	재 고 ²⁾	기동률 ³⁾	평균기동률
1997	17,168	21,057	0.40	73.7	75.1	110.1	101.0	79.4
1998	22,828	20,095	0.38	68.9	68.6	91.3	86.8	68.0
1999	6,718	30,701	0.33	85.6	85.8	93.2	97.7	76.5
2000	6,693	41,460	0.26	100.0	100.0	104.9	100.0	78.6
2001	5,278	39,599	0.23	100.7	101.3	105.3	95.9	75.3
2002	4,244	38,972	0.06	108.8	109.3	104.5	99.7	78.4
2003	5,308	33,497	0.08	114.4p	113.9p	110.5p	99.7p	78.3p
2001. 2/4	1,335	10,143	0.23	101.8	102.6	109.3	99.2	75.8
3/4	1,147	10,339	0.20	99.3	99.9	105.6	94.7	75.3
4/4	1,271	9,414	0.17	104.4	105.0	105.3	95.7	73.8
2002. 1/4	980	10,983	0.08	103.7	104.9	101.9	96.0	77.9
2/4	977	10,063	0.06	109.1	109.6	102.8	102.5	78.3
3/4	1,077	8,722	0.06	106.2	106.2	102.1	97.5	78.9
4/4	1,190	9,204	0.06	116.3	116.4	104.5	102.9	78.5
2003. 1/4	1,191	9,349	0.09	110.0	109.6	112.7	97.1	78.5
2/4	1,348	8,449	0.09	112.6	112.7	112.3	100.8	77.3
3/4	1,417	7,500	0.08	109.6	108.9	110.4	94.8	76.9
4/4	1,352	8,192	0.06	125.4p	124.3p	110.5p	105.6p	80.4p
2001. 12	447	3,264	0.15	103.7	103.8	105.3	92.1	71.8
2002. 1	384	4,013	0.06	105.9	105.3	108.0	97.9	77.5
2	285	3,213	0.09	94.1	96.4	104.4	86.0	77.2
3	331	3,757	0.11	111.1	113.0	101.9	104.2	79.0
4	311	3,623	0.08	111.4	112.1	102.8	105.5	79.8
5	317	3,647	0.04	112.3	113.3	101.5	105.9	79.0
6	349	2,793	0.04	103.5	103.3	102.8	96.2	76.0
7	369	3,118	0.06	107.2	105.5	104.2	98.9	79.4
8	357	2,889	0.05	106.5	106.0	105.1	97.9	79.7
9	351	2,715	0.05	105.0	107.0	102.1	95.8	77.6
10	400	3,461	0.05	117.0	117.3	103.3	106.0	78.8
11	372	2,928	0.04	116.6	117.2	103.3	103.1	78.7
12	418	2,815	0.07	115.5	114.6	104.5	99.5	78.1
2003. 1	411	3,381	0.04	110.0	109.0	109.4	96.9	78.7
2	384	2,968	0.08	103.4	103.6	110.4	91.9	79.0
3	396	3,000	0.14	116.6	116.2	111.7	102.9	77.9
4	507	3,030	0.08	113.7	113.7	113.1	103.0	77.7
5	428	2,684	0.08	111.6	111.9	113.0	99.7	76.3
6	413	2,735	0.10	112.4	112.5	112.3	99.9	78.0
7	508	2,914	0.07	108.3	106.8	113.3	94.0	74.7
8	471	2,403	0.09	108.2	107.4	113.0	93.7	77.2
9	438	2,183	0.08	112.3	112.6	110.4	97.3	78.9
10	480	2,864	0.06	126.1	125.5	119.6	109.2	81.1
11	440	2,493	0.06	122.3	121.5	109.4	103.0	79.6
12	432	2,835	0.08	127.8p	126.0p	110.5p	104.9p	80.4p
2004. 1	317	2,529	0.05	115.3p	113.4p	112.9p	94.9p	80.5p
2	401	2,787	0.05					

주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단, 1997년 이전은 울산을 제외한 7대 도시 기준.

2) 재고의 연평균 지수는 연말 기준.

3) 제조업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통계청, 산업활동 DB.

<표 5> 경기종합지수(원계열)

(단위 : 2000=100)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01. 1	96.5	101.2	105.1	101.8
2	97.1	101.6	105.0	101.6
3	97.6	102.0	105.5	101.5
4	97.6	102.1	106.0	101.0
5	98.0	102.5	106.8	100.8
6	98.6	102.7	107.7	100.5
7	98.6	102.8	108.4	100.0
8	98.6	103.3	109.0	99.9
9	98.7	104.2	109.8	100.2
10	99.7	105.3	110.4	100.7
11	100.8	105.8	111.0	100.6
12	101.9	105.6	112.0	99.8
2002. 1	103.6	106.6	112.2	100.1
2	105.5	107.7	112.3	100.6
3	107.7	109.3	111.7	101.6
4	109.0	110.1	112.4	101.7
5	109.2	110.5	112.8	101.5
6	108.4	110.6	113.2	101.0
7	107.9	111.2	113.9	100.9
8	107.5	111.9	114.7	101.0
9	108.0	112.8	115.3	101.2
10	108.1	113.0	115.3	100.9
11	108.7	113.6	115.4	100.8
12	109.0	114.3	115.8	100.8
2003. 1	108.9	115.2	116.9	101.0
2	108.2	115.3	117.2	100.5
3	107.1	115.4	118.1	100.1
4	106.5	115.2	118.2	99.3
5	106.2	115.2	119.0	98.7
6	107.5	115.4	119.5	98.4
7	108.0	115.6	119.9	98.0
8	109.0	116.4	120.4	98.0
9	109.0	117.1	120.6	98.1
10	110.0	118.7	121.0	98.9
11p	110.5	119.7	121.6	99.1
12p	111.0	120.8	122.1	99.5
2004. 1p	111.4	121.7	123.0	99.7

주: 1) p는 잠정치.

2) 선행종합지수 - 임의직자 비율, 재고순환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 자본재수입액, 건축허가면적, 종합주가지수, 총유동성, 순상품교역조건 포함.

3) 동행종합지수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포함.

4) 후행종합지수 - 이직자수,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 유통수익률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표 6> 주요 가격지표

(단위 : %, 2000=100, 원/달러)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물가지수			대미환율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기준환율	평균환율
1998	5.9	100.1	97.0	94.3	1,207.8	1,398.9
1999	-0.1	98.0	97.8	96.5	1,145.4	1,189.5
2000	0.7	100.0	100.0	100.0	1,259.7	1,130.6
2001	3.5	99.5	104.1	105.1	1,326.1	1,290.8
2002	2.9	99.2	106.9	107.7	1,200.4	1,251.2
2003	2.3	101.4	110.7	112.1	-	1,191.9
1999. 3/4	1.6	97.6	97.6	96.3	1,218.7	1,194.3
4/4	2.9	99.5	98.6	98.1	1,145.4	1,174.0
2000. 1/4	0.9	100.3	99.3	98.9	1,108.3	1,125.7
2/4	1.2	99.6	99.1	98.6	1,114.8	1,116.2
3/4	-0.1	99.9	100.5	100.7	1,115.0	1,115.3
4/4	1.0	100.1	101.1	101.8	1,259.7	1,164.3
2001. 1/4	3.9	100.4	102.9	103.9	1,328.0	1,271.2
2/4	5.1	100.2	104.1	105.3	1,300.7	1,305.9
3/4	3.7	99.4	104.7	106.0	1,309.1	1,293.9
4/4	1.7	98.1	104.5	105.3	1,326.1	1,292.1
2002. 1/4	2.2	98.3	105.5	106.2	1,326.4	1,319.6
2/4	2.7	99.7	106.9	108.0	1,201.8	1,269.5
3/4	2.3	99.2	107.4	108.2	1,225.5	1,196.6
4/4	3.9	99.7	107.9	108.5	1,200.4	1,220.6
2003. 1/4	2.5	101.2	109.8	111.1	1,252.9	1,201.0
2/4	1.8	101.0	110.5	111.7	1,193.1	1,208.9
3/4	2.5	101.1	110.8	112.1	1,150.2	1,175.4
4/4	2.3	102.3	111.7	113.3	1,197.8	1,181.4
2002. 2		98.3	105.5	106.1	1,327.7	1,318.7
3		98.8	106.1	107.0	1,326.4	1,322.5
4		99.6	106.7	107.7	1,292.2	1,318.9
5		100.0	107.1	108.3	1,233.3	1,266.1
6		99.4	107.0	107.9	1,201.8	1,223.5
7		99.1	106.7	107.2	1,197.0	1,185.1
8		99.2	107.4	108.2	1,200.5	1,196.3
9		99.4	108.0	109.1	1,225.5	1,208.5
10		99.6	107.7	108.3	1,233.4	1,241.1
11		99.8	107.8	108.3	1,208.0	1,211.9
12		99.8	108.3	108.9	1,200.4	1,208.9
2003. 1		100.5	109.0	109.8	1,170.5	1,179.3
2		101.1	109.6	110.6	1,186.8	1,191.2
3		102.1	110.9	112.9	1,252.9	1,232.4
4		101.5	110.7	112.3	1,213.1	1,232.8
5		101.0	110.5	111.7	1,206.6	1,199.8
6		100.5	110.2	111.2	1,193.1	1,194.0
7		100.7	110.1	111.2	1,180.0	1,181.6
8		101.1	110.6	112.0	1,179.9	1,178.4
9		101.5	111.6	113.2	1,150.2	1,166.2
10		101.8	111.7	113.5	1,177.3	1,166.3
11		102.2	111.5	112.9	1,202.6	1,184.9
12		102.9	112.0	113.5	1,197.8	1,193.0
2004. 1		104.3	112.7	114.5	1,173.6	1,184.3
2		105.6	113.2	115.3	1,174.5	1,166.2

주: 1) 2000년 기준, 평균환율은 고시최초평균환율, 기준환율은 말일자료.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경제통계 DB.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표 7>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단위 : 2000=100, 1995=100)

	수 출			수 입			순상품교 역 조건	소득교역 조건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1998	124.5	74.0	102.0	105.7	65.1	87.4	116.7	86.4
1999	101.0	82.9	99.6	92.9	84.0	87.3	114.1	94.6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96.2	100.7	86.9	103.5	97.7	91.0	95.5	96.2
2002	89.5	114.1	83.1	97.1	109.7	87.5	95.0	108.4
2003	87.5	-	-	98.9	-	-	-	-
2000. 1/4	100.9	90.8	100.7	98.9	97.5	99.5	101.2	91.9
2/4	98.8	101.0	99.9	98.3	101.9	97.4	102.6	103.6
3/4	101.6	102.3	101.4	99.8	100.2	100.1	101.3	103.6
4/4	98.7	106.6	97.5	102.9	100.2	103.2	94.5	100.7
2001. 1/4	101.6	97.8	93.3	106.6	99.9	95.6	97.6	95.5
2/4	99.6	100.4	88.9	107.9	94.0	92.8	95.8	96.2
3/4	93.8	104.4	84.3	103.4	95.0	90.8	92.8	93.2
4/4	89.8	105.0	80.9	96.3	102.5	84.6	95.6	100.4
2002. 1/4	92.8	100.6	82.9	97.5	105.6	81.1	102.2	102.8
2/4	91.0	111.8	83.9	98.8	107.6	87.4	96.0	107.3
3/4	86.4	117.0	82.7	95.1	108.2	90.4	91.5	107.1
4/4	87.8	127.8	82.6	97.1	117.5	91.1	90.7	115.9
2003. 1/4	89.1	116.9	84.6	100.9	114.1	97.5	86.8	101.5
2/4	86.9	126.9	83.6	97.2	112.0	93.6	89.3	113.3
3/4	85.7	130.5	86.2	96.4	115.2	93.8	91.9	119.9
4/4	88.3	-	-	101.0	-	-	-	-
2001. 9	93.5	106.1	84.3	102.6	99.3	90.1	93.6	99.3
10	92.0	102.5	82.1	99.6	97.7	89.2	92.0	94.3
11	89.0	109.7	80.3	94.9	103.6	84.5	95.0	104.2
12	88.4	102.8	80.4	94.4	105.0	81.4	98.8	101.6
2002. 1	90.9	98.8	82.1	95.6	107.0	80.5	102.0	100.8
2	92.3	92.8	82.1	96.4	98.8	80.3	102.2	94.8
3	95.1	109.9	84.8	100.4	110.8	82.6	102.7	112.9
4	95.2	110.4	85.1	102.1	110.7	85.9	99.1	109.4
5	91.0	115.2	84.9	98.9	109.8	87.7	96.8	111.5
6	87.0	109.7	81.4	95.4	102.3	88.6	91.9	100.8
7	85.3	115.1	83.3	93.6	109.4	89.4	93.2	107.2
8	86.3	118.4	82.2	94.8	107.3	90.4	90.9	107.6
9	87.5	117.4	82.5	97.0	107.9	91.4	90.3	106.0
10	89.2	132.4	82.1	99.2	114.7	91.2	90.0	119.2
11	86.8	129.0	82.0	95.0	116.8	90.9	90.2	116.4
12	87.4	122.0	83.6	97.1	121.0	91.2	91.7	111.9
2003. 1	86.9	115.4	84.7	98.0	115.8	94.7	89.4	103.2
2	89.0	109.7	84.8	101.4	107.1	98.4	86.2	94.6
3	91.4	126.1	84.4	103.2	119.5	99.3	85.0	107.2
4	88.4	129.1	83.9	98.5	116.5	96.2	87.2	112.6
5	86.3	124.0	83.4	96.4	110.4	92.4	90.3	112.0
6	86.2	127.6	83.6	96.6	109.2	92.2	90.7	115.7
7	85.8	130.1	84.5	96.6	119.3	94.0	89.9	117.0
8	86.2	126.9	85.1	97.2	109.1	93.6	90.9	115.4
9	85.2	134.8	88.8	95.5	117.1	93.7	94.8	127.8
10	86.2	162.2	85.1	98.4	132.5	93.4	91.1	147.8
11	88.4	154.0	87.0	101.0	122.2	97.0	89.5	137.7
12	90.3	-	-	103.4	-	-	-	-

주 : 교역조건은 1995=100, 나머지는 2000=1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한국은행, 『국민소득동향』.

<표 8> 장래추계인구

(단위: 천명, %)

장래추계 인 구	전 체	남 자	여 자	인구증가율	연령별			65세이상 인구비중	노령화 지 수
					0~14세	15~64 세	65세 이상		
1963	27,262	13,708	13,554	2.65	11,850	14,595	816	2.99	6.89
1970	32,241	16,309	15,932	1.99	13,709	17,540	991	3.07	7.23
1975	35,281	17,766	17,515	1.61	13,614	20,449	1,217	3.45	8.94
1980	38,124	19,236	18,888	1.57	12,951	23,717	1,456	3.82	11.24
1981	38,723	19,536	19,188	1.56	12,925	24,300	1,498	3.87	11.59
1982	39,326	19,837	19,489	1.49	12,887	24,880	1,559	3.96	12.10
1983	39,910	20,129	19,781	1.24	12,801	25,495	1,615	4.05	12.61
1984	40,406	20,375	20,031	0.99	12,592	26,141	1,674	4.14	13.29
1985	40,806	20,576	20,230	1.00	12,305	26,759	1,742	4.27	14.16
1986	41,214	20,772	20,442	0.99	12,030	27,383	1,801	4.37	14.97
1987	41,622	20,960	20,662	0.98	11,746	27,999	1,876	4.51	15.97
1988	42,031	21,155	20,876	0.99	11,487	28,582	1,962	4.67	17.08
1989	42,449	21,357	21,092	0.99	11,261	29,135	2,053	4.84	18.23
1990	42,869	21,568	21,301	0.99	10,974	29,701	2,195	5.12	20.00
1991	43,296	21,784	21,512	1.04	10,859	30,171	2,266	5.23	20.87
1992	43,748	22,014	21,734	1.02	10,791	30,611	2,346	5.36	21.74
1993	44,195	22,243	21,952	1.01	10,735	31,023	2,437	5.51	22.70
1994	44,642	22,472	22,169	1.01	10,653	31,446	2,542	5.69	23.87
1995	45,093	22,705	22,388	0.96	10,537	31,900	2,657	5.89	25.21
1996	45,525	22,925	22,600	0.94	10,403	32,327	2,795	6.14	26.87
1997	45,953	23,148	22,805	0.72	10,233	32,791	2,929	6.37	28.63
1998	46,287	23,296	22,991	0.71	10,092	33,126	3,069	6.63	30.41
1999	46,617	23,458	23,159	0.84	9,973	33,420	3,224	6.92	32.32
2000	47,008	23,667	23,341	0.71	9,911	33,702	3,395	7.22	34.25
2001	47,343	23,835	23,508	0.63	9,860	33,904	3,579	7.56	36.30
2002	47,640	23,984	23,656	0.06	9,793	34,075	3,772	7.92	38.50
2010	49,594	24,932	24,662	0.38	8,552	35,741	5,302	10.69	62.00
2020	50,650	25,377	25,273	0.04	7,034	35,948	7,667	15.14	109.00
2050	44,337	21,752	22,585	-1.04	4,650	24,417	15,271	34.44	328.43

주: 노령화지수(Aged-child ratio)=(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 KOSIS.

<표 9>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 천명, 천원, 시간, %)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임금 총액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 (초과)	노동 생산성
1998	21,428	60.6	19,938	1,490	7.0	1,427	199.2	20.0	-
1999	21,666	60.6	20,291	1,374	6.3	1,544	206.6	22.6	91.6
2000	22,069	61.0	21,156	913	4.1	1,668	204.8	23.4	100.0
2001	22,417	61.3	21,572	845	3.8	1,752	202.4	20.4	99.3
2002	22,877	61.9	22,169	708	3.1	1,948	199.6	18.0	107.5
2003	22,916	61.4	22,139	777	3.4	2,127	198.2	17.6	-
2000. 4/4	22,265	61.2	21,420	845	3.8	1,744	208.4	23.3	100.0
2001. 1/4	21,687	59.5	20,627	1,060	4.9	1,718	198.8	21.4	96.6
2/4	22,653	62.0	21,839	814	3.6	1,675	203.7	20.4	99.2
3/4	22,655	61.8	21,900	755	3.3	1,793	204.2	20.0	97.2
4/4	22,674	61.7	21,923	751	3.3	1,825	203.2	19.8	101.6
2002. 1/4	22,339	60.7	21,511	829	3.7	1,862	193.6	17.3	105.7
2/4	23,112	62.6	22,423	689	3.0	1,860	202.2	18.3	106.7
3/4	23,067	62.3	22,416	652	2.8	1,994	197.6	18.1	107.1
4/4	22,989	62.0	22,326	663	2.9	2,076	205.0	18.5	110.8
2003. 1/4	22,439	60.3	21,633	806	3.6	2,102	196.0	17.3	108.9
2/4	23,055	61.8	22,303	751	3.3	2,014	198.7	17.8	111.3
3/4	23,050	61.6	22,295	756	3.3	2,165	193.9	17.0	113.1
4/4	23,119	61.7	22,325	794	3.4	2,227	203.9	18.2	-
2002. 1	22,189	60.3	21,342	847	3.8	1,763	206.3	17.4	
2	22,256	60.4	21,420	836	3.8	2,017	172.6	16.0	
3	22,573	61.2	21,770	803	3.6	1,805	201.7	18.5	
4	23,035	62.4	22,301	734	3.2	1,862	203.2	18.5	
5	23,144	62.7	22,455	689	3.0	1,712	210.1	18.3	
6	23,157	62.7	22,515	643	2.8	2,006	193.3	18.1	
7	23,193	62.7	22,534	659	2.8	1,939	203.4	18.4	
8	22,914	61.9	22,223	691	3.0	1,901	199.9	18.2	
9	23,095	62.4	22,490	605	2.6	2,141	189.4	17.6	
10	23,177	62.5	22,538	639	2.8	1,884	207.7	18.9	
11	23,037	62.1	22,389	648	2.8	1,778	207.0	18.2	
12	22,754	61.3	22,052	702	3.1	2,563	200.4	18.5	
2003. 1	22,352	60.1	21,562	789	3.5	2,384	200.0	17.6	
2	22,320	60.0	21,498	822	3.7	1,962	187.2	16.4	
3	22,644	60.8	21,837	807	3.6	1,962	200.8	17.9	
4	22,912	61.5	22,156	756	3.3	2,012	202.7	17.5	
5	23,114	62.0	22,370	744	3.2	1,866	197.9	18.3	
6	23,138	62.0	22,383	755	3.3	2,168	196.1	17.7	
7	23,238	62.2	22,456	781	3.4	2,072	202.1	16.8	
8	22,883	61.2	22,126	756	3.3	2,144	193.8	17.1	
9	23,031	61.6	22,301	730	3.2	2,282	186.0	17.3	
10	23,218	62.0	22,452	765	3.3	2,034	206.7	19.0	
11	23,218	62.0	22,425	792	3.4	1,939	199.3	18.0	
12	22,922	61.1	22,096	825	3.5	2,710	205.8	17.6	
2004. 1	22,790	60.7	21,936	854	3.7	-	-	-	
2	22,906	61.0	22,005	900	3.9	-	-	-	

주: 1) 임금총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말함.

2) 노동생산성은 인-시간(man-hour)개념의 물적노동생산성으로서 기준은 2000년=100.0이며, 대상은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체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10> 생산가능인구(성별·연령대별)

(단위: 천명)

	전 체	남 자				여 자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8	35,346	5,604	8,588	1,776	1,155	6,046	8,292	1,970	1,915
1999	35,757	5,504	8,773	1,806	1,224	5,957	8,507	1,986	2,001
2000	36,186	5,409	8,980	1,832	1,300	5,833	8,744	1,991	2,096
2001	36,579	5,270	9,199	1,866	1,386	5,682	8,973	2,005	2,199
2002	36,963	5,128	9,403	1,913	1,478	5,523	9,173	2,040	2,305
2003	37,339	4,992	9,585	1,968	1,574	5,376	9,348	2,083	2,413
1999. 3/4	35,814	5,494	8,799	1,810	1,232	5,946	8,534	1,988	2,012
4/4	35,918	5,464	8,856	1,816	1,251	5,915	8,594	1,988	2,035
2000. 1/4	36,011	5,440	8,893	1,822	1,270	5,884	8,654	1,989	2,059
2/4	36,125	5,414	8,952	1,828	1,290	5,853	8,716	1,989	2,083
3/4	36,252	5,403	9,011	1,835	1,310	5,818	8,775	1,991	2,108
4/4	36,358	5,379	9,066	1,844	1,331	5,779	8,832	1,994	2,133
2001. 1/4	36,434	5,325	9,118	1,852	1,352	5,741	8,890	1,997	2,159
2/4	36,527	5,282	9,173	1,860	1,374	5,703	8,949	2,000	2,185
3/4	36,633	5,217	9,227	1,870	1,397	5,663	9,003	2,006	2,212
4/4	36,723	5,255	9,278	1,882	1,419	5,622	9,051	2,016	2,238
2002. 1/4	36,824	5,187	9,329	1,894	1,442	5,582	9,102	2,025	2,264
2/4	36,919	5,146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3/4	37,012	5,109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4/4	37,097	5,070	9,473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2003. 1/4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2/4	37,297	5,009	9,565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3/4	37,391	4,977	9,609	1,975	1,587	5,358	9,370	2,088	2,427
4/4	37,476	4,943	9,649	1,989	1,610	5,322	9,410	2,098	2,454
2002. 2	36,826	5,188	9,329	1,894	1,442	5,582	9,101	2,025	2,264
3	36,856	5,174	9,346	1,898	1,450	5,568	9,118	2,028	2,273
4	36,887	5,160	9,363	1,902	1,458	5,555	9,135	2,031	2,282
5	36,917	5,145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6	36,952	5,133	9,398	1,910	1,474	5,529	9,169	2,038	2,300
7	36,985	5,123	9,414	1,914	1,482	5,517	9,185	2,041	2,309
8	37,013	5,110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9	37,038	5,094	9,443	1,924	1,497	5,491	9,213	2,048	2,327
10	37,072	5,086	9,458	1,928	1,505	5,479	9,227	2,052	2,336
11	37,094	5,068	9,472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12	37,124	5,055	9,487	1,938	1,521	5,454	9,256	2,059	2,354
2003. 1	37,161	5,048	9,503	1,942	1,529	5,442	9,270	2,063	2,363
2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3	37,226	5,026	9,534	1,952	1,546	5,418	9,299	2,070	2,381
4	37,262	5,018	9,550	1,956	1,554	5,406	9,314	2,074	2,390
5	37,300	5,011	9,566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6	37,330	4,997	9,581	1,966	1,571	5,382	9,343	2,082	2,409
7	37,366	4,990	9,596	1,971	1,579	5,370	9,357	2,085	2,418
8	37,390	4,976	9,609	1,975	1,587	5,358	9,370	2,088	2,427
9	37,418	4,965	9,622	1,980	1,594	5,346	9,383	2,091	2,436
10	37,448	4,955	9,636	1,984	1,602	5,334	9,397	2,095	2,445
11	37,475	4,942	9,649	1,989	1,610	5,322	9,410	2,096	2,454
12	37,506	4,933	9,663	1,993	1,618	5,311	9,423	2,101	2,463
2004. 1	37,546	4,931	9,676	1,998	1,626	5,301	9,436	2,104	2,473
2	37,577	4,921	9,688	2,002	1,635	5,294	9,449	2,107	2,4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1> 경제활동인구(성별·연령대별)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8	12,852	2,868	8,176	1,342	465	8,576	2,520	4,727	950	380
1999	12,881	2,778	8,270	1,335	497	8,786	2,487	4,892	977	429
2000	13,000	2,734	8,435	1,302	528	9,069	2,546	5,077	967	478
2001	13,142	2,637	8,595	1,339	571	9,275	2,566	5,240	966	504
2002	13,411	2,577	8,793	1,410	631	9,466	2,563	5,393	979	530
	13,518	2,472	8,991	1,429	627	9,397	2,517	5,405	957	519
1999.3/4	13,000	2,801	8,311	1,361	527	8,941	2,489	4,931	1,038	484
4/4	13,016	2,760	8,388	1,341	527	9,004	2,528	5,013	994	469
2000.1/4	12,786	2,775	8,283	1,255	473	8,708	2,573	4,879	883	373
2/4	13,028	2,705	8,454	1,316	553	9,170	2,524	5,113	1,017	516
3/4	13,093	2,738	8,480	1,322	554	9,226	2,550	5,116	1,018	542
4/4	13,093	2,719	8,525	1,317	532	9,172	2,538	5,201	952	481
2001.1/4	12,821	2,666	8,414	1,251	490	8,866	2,582	5,052	847	385
2/4	13,224	2,649	8,619	1,367	589	9,429	2,561	5,317	1,009	542
3/4	13,261	2,642	8,639	1,372	608	9,394	2,555	5,261	1,017	562
4/4	13,264	2,592	8,707	1,368	598	9,410	2,565	5,331	989	526
2002.1/4	13,160	2,641	8,637	1,333	549	9,179	2,600	5,243	901	436
2/4	13,473	2,589	8,812	1,418	655	9,639	2,570	5,475	1,023	571
3/4	13,506	2,561	8,830	1,445	669	9,562	2,550	5,424	1,013	573
4/4	13,507	2,516	8,893	1,445	652	9,483	2,533	5,433	979	537
2003.1/4	13,339	2,514	8,893	1,366	567	9,100	2,550	5,262	859	428
2/4	13,549	2,451	9,019	1,442	636	9,506	2,499	5,469	992	546
3/4	13,555	2,457	9,004	1,443	651	9,495	2,526	5,407	995	567
4/4	13,631	2,464	9,049	1,464	653	9,488	2,493	5,482	981	534
2002. 2	13,131	2,663	8,620	1,314	534	9,125	2,601	5,212	890	422
3	13,238	2,579	8,688	1,382	590	9,335	2,569	5,342	948	475
4	13,448	2,611	8,788	1,403	646	9,586	2,580	5,451	1,007	549
5	13,473	2,586	8,816	1,414	658	9,671	2,589	5,476	1,028	578
6	13,497	2,569	8,831	1,435	663	9,660	2,542	5,497	1,036	586
7	13,587	2,641	8,831	1,442	673	9,606	2,604	5,416	1,010	576
8	13,444	2,551	8,798	1,432	662	9,470	2,541	5,375	997	557
9	13,486	2,492	8,861	1,463	670	9,610	2,506	5,480	1,032	592
10	13,537	2,492	8,894	1,473	678	9,640	2,509	5,504	1,032	595
11	13,527	2,515	8,899	1,450	663	9,510	2,528	5,438	996	548
12	13,456	2,543	8,886	1,412	616	9,298	2,562	5,356	911	469
2003. 1	13,302	2,539	8,863	1,347	552	9,050	2,571	5,225	834	420
2	13,311	2,528	8,874	1,352	558	9,009	2,569	5,203	829	407
3	13,403	2,474	8,941	1,398	590	9,241	2,511	5,358	914	458
4	13,500	2,462	8,988	1,432	617	9,413	2,485	5,433	978	517
5	13,571	2,453	9,030	1,445	643	9,542	2,489	5,494	1,003	556
6	13,575	2,439	9,039	1,447	649	9,563	2,523	5,478	996	567
7	13,649	2,547	9,011	1,446	644	9,589	2,601	5,434	990	563
8	13,487	2,442	8,971	1,429	644	9,396	2,524	5,336	978	558
9	13,531	2,383	9,028	1,454	665	9,500	2,451	5,451	1,017	581
10	13,638	2,426	9,057	1,473	682	9,580	2,464	5,508	1,021	588
11	13,660	2,458	9,057	1,475	670	9,558	2,477	5,520	1,000	561
12	13,594	2,509	9,033	1,445	608	9,327	2,537	5,417	921	452
2004. 1	13,502	2,535	8,967	1,408	592	9,288	2,566	5,401	896	425
2	13,510	2,479	8,995	1,417	620	9,395	2,572	5,457	917	4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2> 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8	75.1	51.2	95.2	75.6	40.3	47.1	41.7	57.0	48.2	19.8
1999	74.4	50.5	94.3	73.9	40.6	47.6	41.7	50.5	49.2	21.4
2000	74.2	50.5	93.9	71.1	40.6	48.6	43.6	58.1	48.6	22.8
2001	74.2	50.0	93.4	71.8	41.2	49.2	45.2	58.4	48.2	22.9
2002	74.8	50.3	93.5	73.7	42.7	49.7	46.4	58.8	48.0	23.0
2003	74.6	49.5	93.8	72.6	39.8	48.9	46.8	57.8	45.9	21.5
1999.3/4	75.0	51.0	94.5	75.2	42.8	48.4	41.9	57.8	52.2	24.1
4/4	74.9	50.5	94.7	73.8	42.1	48.6	42.7	58.3	50.0	23.0
2000.1/4	73.4	51.0	93.1	68.9	37.2	46.9	43.7	56.4	44.4	18.1
2/4	74.5	50.0	94.4	72.0	42.9	49.2	43.1	58.7	51.1	24.8
3/4	74.6	50.7	94.1	72.0	42.3	49.4	43.8	58.3	51.1	25.7
4/4	74.3	50.5	94.0	71.4	40.0	48.9	43.9	58.9	47.7	22.6
2001.1/4	72.6	50.1	92.3	67.5	36.2	47.2	45.0	56.8	42.4	17.8
2/4	74.8	50.2	94.0	73.5	42.9	50.1	44.9	59.4	50.5	24.8
3/4	74.7	50.3	93.6	73.3	43.5	49.7	45.1	58.4	50.7	25.4
4/4	74.5	49.7	93.9	72.7	42.1	49.7	45.6	58.9	49.1	23.5
2002.1/4	73.7	50.9	92.6	70.4	38.1	48.4	46.6	57.6	44.5	19.3
2/4	75.3	50.3	93.9	74.4	44.7	50.7	46.4	59.8	50.3	24.9
3/4	75.3	50.1	93.6	75.3	44.9	50.2	46.3	59.0	49.5	24.8
4/4	75.1	49.6	93.9	74.8	43.1	49.6	46.3	58.8	47.6	22.9
2003.1/4	73.9	49.9	93.4	70.2	36.9	47.5	47.0	56.7	41.6	18.0
2/4	74.9	48.9	94.3	73.5	40.7	49.5	46.3	58.6	47.7	22.8
3/4	74.7	49.4	93.7	73.1	41.0	49.3	47.1	57.7	47.7	23.4
4/4	74.9	49.9	93.8	73.6	40.0	49.2	46.8	58.3	46.7	21.7
2002. 2	73.6	51.3	92.4	69.4	37.0	48.1	46.6	57.3	44.0	18.6
3	74.1	49.8	93.0	72.8	40.7	49.2	46.1	58.6	46.7	20.9
4	75.2	50.6	93.9	73.8	44.3	50.4	46.4	59.7	49.6	24.1
5	75.3	50.3	94.0	74.2	44.9	50.8	46.7	59.8	50.5	25.2
6	75.3	50.0	94.0	75.1	45.0	50.7	46.0	60.0	50.8	25.5
7	75.8	51.6	93.8	75.3	45.4	50.4	47.2	59.0	49.5	24.9
8	74.9	49.9	93.3	74.6	44.5	49.7	46.2	58.4	48.8	24.0
9	75.1	48.9	93.8	76.0	44.8	50.4	45.6	59.5	50.4	25.4
10	75.3	49.0	94.0	76.4	45.0	50.5	45.8	59.7	50.3	25.5
11	75.2	49.6	94.0	75.0	43.8	49.8	46.2	58.8	48.4	23.4
12	74.8	50.3	93.7	72.9	40.5	48.6	47.0	57.9	44.2	19.9
2003. 1	73.8	50.3	93.3	69.4	36.1	47.3	47.2	56.4	40.4	17.8
2	73.8	50.2	93.2	69.4	36.3	47.0	47.3	56.0	40.1	17.2
3	74.2	49.2	93.8	71.6	38.2	48.2	46.3	57.6	44.2	19.2
4	74.7	49.1	94.1	73.2	39.7	49.1	46.0	58.3	47.2	21.6
5	75.0	49.0	94.4	73.7	41.2	49.7	46.1	58.9	48.3	23.2
6	74.9	48.8	94.3	73.6	41.3	49.8	46.9	58.6	47.8	23.5
7	75.3	51.0	93.9	73.4	40.8	49.9	48.4	58.1	47.5	23.3
8	74.3	49.1	93.4	72.4	40.6	48.8	47.1	56.9	46.8	23.0
9	74.5	48.0	93.8	73.4	41.7	49.3	45.8	58.1	48.6	23.9
10	75.0	49.0	94.0	74.2	42.6	49.7	46.2	58.6	48.7	24.0
11	75.1	49.7	93.9	74.2	41.6	49.6	46.5	58.7	47.7	22.9
12	74.7	50.9	93.5	72.5	37.5	48.3	47.8	57.5	43.9	18.4
2004. 1	74.1	51.4	92.7	70.5	36.4	48.1	48.4	57.2	42.6	17.1
2	74.0	50.4	92.8	70.8	37.9	48.6	48.6	57.8	43.5	1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3>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1998	57.6	89.8	35.0	91.2	42.1	51.9	27.9	59.8
1999	57.4	88.8	39.7	89.5	42.9	51.8	31.1	59.6
2000	57.4	88.0	42.3	88.6	43.6	52.7	32.9	60.7
2001	57.0	87.8	42.6	89.0	43.4	53.9	34.0	61.4
2002	57.3	88.5	44.1	89.5	43.1	55.0	33.9	62.0
2003	55.3	87.7	41.3	89.7	40.3	55.1	32.8	61.6
1999. 3/4	58.2	89.4	40.6	89.6	44.6	51.6	32.0	59.7
4/4	57.6	89.6	42.0	89.7	43.9	53.1	32.8	59.7
2000. 1/4	55.5	86.7	43.4	88.6	40.8	51.4	36.5	59.2
2/4	58.9	88.7	38.5	88.3	45.5	53.0	27.4	60.8
3/4	58.3	88.3	43.5	88.3	45.1	52.7	33.3	61.1
4/4	56.8	88.4	43.7	88.3	43.2	53.8	34.5	61.6
2001. 1/4	54.2	85.8	43.4	88.4	39.8	52.2	37.1	61.3
2/4	59.0	88.4	39.9	89.1	45.3	54.7	29.3	61.7
3/4	57.9	88.4	43.8	89.0	44.7	53.8	35.3	61.0
4/4	56.8	88.6	43.6	89.6	43.6	54.9	34.5	61.6
2002. 1/4	55.0	87.0	46.4	89.1	40.8	53.7	38.8	61.3
2/4	58.9	89.2	41.8	89.4	45.0	55.8	31.2	62.5
3/4	58.1	89.0	44.3	89.4	44.2	55.2	33.7	61.8
4/4	57.2	88.9	43.9	90.2	42.5	55.5	32.2	62.4
2003. 1/4	53.7	86.8	40.9	89.9	37.7	54.2	33.3	61.5
2/4	56.8	88.3	37.2	89.9	41.9	55.6	28.0	62.0
3/4	55.8	87.6	42.9	89.3	41.4	54.7	35.5	61.4
4/4	54.8	87.9	44.5	89.9	40.3	55.8	34.3	61.5
2002. 2	54.2	85.7	49.4	89.1	40.3	52.9	42.1	60.8
3	57.6	87.8	40.6	88.6	42.5	54.4	31.8	62.2
4	59.0	88.9	41.7	89.3	44.5	55.5	31.6	62.6
5	59.0	88.0	42.2	89.5	45.2	55.7	32.5	62.5
6	58.8	89.6	41.5	89.5	45.2	56.2	29.6	62.4
7	58.5	89.4	47.3	89.3	44.4	55.2	35.8	61.9
8	57.6	88.8	43.8	89.3	43.7	54.5	34.1	61.3
9	58.2	89.0	41.7	89.7	44.5	55.7	31.2	62.1
10	58.3	89.1	42.2	90.2	44.5	55.9	30.8	62.4
11	57.5	89.1	43.6	90.1	42.9	55.5	32.1	62.4
12	55.7	88.6	45.9	90.2	40.2	55.2	33.8	62.4
2003. 1	52.2	87.5	43.8	90.1	36.9	54.3	37.5	61.3
2	53.5	85.3	43.4	89.7	36.8	53.2	35.7	61.2
3	55.5	87.8	35.6	89.8	39.3	55.0	26.8	62.0
4	56.5	88.2	36.2	89.8	41.4	55.4	26.3	61.6
5	57.0	88.6	37.2	89.8	42.3	55.8	27.3	62.2
6	56.9	88.3	38.1	90.0	42.1	55.6	30.5	62.2
7	56.2	88.0	45.7	89.6	41.6	55.1	38.1	61.9
8	55.3	87.2	42.8	89.2	40.8	53.9	37.4	60.7
9	55.7	87.8	40.0	89.3	41.7	55.1	30.8	61.6
10	56.0	88.0	42.2	89.8	41.8	56.0	31.3	61.6
11	55.2	88.2	44.1	89.8	41.0	56.1	33.3	61.7
12	53.3	87.6	47.1	90.0	38.2	55.3	38.3	61.2
2004. 1	51.9	86.8	49.3	89.7	37.1	55.3	42.8	60.8
2	54.0	84.0	47.0	89.0	38.1	54.4	39.4	61.7

주: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4>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3	1,950	17	4,205	76	1,816	3,871	1,981	1,084	249	751
2001. 2/4	2,373	18	4,279	62	1,603	3,900	1,937	1,102	209	772
3/4	2,379	19	4,228	56	1,642	3,958	1,955	1,124	207	752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3/4	2,090	17	4,166	78	1,821	3,801	2,004	1,078	243	744
4/4	1,882	17	4,246	75	1,854	3,821	2,029	1,094	246	738
2001. 11	2,193	18	4,326	55	1,699	4,033	1,951	1,145	219	750
12	1,784	19	4,296	53	1,665	4,201	1,986	1,142	216	751
2002. 1	1,627	20	4,248	53	1,550	4,010	1,995	1,132	214	751
2	1,639	19	4,233	52	1,579	4,019	1,996	1,133	223	753
3	1,915	20	4,246	54	1,674	3,958	1,998	1,112	224	748
4	2,181	20	4,293	56	1,766	3,973	2,043	1,129	223	733
5	2,282	19	4,269	58	1,796	3,966	2,016	1,130	230	729
6	2,289	17	4,241	55	1,811	4,001	2,012	1,144	236	713
7	2,249	16	4,213	52	1,817	4,043	2,036	1,148	244	726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9	2,090	18	4,164	77	1,820	3,776	1,985	1,085	234	741
10	2,112	17	4,236	77	1,834	3,823	1,981	1,089	235	738
11	1,958	16	4,246	75	1,876	3,806	2,040	1,092	252	733
12	1,575	20	4,257	73	1,851	3,836	2,066	1,100	250	744
2004. 1	1,489	20	4,254	74	1,740	3,866	2,073	1,094	249	750
2	1,555	20	4,272	72	1,728	3,842	2,077	1,108	244	741

주: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423	1,303	757	1,484	539	425	994	192	22
375	1,150	736	1,249	483	394	977	203	15
387	1,179	684	1,243	486	398	984	204	15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427	1,361	761	1,503	542	439	996	205	21
445	1,391	763	1,472	555	437	1,048	188	23
400	1,186	692	1,255	507	394	999	222	15
397	1,179	698	1,254	514	402	1,008	228	15
407	1,189	692	1,296	506	409	1,009	219	15
405	1,198	699	1,294	504	419	1,018	221	15
402	1,229	699	1,307	519	412	1,016	221	17
396	1,247	725	1,312	539	424	1,036	219	17
408	1,249	704	1,317	553	430	1,060	222	18
410	1,273	711	1,318	562	420	1,072	213	18
416	1,284	693	1,334	561	426	1,042	214	18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424	1,412	758	1,499	547	434	1,004	213	21
446	1,385	764	1,477	548	436	1,020	211	22
440	1,400	766	1,469	559	430	1,058	186	24
450	1,388	760	1,470	556	446	1,065	166	24
452	1,398	741	1,459	559	450	1,086	157	26
448	1,389	762	1,452	570	461	1,104	136	25

<표 1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3	923	1	1,475	12	148	1,832	1,349	89	78	385
2001. 2/4	1,155	0	1,517	14	136	1,832	1,319	94	57	425
3/4	1,164	1	1,494	14	141	1,863	1,320	99	56	408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3/4	1,013	1	1,450	13	154	1,800	1,365	84	76	381
4/4	889	1	1,501	11	151	1,798	1,401	94	74	380
2001. 11	1,060	1	1,574	15	149	1,900	1,333	100	62	406
12	791	1	1,542	14	142	1,898	1,344	102	62	404
2002. 1	697	1	1,503	14	140	1,873	1,338	101	58	405
2	710	1	1,494	13	140	1,878	1,346	103	59	408
3	874	1	1,511	14	145	1,851	1,362	96	60	410
4	1,058	1	1,530	13	161	1,861	1,389	94	57	393
5	1,128	1	1,545	13	159	1,869	1,376	91	60	393
6	1,149	1	1,537	12	160	1,872	1,374	94	60	377
7	1,104	1	1,509	10	150	1,890	1,389	96	65	389
8	1,081	1	1,492	10	146	1,839	1,377	91	58	396
9	1,115	2	1,534	7	152	1,887	1,365	93	59	399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9	1,017	1	1,461	13	154	1,797	1,354	85	72	379
10	1,031	1	1,503	11	148	1,810	1,362	92	73	380
11	943	1	1,511	12	155	1,783	1,408	93	74	379
12	694	2	1,489	10	150	1,800	1,432	96	76	381
2004. 1	639	2	1,471	11	144	1,833	1,423	99	77	386
2	682	1	1,480	12	151	1,821	1,429	103	78	382

주: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28	399	188	956	385	156	410	188	7
107	360	237	779	346	151	425	197	2
115	375	196	768	351	149	421	197	2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30	414	196	980	384	161	407	201	7
133	422	190	960	393	161	444	184	6
117	394	191	780	372	141	429	217	2
114	386	193	775	378	143	430	224	2
120	393	186	802	363	148	418	215	2
120	404	193	801	361	153	426	218	2
121	398	193	824	372	153	429	217	2
119	410	216	824	388	164	437	216	2
120	404	200	830	398	168	449	219	3
123	403	206	835	405	161	470	211	3
129	406	197	842	398	159	436	210	3
131	390	195	824	408	160	436	202	3
132	401	188	873	395	159	434	212	3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130	431	194	984	384	156	410	208	7
135	423	193	969	389	157	417	206	6
130	423	190	953	397	159	451	183	6
134	419	187	957	393	168	463	164	6
135	420	184	945	394	166	483	155	6
132	425	198	933	403	169	493	134	6

<표 1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8		494	1,099	2,155	2,481	4,712		2,284	2,539	2,104	2,069
1999		462	1,063	2,60	2,296	4,811		2,214	2,605	2,117	2,403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0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2003		597	1,702	2,140	3,172	2,735	2,836	1,834	2,407	2,387	2,329
1999.	4/4	467	1,060	2,454	2,336	4,949		2,196	2,787	2,200	2,541
2000.	1/4	455	1,379	2,052	2,458	2,619	2,801	1,746	2,563	2,279	2,028
	2/4	458	1,372	2,090	2,509	2,640	2,836	2,299	2,730	2,273	2,129
	3/4	470	1,414	2,076	2,519	2,699	2,814	2,360	2,725	2,290	2,119
	4/4	478	1,446	2,079	2,561	2,740	2,852	2,053	2,733	2,326	2,152
2001.	1/4	484	1,465	2,072	2,565	2,673	2,867	1,633	2,556	2,313	1,998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3/4	601	1,713	2,190	3,160	2,771	2,792	1,976	2,393	2,365	2,333
	4/4	600	1,684	2,234	3,132	2,833	2,798	1,756	2,453	2,424	2,411
2002.	2	570	1,515	2,101	2,773	2,814	2,976	1,561	2,603	2,338	2,168
	3	580	1,538	2,123	2,760	2,811	2,942	1,820	2,704	2,329	2,164
	4	589	1,565	2,102	2,810	2,873	2,932	2,077	2,744	2,360	2,248
	5	583	1,588	2,105	2,805	2,868	2,928	2,146	2,751	2,389	2,291
	6	572	1,583	2,113	2,806	2,852	2,969	2,154	2,753	2,393	2,318
	7	581	1,584	2,147	2,811	2,893	2,998	2,150	2,728	2,369	2,272
	8	567	1,593	2,128	2,802	2,843	2,939	2,141	2,676	2,367	2,166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9	605	1,710	2,208	3,130	2,756	2,782	1,973	2,419	2,365	2,354
	10	606	1,695	2,211	3,142	2,767	2,805	1,980	2,430	2,412	2,404
	11	608	1,687	2,231	3,123	2,837	2,787	1,817	2,489	2,414	2,432
	12	586	1,671	2,260	3,131	2,896	2,800	1,470	2,438	2,445	2,398
2004.	1	580	1,683	2,263	3,150	2,875	2,843	1,409	2,407	2,425	2,301
	2	579	1,690	2,246	3,177	2,891	2,816	1,451	2,421	2,438	2,296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8	26	362	691	1,183	2,806		1,083	594	277	1,068
1999	22	359	732	1,169	2,906		1,000	640	280	1,231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8	435	305	1,116
1999. 4/4	21	362	760	1,215	2,991		1,021	684	290	1,323
2000. 1/4	19	595	565	1,253	1,776	1,514	729	628	296	954
2/4	20	600	591	1,284	1,796	1,555	1,105	624	303	1,011
3/4	25	628	587	1,286	1,838	1,549	1,147	617	302	978
4/4	30	638	604	1,315	1,851	1,577	955	624	319	98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2. 2	35	642	642	1,434	1,928	1,627	652	555	295	1,021
3	38	660	663	1,448	1,935	1,610	803	558	291	1,030
4	39	670	658	1,471	1,985	1,610	982	564	293	1,063
5	34	665	671	1,479	1,994	1,613	1,029	554	301	1,090
6	32	666	672	1,477	1,983	1,616	1,046	547	299	1,114
7	31	658	681	1,479	2,004	1,633	1,031	526	300	1,040
8	30	665	680	1,466	1,969	1,595	1,013	522	306	993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9	37	776	742	1,506	1,872	1,520	922	432	299	1,132
10	39	762	745	1,509	1,895	1,522	927	435	309	1,164
11	37	749	744	1,490	1,953	1,509	818	452	322	1,176
12	37	752	748	1,478	1,999	1,517	607	434	326	1,124
2004. 1	34	753	744	1,498	1,976	1,558	567	427	328	1,086
2	34	749	737	1,522	1,976	1,536	596	435	340	1,106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전 체						여성의 비중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1,392	4,225	2,025	6,534	4,043	1,720	17.5	30.9	88.8	25.3	55.8	48.8
1999	1,351	4,351	1,925	6,135	4,255	2,274	18.4	31.9	87.1	25.5	53.8	51.6
2000	1,458	4,407	1,931	6,395	4,608	2,357	18.0	32.2	87.4	26.3	54.2	51.8
2001	1,554	4,497	1,863	6,714	4,726	2,218	19.0	32.4	87.4	27.7	54.8	52.3
2002	1,617	4,574	1,797	6,862	4,886	2,433	18.8	32.4	88.0	28.7	54.9	49.6
2003	1,629	4,413	1,694	7,269	5,004	2,130	17.8	30.1	89.7	29.0	56.5	48.6
1999.3/4	1,349	4,476	2,039	6,127	4,301	2,413	18.1	32.1	87.2	25.7	53.2	50.7
4/4	1,399	4,450	1,956	6,227	4,490	2,468	18.5	32.0	87.0	25.6	53.5	51.7
2000.1/4	1,401	4,191	1,731	6,235	4,562	2,261	17.7	32.0	86.6	25.6	53.6	52.9
2/4	1,435	4,457	2,307	6,365	4,601	2,441	17.6	32.3	87.5	26.0	54.1	52.0
3/4	1,487	4,547	2,053	6,429	4,615	2,356	18.2	32.5	87.7	26.4	54.6	51.0
4/4	1,507	4,432	1,903	6,551	4,655	2,372	18.5	32.2	87.8	26.9	54.5	51.4
2001.1/4	1,504	4,248	1,678	6,593	4,588	2,017	19.1	32.0	87.3	27.3	55.0	53.9
2/4	1,558	4,544	1,967	6,762	4,760	2,247	19.1	32.2	87.9	27.6	55.2	52.0
3/4	1,558	4,642	1,967	6,739	4,722	2,273	18.9	32.7	87.3	27.6	54.5	51.2
4/4	1,596	4,552	1,840	6,764	4,835	2,237	18.9	32.6	87.3	28.2	54.5	52.1
2002.1/4	1,613	4,387	1,646	6,759	4,821	2,283	18.8	32.7	87.2	28.3	54.4	51.4
2/4	1,631	4,662	1,876	6,855	4,908	2,492	19.2	32.6	88.6	28.9	54.9	49.6
3/4	1,630	4,669	1,892	6,878	4,889	2,459	18.9	32.2	88.3	28.7	54.9	48.9
4/4	1,593	4,576	1,775	6,957	4,927	2,498	18.4	32.1	88.0	28.8	55.3	48.6
2003.1/4	1,567	4,298	1,601	7,176	4,904	2,088	17.2	29.3	89.9	28.8	55.7	49.2
2/4	1,590	4,433	1,771	7,250	5,082	2,177	17.8	29.5	90.3	28.6	56.9	49.1
3/4	1,669	4,502	1,767	7,268	4,989	2,099	18.2	30.5	89.2	29.3	56.6	48.2
4/4	1,690	4,421	1,637	7,383	5,059	2,155	18.0	31.0	89.4	29.4	56.6	48.1
2002. 2	1,596	4,316	1,604	6,749	4,861	2,293	18.9	32.6	86.7	28.2	54.2	52.2
3	1,640	4,527	1,738	6,788	4,765	2,313	19.1	32.6	87.9	28.6	54.8	50.3
4	1,637	4,644	1,845	6,853	4,857	2,465	18.9	32.7	88.5	28.9	54.7	50.1
5	1,625	4,671	1,878	6,849	4,943	2,490	19.4	32.5	88.5	28.9	55.1	49.5
6	1,630	4,670	1,906	6,862	4,923	2,523	19.3	32.5	88.8	28.8	55.0	49.3
7	1,634	4,656	1,891	6,860	4,940	2,552	19.0	32.3	88.4	28.6	54.8	48.0
8	1,634	4,674	1,884	6,851	4,806	2,372	19.1	32.0	88.1	28.7	54.7	49.5
9	1,621	4,675	1,900	6,923	4,919	2,452	18.6	32.4	88.3	28.8	55.2	49.2
10	1,605	4,692	1,896	6,944	4,899	2,503	18.4	32.4	88.3	28.9	55.2	49.4
11	1,592	4,607	1,796	6,950	4,943	2,501	18.3	32.1	88.4	28.8	55.4	48.2
12	1,582	4,431	1,634	6,977	4,940	2,489	18.5	31.7	87.1	28.8	55.4	48.3
2003. 1	1,560	4,272	1,594	7,142	4,893	2,102	16.9	29.2	90.0	29.2	54.8	49.5
2	1,571	4,295	1,586	7,158	4,853	2,035	17.6	29.3	89.2	28.6	55.9	48.8
3	1,570	4,326	1,622	7,227	4,966	2,127	17.4	29.5	90.4	28.6	56.5	49.3
4	1,568	4,378	1,726	7,237	5,079	2,168	17.2	29.2	90.6	28.4	57.1	49.0
5	1,592	4,460	1,800	7,266	5,082	2,171	17.9	29.5	90.4	28.6	56.9	48.9
6	1,611	4,460	1,788	7,245	5,086	2,193	18.4	29.9	89.8	28.6	56.8	49.4
7	1,639	4,439	1,777	7,239	5,152	2,210	18.1	30.3	89.2	28.8	56.5	48.6
8	1,680	4,535	1,762	7,236	4,872	2,041	18.3	30.4	88.9	29.5	56.7	47.6
9	1,689	4,533	1,761	7,331	4,942	2,045	18.2	30.8	89.5	29.7	56.6	48.4
10	1,692	4,510	1,771	7,350	5,025	2,104	17.8	30.7	89.6	29.6	56.7	48.1
11	1,702	4,443	1,653	7,388	5,045	2,194	18.0	31.0	89.5	29.3	56.7	48.5
12	1,677	4,311	1,485	7,411	5,048	2,166	18.0	31.3	89.0	29.3	56.4	47.7
2004. 1	1,676	4,289	1,463	7,426	5,005	2,077	18.1	31.7	88.7	29.2	56.5	49.1
2	1,668	4,313	1,475	7,453	5,044	2,053	18.1	31.3	89.6	29.1	56.4	5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성별)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상 용	임 시	일 용	상 용	임 시	일 용
1998	4,885	1,786	881	1,650	2,257	839
1999	4,574	1,966	1,100	1,562	2,289	1,174
2000	4,716	2,112	1,135	1,679	2,496	1,222
2001	4,854	2,137	1,059	1,861	2,589	1,159
2002	4,894	2,205	1,226	1,968	2,682	1,207
2003	5,160	2,178	1,094	2,109	2,826	1,036
1999.3/4	4,551	2,015	1,189	1,576	2,286	1,224
4/4	4,631	2,089	1,192	1,596	2,401	1,276
2000.1/4	4,636	2,116	1,064	1,598	2,446	1,197
2/4	4,710	2,111	1,171	1,655	2,490	1,270
3/4	4,730	2,105	1,155	1,698	2,510	1,201
4/4	4,787	2,115	1,152	1,764	2,539	1,220
2001.1/4	4,791	2,064	929	1,802	2,523	1,088
2/4	4,897	2,134	1,079	1,865	2,626	1,168
3/4	4,870	2,148	1,110	1,869	2,574	1,163
4/4	4,856	2,202	1,119	1,908	2,633	1,217
2002.1/4	4,846	2,199	1,110	1,913	2,623	1,173
2/4	4,876	2,213	1,255	1,979	2,695	1,237
3/4	4,901	2,205	1,257	1,977	2,684	1,202
4/4	4,952	2,202	1,283	2,005	2,725	1,215
2003.1/4	5,109	2,171	1,060	2,067	2,733	1,027
2/4	5,180	2,188	1,108	2,070	2,894	1,069
3/4	5,138	2,165	1,087	2,130	2,824	1,011
4/4	5,214	2,188	1,119	2,169	2,851	1,036
2002. 2	4,848	2,227	1,097	1,901	2,635	1,196
3	4,848	2,153	1,149	1,940	2,613	1,164
4	4,872	2,202	1,228	1,981	2,655	1,236
5	4,871	2,220	1,258	1,978	2,724	1,232
6	4,885	2,217	1,279	1,977	2,706	1,244
7	4,895	2,231	1,328	1,965	2,709	1,224
8	4,882	2,177	1,198	1,969	2,629	1,174
9	4,927	2,205	1,245	1,996	2,714	1,207
10	4,938	2,197	1,267	2,006	2,702	1,236
11	4,949	2,205	1,295	2,001	2,738	1,206
12	4,970	2,205	1,287	2,007	2,735	1,202
2003. 1	5,058	2,214	1,060	2,084	2,680	1,041
2	5,110	2,140	1,042	2,048	2,713	993
3	5,159	2,158	1,079	2,068	2,807	1,048
4	5,183	2,178	1,105	2,054	2,900	1,062
5	5,186	2,188	1,109	2,080	2,894	1,062
6	5,170	2,197	1,111	2,075	2,889	1,083
7	5,154	2,241	1,137	2,085	2,911	1,073
8	5,103	2,110	1,069	2,133	2,762	971
9	5,157	2,143	1,056	2,174	2,799	989
10	5,178	2,177	1,093	2,173	2,848	1,011
11	5,224	2,187	1,130	2,164	2,858	1,063
12	5,241	2,202	1,134	2,170	2,846	1,032
2004. 1	5,258	2,179	1,056	2,168	2,827	1,020
2	5,276	2,207	1,011	2,177	2,837	1,0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0> 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8	1,005	404	518	74	9	486	251	213	18	4
1999	926	355	484	83	5	448	219	205	21	3
2000	613	242	320	47	4	300	160	126	13	1
2001	561	229	289	40	4	284	159	115	9	1
2002	467	207	226	30	4	241	135	97	8	1
2003	487	220	230	34	4	289	163	115	11	1
1999.3/4	837	331	422	80	3	399	180	194	21	3
4/4	692	278	346	63	5	337	184	137	14	2
2000.1/4	734	302	370	56	6	380	210	149	20	2
2/4	580	223	308	44	4	280	152	116	11	1
3/4	564	219	299	43	3	269	138	121	9	1
4/4	575	226	301	45	3	269	139	119	11	1
2001.1/4	718	278	382	55	4	342	192	137	13	1
2/4	537	208	283	42	4	278	162	106	9	0
3/4	497	211	250	33	3	258	135	115	7	1
4/4	493	222	239	29	4	258	147	103	7	1
2002.1/4	531	235	256	35	5	298	175	112	8	3
2/4	455	199	222	30	4	234	128	94	10	1
3/4	435	187	214	30	4	217	118	91	8	1
4/4	449	206	213	25	5	215	118	90	6	1
2003.1/4	503	239	223	37	3	303	185	107	11	1
2/4	470	208	224	36	3	281	154	118	9	1
3/4	478	205	234	35	4	278	145	119	13	1
4/4	499	228	237	28	5	295	166	116	12	1
2002. 2	541	236	268	32	6	295	175	107	8	4
3	503	219	238	38	8	300	164	122	11	3
4	481	210	231	34	6	253	140	100	11	3
5	448	195	218	30	4	241	128	101	11	1
6	436	190	217	26	3	206	115	82	8	0
7	436	199	202	33	3	222	128	86	8	1
8	461	187	239	31	3	231	121	101	7	2
9	407	175	200	25	5	199	106	85	8	0
10	434	190	214	25	6	205	112	88	4	1
11	441	198	218	21	4	207	115	86	6	0
12	470	231	207	28	4	232	127	96	9	1
2003. 1	487	236	210	35	6	302	188	103	11	0
2	518	250	228	39	1	304	192	103	9	0
3	503	231	232	38	3	303	176	114	12	1
4	471	210	221	38	2	285	152	122	10	1
5	465	207	220	35	4	278	152	116	10	1
6	474	207	230	34	3	281	159	115	7	0
7	485	218	227	37	3	296	167	116	11	2
8	480	200	242	33	5	277	144	119	12	1
9	469	196	233	35	5	261	124	122	15	0
10	492	218	241	27	6	274	139	120	15	1
11	486	219	234	28	5	306	175	118	13	1
12	519	247	237	30	5	306	185	111	8	1
2004. 1	540	264	234	35	6	315	185	117	11	1
2	536	244	245	40	7	364	216	132	15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1>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8	7.8	14.1	6.3	5.5	1.8	5.5	10.0	4.5	1.9	1.1
1999	7.2	12.8	5.9	6.2	1.0	5.1	8.8	4.2	2.2	0.7
2000	4.7	8.6	3.8	3.6	0.8	3.3	6.3	2.5	1.3	0.2
2001	4.3	8.7	3.4	3.0	0.7	3.1	6.2	2.2	0.9	0.2
2002	3.5	8.0	2.6	2.1	0.6	2.5	5.3	1.8	0.8	0.2
2003	3.6	8.9	2.6	2.4	0.6	3.1	6.5	2.1	1.2	0.1
1999.3/4	6.4	11.8	5.1	5.9	0.6	4.5	7.2	3.9	2.0	0.6
4/4	5.3	10.1	4.1	4.7	0.9	3.7	7.3	2.7	1.4	0.4
2000.1/4	5.7	10.9	4.5	4.5	1.3	4.4	8.2	3.1	2.3	0.5
2/4	4.5	8.2	3.6	3.3	0.7	3.1	6.0	2.3	1.1	0.2
3/4	4.3	8.0	3.5	3.3	0.5	2.9	5.4	2.4	0.9	0.2
4/4	4.4	8.3	3.5	3.4	0.6	2.9	5.5	2.2	1.6	0.2
2001.1/4	5.6	10.4	4.5	4.4	0.8	3.9	7.4	2.7	1.5	0.3
2/4	4.1	7.9	3.3	3.1	0.7	2.9	6.3	2.0	0.9	0.0
3/4	3.7	8.0	2.9	2.4	0.5	2.7	5.3	2.2	0.7	0.2
4/4	3.7	8.6	2.7	2.1	0.7	2.7	5.7	1.9	0.7	0.2
2002.1/4	4.0	8.9	3.0	2.6	0.9	3.2	6.7	2.1	0.9	0.2
2/4	3.4	7.7	2.5	2.1	0.6	2.4	5.0	1.7	1.0	0.2
3/4	3.2	7.3	2.4	2.1	0.6	2.3	4.6	1.7	0.8	0.2
4/4	3.3	8.2	2.4	1.7	0.8	2.3	4.7	1.7	0.6	0.2
2003.1/4	3.8	9.5	2.5	2.7	0.5	3.3	7.3	2.0	1.3	0.2
2/4	3.5	8.5	2.5	2.5	0.5	3.0	6.2	2.2	0.9	0.2
3/4	3.5	8.3	2.6	2.4	0.6	2.9	5.7	2.2	1.3	0.2
4/4	3.7	9.2	2.6	1.9	0.8	3.1	6.7	2.1	1.2	0.2
2002. 2	4.1	8.9	3.1	2.4	1.1	3.2	6.7	2.1	0.9	0.9
3	3.8	8.5	2.7	2.7	1.4	3.2	6.4	2.3	1.2	0.6
4	3.6	8.0	2.6	2.4	0.9	2.6	5.4	1.8	1.1	0.5
5	3.3	7.5	2.5	2.1	0.6	2.5	4.9	1.8	1.1	0.2
6	3.2	7.4	2.5	1.8	0.4	2.1	4.5	1.5	0.8	0.0
7	3.2	7.5	2.3	2.3	0.4	2.3	4.9	1.6	0.8	0.2
8	3.4	7.3	2.7	2.2	0.5	2.4	4.8	1.9	0.7	0.4
9	3.0	7.0	2.3	1.7	0.7	2.1	4.2	1.6	0.8	0.0
10	3.2	7.6	2.4	1.7	0.9	2.1	4.5	1.6	0.4	0.2
11	3.3	7.9	2.4	1.4	0.6	2.2	4.6	1.6	0.6	0.0
12	3.5	9.1	2.3	2.0	0.6	2.5	5.0	1.8	1.0	0.2
2003. 1	3.7	9.3	2.4	2.6	1.1	3.3	7.3	2.0	1.3	0.0
2	3.9	9.9	2.6	2.9	0.2	3.4	7.5	2.0	1.1	0.0
3	3.8	9.3	2.6	2.7	0.5	3.3	7.0	2.1	1.3	0.2
4	3.5	8.5	2.5	2.7	0.3	3.0	6.1	2.2	1.0	0.2
5	3.4	8.4	2.4	2.4	0.6	2.9	6.1	2.1	1.0	0.2
6	3.5	8.5	2.5	2.3	0.5	2.9	6.3	2.1	0.7	0.0
7	3.6	8.6	2.5	2.6	0.5	3.1	6.4	2.1	1.1	0.4
8	3.6	8.2	2.7	2.3	0.8	2.9	5.7	2.2	1.2	0.2
9	3.5	8.2	2.6	2.4	0.8	2.7	5.1	2.2	1.5	0.0
10	3.6	9.0	2.7	1.8	0.9	2.9	5.6	2.2	1.5	0.2
11	3.6	8.9	2.3	1.9	0.7	3.2	7.1	2.1	1.3	0.2
12	3.8	9.8	2.6	2.1	0.8	3.3	7.3	2.1	0.9	0.3
2004. 1	4.0	10.4	2.6	2.5	1.1	3.4	7.2	2.2	1.3	0.3
2	4.0	9.8	2.7	2.8	1.1	3.9	8.4	2.4	1.6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2> 교육수준별 실업자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1998	262	470	68	205	141	212	40	92
1999	234	415	80	197	125	195	43	84
2000	148	256	61	149	79	124	30	67
2001	127	226	57	151	64	119	31	70
2002	89	184	54	140	50	96	24	71
2003	75	200	63	150	48	116	32	93
1999. 3/4	206	377	73	181	116	175	31	77
4/4	164	290	70	168	93	140	42	62
2000. 1/4	174	312	73	175	98	148	43	91
2/4	133	250	48	149	70	124	17	70
3/4	145	230	57	132	76	116	24	54
4/4	140	231	65	140	73	107	37	53
2001. 1/4	187	288	73	170	85	138	42	77
2/4	121	222	39	154	59	120	22	76
3/4	100	209	50	139	58	105	28	68
4/4	100	184	67	142	54	114	31	58
2002. 1/4	105	211	69	146	60	116	41	81
2/4	88	188	42	137	47	101	13	73
3/4	83	175	48	129	46	85	21	66
4/4	78	162	59	149	45	83	21	66
2003. 1/4	72	208	67	156	44	112	39	108
2/4	70	197	46	156	40	122	19	100
3/4	79	192	60	147	52	118	26	82
4/4	77	201	80	141	55	114	44	83
2002. 2	110	224	62	145	61	109	41	83
3	99	209	50	144	57	127	20	97
4	86	201	46	148	51	113	14	74
5	93	182	38	135	51	102	13	76
6	85	179	43	129	39	86	11	69
7	84	170	60	122	46	80	30	66
8	91	193	45	132	51	94	17	69
9	74	160	40	132	42	80	15	62
10	76	161	50	146	34	87	14	70
11	75	162	54	150	43	79	22	64
12	84	163	72	152	57	82	28	65
2003. 1	69	197	85	136	50	102	64	87
2	75	214	71	158	36	119	38	112
3	72	215	44	172	46	116	16	126
4	70	194	42	164	42	130	13	100
5	66	207	37	155	39	119	14	105
6	75	191	59	149	38	118	30	94
7	79	183	81	142	51	122	40	83
8	84	195	50	150	52	116	21	88
9	74	198	48	149	54	116	16	74
10	72	200	68	152	50	120	24	79
11	72	202	73	139	57	116	40	94
12	87	201	98	133	59	104	67	76
2004. 1	93	201	108	138	57	108	77	72
2	94	226	62	154	52	139	32	142

주: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 ¹⁾	(초)대졸이상
1998	8.1	8.4	13.8	5.8	3.9	6.6	14.4	6.1
1999	7.3	7.6	13.1	5.5	3.4	6.1	12.6	5.2
2000	4.7	4.7	8.7	4.1	2.1	3.8	7.8	3.8
2001	4.1	4.1	7.5	3.9	1.8	3.5	7.3	3.7
2002	2.9	3.4	6.5	3.5	1.4	2.8	5.4	3.4
2003	2.6	3.7	8.6	3.3	1.5	3.4	7.8	4.0
1999. 3/4	6.3	6.8	11.6	5.1	3.1	5.5	8.8	4.7
4/4	5.0	5.3	10.6	4.7	2.5	4.3	11.4	3.8
2000. 1/4	5.7	5.7	10.8	4.8	2.8	4.6	10.8	5.5
2/4	4.1	4.6	7.5	4.0	1.8	3.8	5.3	4.0
3/4	4.5	4.2	7.7	3.6	2.0	3.6	6.0	3.0
4/4	4.4	4.2	8.8	3.8	2.0	3.2	8.9	3.0
2001. 1/4	6.4	5.3	9.9	4.5	2.6	4.2	9.5	4.2
2/4	3.8	4.1	5.4	4.0	1.6	3.5	5.9	3.9
3/4	3.2	3.8	6.3	3.6	1.6	3.1	6.2	3.6
4/4	3.2	3.3	8.5	3.6	1.5	3.3	7.1	3.0
2002. 1/4	3.6	3.9	8.0	3.7	1.8	3.4	8.4	4.1
2/4	2.8	3.4	5.3	3.4	1.3	2.9	3.2	3.5
3/4	2.7	3.2	5.7	3.2	1.3	2.5	4.7	3.2
4/4	2.5	3.0	7.2	3.6	1.3	2.4	5.0	3.1
2003. 1/4	2.6	3.9	9.5	3.5	1.5	3.3	9.7	4.7
2/4	2.4	3.6	6.9	3.4	1.2	3.5	5.3	4.2
3/4	2.8	3.6	7.8	3.2	1.6	3.4	5.7	3.5
4/4	2.7	3.7	10.3	3.0	1.7	3.2	10.2	3.5
2002. 2	3.8	4.1	7.1	3.7	1.9	3.2	8.1	4.3
3	3.3	3.8	6.4	3.6	1.7	3.7	4.8	4.7
4	2.8	3.6	5.8	3.7	1.4	3.2	3.4	3.5
5	3.0	3.3	4.7	3.3	1.4	2.9	3.1	3.6
6	2.7	3.2	5.4	3.2	1.1	2.5	2.8	3.3
7	2.7	3.1	6.6	3.0	1.3	2.3	6.2	3.2
8	3.0	3.5	5.4	3.2	1.4	2.8	3.7	3.3
9	2.4	2.9	5.1	3.2	1.2	2.3	3.7	2.9
10	2.4	2.9	6.3	3.5	0.9	2.5	3.5	3.3
11	2.4	2.9	6.6	3.6	1.2	2.3	5.3	3.0
12	2.8	3.0	8.4	3.7	1.7	2.4	6.4	3.0
2003. 1	2.5	3.7	11.2	3.1	1.7	3.0	13.8	3.9
2	2.8	4.0	9.9	3.5	1.2	3.5	9.2	4.9
3	2.6	4.0	7.0	3.8	1.5	3.3	4.8	5.3
4	2.5	3.6	6.5	3.6	1.3	3.7	3.9	4.2
5	2.3	3.8	5.6	3.4	1.2	3.4	4.0	4.4
6	2.4	3.6	6.9	3.4	1.2	3.5	5.3	4.2
7	2.8	3.4	9.7	3.1	1.6	3.5	8.0	3.5
8	3.0	3.7	6.5	3.3	1.6	3.4	4.3	3.8
9	2.6	3.7	6.8	3.2	1.6	3.4	4.2	3.1
10	2.5	3.7	9.2	3.3	1.5	3.4	6.2	3.3
11	2.5	3.7	9.6	3.0	1.8	3.3	9.8	4.0
12	3.1	3.8	11.9	2.9	1.9	3.0	14.1	3.3
2004. 1	3.4	3.8	12.5	3.0	1.9	3.1	14.3	3.1
2	3.5	4.2	8.3	3.3	1.8	3.9	7.7	5.8

주: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실업자 구조

(단위: 천명)

		신규실업자 ¹⁾	전직실업자 ²⁾	구직기간			
				3개월미만	3~5개월	6~11개월	12개월이상
1999		98	1,276	731	387	204	52
2000		62	851	543	240	109	21
2001		55	790	512	223	91	19
2002		44	664	412	198	81	18
2003		67	710	493	205	75	4
1999.	4/4	68	961	582	277	139	31
2000.	1/4	95	1,019	667	298	124	25
	2/4	57	804	493	243	107	18
	3/4	50	783	500	207	109	15
	4/4	46	799	513	211	97	24
2001.	1/4	75	985	663	275	96	26
	2/4	53	761	468	230	94	22
	3/4	44	711	457	194	88	16
	4/4	47	704	460	192	86	13
2002.	1/4	66	763	514	215	85	14
	2/4	43	646	403	196	72	17
	3/4	30	622	373	184	74	21
	4/4	37	626	356	197	93	17
2003.	1/4	106	700	530	216	57	2
	2/4	60	692	473	207	68	3
	3/4	46	710	467	201	84	4
	4/4	58	736	501	196	89	8
2002.	2	66	770	496	241	84	15
	3	57	746	499	205	83	15
	4	50	684	466	177	75	17
	5	43	646	391	207	74	17
	6	37	606	352	204	68	19
	7	40	619	381	190	67	20
	8	28	663	404	187	79	21
	9	23	582	332	174	77	22
	10	24	615	363	173	85	19
	11	37	611	362	184	86	16
	12	49	652	344	234	107	17
2003.	1	113	676	540	206	42	1
	2	120	702	538	225	55	4
	3	83	724	514	217	73	2
	4	71	685	496	193	66	1
	5	53	691	458	218	64	4
	6	55	700	465	211	75	3
	7	59	722	507	201	71	2
	8	42	714	463	199	90	3
	9	37	693	430	202	91	7
	10	48	717	481	185	90	9
	11	56	736	509	189	89	6
	12	72	754	514	215	88	8
2004.	1	86	768	527	230	90	8
	2	82	818	527	271	92	10

주: 1)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

2)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5> 실업자의 구조 : 성별·이직이유별1)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개인사유 ²⁾	작업여건 불만족 ³⁾	휴/폐업 ⁴⁾	비자발적 사유 ⁵⁾	개인사유	작업여건 불만족	휴/폐업	비자발적 사유
2000	81	113	30	255	64	58	11	91
2001	94	95	28	218	66	61	12	76
2002	85	111	16	148	65	63	7	51
2003	75	107	24	163	67	74	16	57
1999. 4/4	168	54	53	257	116	23	12	98
2000. 1/4	86	116	35	332	71	70	13	120
2/4	71	113	31	235	58	62	9	86
3/4	82	120	26	226	55	54	12	84
4/4	87	105	26	229	73	48	8	72
2001. 1/4	119	100	37	302	73	65	16	97
2/4	84	78	29	218	69	62	11	64
3/4	81	100	28	180	57	56	14	73
4/4	92	102	19	171	65	59	7	69
2002. 1/4	93	104	16	182	68	76	8	66
2/4	88	104	13	137	61	63	9	49
3/4	79	114	19	133	63	59	6	50
4/4	79	122	16	140	69	55	5	38
2003. 1/4	72	96	23	159	59	74	11	51
2/4	71	100	23	161	67	78	15	52
3/4	74	118	23	172	69	75	16	63
4/4	82	113	28	160	74	70	19	63
2002. 2	88	102	12	197	63	76	7	66
3	97	102	14	156	66	75	13	65
4	97	104	15	139	63	69	14	49
5	87	102	11	140	68	61	11	47
6	81	106	12	133	53	60	4	50
7	90	109	16	121	63	56	4	56
8	84	125	22	143	69	66	5	53
9	63	110	19	135	58	56	7	41
10	71	119	18	145	71	53	4	35
11	77	123	16	138	63	52	6	38
12	87	126	14	138	72	59	5	41
2003. 1	64	93	21	147	56	69	10	56
2	75	98	24	159	63	71	11	46
3	76	97	22	170	59	80	13	53
4	66	94	22	162	73	71	15	50
5	72	100	21	164	63	79	16	55
6	75	106	24	158	66	85	15	50
7	74	108	22	178	69	84	16	63
8	69	126	23	176	71	75	18	64
9	79	121	25	162	68	65	15	63
10	86	120	24	153	70	71	17	59
11	81	111	31	153	75	76	21	57
12	80	107	29	173	77	64	20	73
2004. 1	75	101	28	191	75	68	11	80
2	77	103	30	198	86	67	15	90

주: 1)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2) 개인·가족적 이유, 건강상 이유, 정년퇴직/연로(정년퇴직/연로는 적은 수를 차지).

3)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4) 직장의 휴업·폐업.

5)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임시직·계절적 일의 완료/일거리 없음/사업경영 악화.

6) 1999년도 휴·폐업은 휴·폐업 및 해고를 포함, 비자발적사유에서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는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6> 비경제활동인구(전체)

(단위: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황	비경황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8	13,919	32.6	9,379	1,785	5,061	4,540	1,352	263	918
1999	14,092	34.9	9,167	1,854	4,925	4,474	1,380	292	1,167
2000	14,118	30.8	9,766	1,774	5,013	4,352	1,328	328	1,321
2001	14,162	29.6	9,966	1,679	5,143	4,196	1,291	374	1,478
2002	14,086	29.2	9,978	1,562	5,253	4,108	1,288	408	1,467
2003	14,424	27.7	10,428	1,503	5,167	3,996	1,667	450	1,641
1999. 3/4	13,873	32.1	9,423	1,844	4,749	4,450	1,386	311	1,134
4/4	13,898	32.5	9,378	1,829	4,801	4,520	1,343	295	1,111
2000. 1/4	14,517	29.2	10,274	1,869	5,323	4,243	1,364	311	1,407
2/4	13,927	31.9	9,487	1,773	4,813	4,440	1,320	328	1,253
3/4	13,933	31.1	9,598	1,740	4,887	4,335	1,310	336	1,325
4/4	14,093	31.2	9,703	1,716	5,030	4,390	1,319	338	1,300
2001. 1/4	14,747	27.8	10,643	1,750	5,555	4,104	1,338	357	1,642
2/4	13,874	30.7	9,609	1,664	4,914	4,265	1,286	377	1,367
3/4	13,978	29.7	9,822	1,669	5,002	4,156	1,269	383	1,498
4/4	14,049	30.3	9,791	1,632	5,102	4,258	1,272	381	1,405
2002. 1/4	14,485	27.4	10,522	1,624	5,538	3,963	1,292	397	1,671
2/4	13,807	30.1	9,656	1,555	5,056	4,151	1,271	393	1,381
3/4	13,944	29.5	9,836	1,539	5,182	4,108	1,273	418	1,425
4/4	14,107	29.8	9,898	1,528	5,235	4,209	1,318	425	1,393
2003. 1/4	14,755	26.5	10,841	1,510	5,496	3,914	1,680	442	1,712
2/4	14,243	28.8	10,140	1,474	4,977	4,103	1,718	439	1,532
3/4	14,341	27.7	10,375	1,513	5,070	3,966	1,670	456	1,666
4/4	14,357	27.9	10,357	1,516	5,125	4,000	1,601	461	1,653
2002. 2	14,570	26.5	10,715	1,645	5,618	3,855	1,293	401	1,757
3	14,284	28.7	10,191	1,578	5,361	4,093	1,291	392	1,568
4	13,853	29.6	9,755	1,556	5,107	4,098	1,271	390	1,430
5	13,773	30.0	9,636	1,554	5,040	4,137	1,272	392	1,379
6	13,794	30.6	9,575	1,555	5,021	4,219	1,270	396	1,333
7	13,793	29.0	9,787	1,552	5,159	4,006	1,269	407	1,399
8	14,098	28.9	10,026	1,532	5,277	4,072	1,282	423	1,511
9	13,942	30.4	9,698	1,534	5,109	4,244	1,267	424	1,364
10	13,895	30.7	9,630	1,515	5,061	4,265	1,302	421	1,331
11	14,057	30.1	9,828	1,536	5,179	4,229	1,318	429	1,367
12	14,370	28.8	10,237	1,534	5,466	4,133	1,332	424	1,480
2003. 1	14,809	26.2	10,930	1,507	5,716	3,879	1,602	434	1,669
2	14,873	25.4	11,099	1,538	5,586	3,774	1,677	445	1,852
3	14,582	28.0	10,493	1,485	5,184	4,089	1,762	447	1,614
4	14,350	28.7	10,231	1,480	5,035	4,119	1,755	440	1,520
5	14,187	29.0	10,072	1,461	4,949	4,115	1,704	436	1,521
6	14,192	28.7	10,118	1,480	4,948	4,074	1,693	441	1,555
7	14,128	27.1	10,305	1,488	5,025	3,823	1,693	449	1,649
8	14,508	27.1	10,574	1,532	5,165	3,934	1,682	457	1,737
9	14,387	28.8	10,246	1,518	5,019	4,141	1,635	463	1,610
10	14,230	28.9	10,121	1,513	4,981	4,109	1,599	462	1,566
11	14,257	28.3	10,228	1,505	5,054	4,029	1,597	459	1,613
12	14,584	26.5	10,721	1,529	5,341	3,863	1,608	463	1,780
2004. 1	14,755	25.2	11,032	1,534	5,458	3,723	1,618	462	1,960
2	14,671	24.4	11,098	1,527	5,411	3,573	1,606	468	2,0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7> 비경제활동인구(여자)

(단위: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활	비경활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8	9,647	22.1	7,512	1,782	4,637	2,135	748	92	254
1999	9,665	21.9	7,545	1,850	4,535	2,120	742	101	318
2000	9,596	21.5	7,529	1,769	4,635	2,067	693	114	318
2001	9,584	20.8	7,591	1,673	4,747	1,993	683	135	353
2002	9,576	20.3	7,633	1,556	4,907	1,943	680	152	339
2003	9,823	19.4	7,916	1,500	5,063	1,907	799	157	396
1999.3/4	9,538	22.1	7,428	1,839	4,424	2,110	740	108	318
4/4	9,527	22.4	7,394	1,824	4,451	2,133	714	102	302
2000.1/4	9,877	20.4	7,867	1,863	4,841	2,010	715	106	343
2/4	9,472	22.2	7,371	1,767	4,499	2,101	694	114	297
3/4	9,466	21.8	7,404	1,735	4,558	2,062	679	117	315
4/4	9,566	21.9	7,471	1,710	4,644	2,095	685	118	315
2001.1/4	9,920	19.7	7,961	1,743	5,006	1,959	700	124	388
2/4	9,408	21.6	7,375	1,659	4,564	2,033	688	134	330
3/4	9,490	20.8	7,517	1,665	4,668	1,973	676	142	367
4/4	9,517	21.1	7,511	1,626	4,751	2,006	669	138	327
2002.1/4	9,793	19.1	7,921	1,617	5,105	1,872	682	146	372
2/4	9,381	20.9	7,416	1,549	4,747	1,965	671	145	304
3/4	9,504	20.5	7,557	1,534	4,858	1,947	675	160	329
4/4	9,626	20.7	7,638	1,524	4,916	1,988	692	156	350
2003.1/4	10,053	18.6	8,184	1,506	5,341	1,869	787	147	403
2/4	9,694	20.1	7,741	1,472	4,915	1,953	841	152	361
3/4	9,749	19.3	7,863	1,510	4,987	1,886	802	163	401
4/4	9,796	19.6	7,875	1,513	5,009	1,921	767	166	420
2002. 2	9,847	18.5	8,022	1,638	5,161	1,825	683	148	392
3	9,653	19.9	7,730	1,571	4,988	1,923	684	142	345
4	9,418	20.6	7,478	1,551	4,787	1,940	671	141	328
5	9,350	20.9	7,397	1,548	4,735	1,953	673	146	296
6	9,377	21.4	7,375	1,550	4,720	2,002	668	148	290
7	9,446	20.1	7,541	1,546	4,844	1,905	677	152	322
8	9,595	20.2	7,659	1,526	4,939	1,936	681	165	349
9	9,470	21.1	7,469	1,529	4,792	2,001	669	162	317
10	9,454	21.3	7,443	1,512	4,772	2,011	684	156	320
11	9,598	20.8	7,602	1,533	4,881	1,996	692	157	340
12	9,825	19.9	7,866	1,527	5,095	1,956	699	155	390
2003. 1	10,088	18.3	8,239	1,502	5,461	1,849	734	144	399
2	10,144	17.9	8,327	1,534	5,439	1,817	779	145	431
3	9,928	19.6	7,985	1,482	5,123	1,943	849	152	379
4	9,771	20.1	7,809	1,478	4,979	1,962	853	151	349
5	9,657	20.3	7,698	1,460	4,887	1,959	838	151	363
6	9,653	20.1	7,714	1,478	4,880	1,940	832	153	371
7	9,642	18.9	7,816	1,486	4,951	1,826	823	160	395
8	9,848	18.9	7,985	1,529	5,076	1,863	805	162	412
9	9,757	20.2	7,789	1,516	4,933	1,968	776	167	397
10	9,690	20.3	7,722	1,509	4,880	1,968	769	167	397
11	9,727	19.9	7,788	1,503	4,944	1,939	766	166	410
12	9,971	18.6	8,116	1,528	5,203	1,855	765	165	454
2004. 1	10,026	17.9	8,227	1,533	5,305	1,799	761	164	464
2	9,936	17.2	8,230	1,525	5,258	1,706	753	168	5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8>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천명, %)

	당월입직 (입직률)	신규채용 (신규채용률)	당월이직 (이직률)	퇴직및 해고 (퇴직및 해고율)
1997	121.1 (2.32)	102.3 (1.96)	138.3 (2.65)	114.6 (2.20)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1999.3/4	160.7 (2.83)	132.8 (2.34)	145.3 (2.55)	111.6 (1.96)
4/4	161.8 (2.82)	142.7 (2.49)	137.0 (2.39)	106.6 (1.86)
2000.1/4	196.1 (3.48)	167.7 (2.97)	167.4 (2.97)	131.5 (2.33)
2/4	167.9 (2.93)	147.6 (2.58)	152.7 (2.67)	117.6 (2.05)
3/4	154.4 (2.68)	136.1 (2.36)	145.1 (2.52)	115.1 (2.00)
4/4	143.9 (2.49)	125.1 (2.16)	144.7 (2.50)	117.9 (2.04)
2001.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3/4	137.6 (2.14)	126.6 (1.97)	144.0 (2.24)	130.8 (2.04)
2001. 11	130.6 (2.24)	121.2 (2.08)	141.7 (2.43)	122.9 (2.11)
12	109.7 (1.88)	100.9 (1.73)	127.5 (2.19)	104.6 (1.79)
2002. 1	126.3 (2.10)	114.8 (1.91)	126.0 (2.09)	101.1 (1.68)
2	142.0 (2.36)	120.5 (2.00)	152.1 (2.52)	126.5 (2.10)
3	215.7 (3.59)	192.1 (3.19)	197.1 (3.28)	164.6 (2.74)
4	175.0 (2.90)	154.0 (2.55)	166.8 (2.76)	132.7 (2.20)
5	151.4 (2.51)	136.5 (2.26)	159.2 (2.64)	124.7 (2.06)
6	142.0 (2.35)	130.5 (2.16)	149.0 (2.47)	114.2 (1.89)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7	144.9 (2.26)	132.8 (2.07)	146.1 (2.27)	131.8 (2.05)
8	134.9 (2.10)	124.1 (1.93)	146.8 (2.29)	133.4 (2.08)
9	132.9 (2.07)	122.9 (1.92)	139.0 (2.17)	127.3 (1.99)
10	147.2 (2.30)	137.4 (2.15)	154.8 (2.42)	143.0 (2.23)
11	128.9 (2.02)	120.6 (1.89)	139.9 (2.19)	128.1 (2.00)
12	127.7 (2.00)	119.4 (1.87)	123.5 (1.98)	114.2 (1.79)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9>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7	-	-	36.7	40.3	35.6	40.6	24.8	27.9	6.6	8.1	17.4	21.4
1998	-	-	26.7	36.3	26.6	37.4	18.0	26.3	4.1	8.3	10.9	21.5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1999. 3/4	27.0	24.7	40.8	40.3	42.9	35.6	27.2	22.5	6.5	5.2	16.3	17.0
4/4	25.8	22.6	44.7	36.7	40.8	31.9	26.6	22.2	5.9	4.7	18.0	18.9
2000. 1/4	27.7	24.4	50.7	44.3	51.0	44.4	33.6	28.7	7.3	6.4	25.8	19.2
2/4	25.5	21.7	42.0	41.8	42.6	37.9	29.8	29.5	6.1	6.9	21.9	14.9
3/4	22.8	20.7	40.4	39.2	40.3	39.6	28.7	25.3	5.3	5.0	16.9	15.2
4/4	21.4	19.1	38.9	38.8	38.9	37.6	24.2	24.2	4.3	5.5	16.3	19.4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3	6.9	14.6	12.7
2001. 12	19.8	20.4	32.5	33.2	28.2	37.6	16.6	19.8	3.0	3.5	9.6	12.9
2002. 1	17.7	19.5	35.1	33.4	37.2	32.6	20.9	21.4	5.0	5.6	10.4	13.6
2	27.8	27.4	39.2	39.7	38.5	42.6	20.5	22.5	5.2	6.9	10.9	13.0
3	41.0	34.6	55.5	55.4	55.6	51.3	34.1	29.5	8.2	8.4	21.2	17.8
4	31.2	31.2	53.7	52.2	42.8	38.5	26.6	26.5	6.6	6.1	13.9	12.3
5	25.4	29.6	45.1	47.5	41.5	40.6	21.5	24.7	5.0	6.1	12.9	10.7
6	25.1	24.1	44.6	47.0	35.7	40.1	20.2	21.4	5.2	5.9	11.2	10.4
7	29.0	28.0	45.7	42.5	43.5	38.7	23.9	21.6	6.0	5.2	12.3	12.1
8	26.1	23.8	40.6	47.9	43.0	43.2	21.4	23.3	5.4	5.3	9.2	9.9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7	21.4	22.2	44.1	42.9	34.7	36.1	20.9	24.0	7.8	7.1	16.0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2	24.8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0>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7	2.45	2.93	2.63	3.03	2.84	3.21	2.48	3.08	2.04	2.23	1.38	1.69	2.89	2.93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1999.3/4	2.77	2.63	2.85	2.91	3.65	2.96	3.83	3.69	3.06	2.12	2.24	1.99	3.17	2.94
4/4	3.13	2.55	2.89	2.56	3.21	2.97	3.63	3.40	2.11	1.86	2.03	1.52	3.15	2.87
2000.1/4	3.53	2.81	3.89	3.53	3.61	3.47	3.32	3.44	2.91	2.04	2.51	2.42	4.49	3.67
2/4	2.81	2.64	3.72	3.36	3.29	3.26	2.95	2.92	2.86	2.19	2.11	1.93	3.88	3.65
3/4	2.66	2.35	3.25	3.08	3.29	3.05	3.34	3.54	2.39	2.23	1.92	1.89	3.71	3.43
4/4	2.54	2.55	2.92	3.47	2.96	2.93	3.04	2.81	2.40	2.07	1.57	1.95	3.20	2.98
2001.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3/4	2.15	2.22	2.45	2.39	2.00	2.58	3.15	3.62	1.81	2.07	1.45	1.50	3.58	3.24
2002. 2	2.11	2.53	3.56	3.06	2.17	2.37	2.23	3.21	2.70	2.25	1.83	1.54	3.39	2.74
3	3.15	3.21	3.55	3.69	3.37	3.30	4.45	3.85	2.75	2.47	2.95	3.04	4.19	3.83
4	2.99	2.80	3.53	3.20	2.64	3.42	4.37	3.69	2.50	2.27	2.76	2.41	3.57	3.26
5	2.72	2.77	3.21	3.33	2.73	3.29	3.33	3.29	2.13	2.33	1.81	1.39	2.97	3.24
6	2.48	2.60	2.58	2.66	2.39	2.53	4.17	3.08	1.96	2.46	1.37	1.60	3.38	3.41
7	2.84	2.44	3.00	3.13	2.94	2.75	3.32	3.81	2.26	2.57	2.26	1.91	3.15	3.22
8	2.47	2.54	2.41	2.78	2.69	2.50	3.06	3.76	2.14	2.13	2.51	2.52	3.25	3.35
9	2.41	2.29	2.19	2.05	2.49	2.53	3.81	3.73	2.31	2.22	1.56	1.13	3.22	3.70
10	2.67	2.61	2.85	2.64	2.74	3.01	3.99	4.07	2.08	1.98	1.36	2.05	3.29	3.38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7	2.25	2.19	2.91	3.03	2.28	2.63	2.69	3.40	1.86	2.28	1.59	1.59	3.78	3.33
8	2.15	2.30	2.24	1.95	1.80	2.79	2.81	3.37	1.75	1.91	1.58	1.73	3.85	3.34
9	2.05	2.15	2.19	2.18	1.93	2.30	3.95	4.10	1.80	2.02	1.17	1.17	3.10	3.05
10	2.36	2.49	2.23	2.36	2.94	2.73	2.93	2.75	1.90	2.85	1.85	1.36	3.12	3.04
11	2.20	2.36	2.42	2.36	1.98	2.43	2.52	2.81	1.76	2.37	1.27	1.20	3.67	3.53
12	1.98	2.00	3.02	2.56	2.09	1.91	4.35	3.41	1.67	2.02	0.99	1.10	2.65	2.75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 업				제 조 업			
	임금총액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8	1,427	1,050	100	276	1,284	920	130	234
1999	1,544	1,102	117	325	1,443	963	179	301
2000	1,668	1,182	133	352	1,568	1,024	205	338
2001	1,752	1,257	131	365	1,659	1,095	204	361
2002	1,948	1,408	126	413	1,857	1,266	197	395
2003	2,127	1,532	135	460	2,018	1,372	205	441
2000. 4/4	1,744	1,217	138	389	1,655	1,050	212	394
2001. 1/4	1,718	1,225	127	365	1,625	1,064	197	364
2/4	1,675	1,246	130	299	1,579	1,081	203	295
3/4	1,793	1,268	132	394	1,706	1,110	205	391
4/4	1,825	1,289	135	401	1,728	1,125	210	393
2002. 1/4	1,862	1,371	117	374	1,744	1,218	183	342
2/4	1,860	1,396	127	338	1,747	1,250	200	297
3/4	1,994	1,415	127	452	1,909	1,273	199	437
4/4	2,076	1,453	133	490	2,028	1,321	206	501
2003. 1/4	2,102	1,494	128	481	1,984	1,336	195	452
2/4	2,014	1,513	135	366	1,873	1,348	206	319
3/4	2,165	1,536	133	496	2,056	1,374	200	482
4/4	2,227	1,583	145	499	2,155	1,427	219	509
2001. 12	2,215	1,329	132	754	2,148	1,153	201	795
2002. 1	1,763	1,379	116	268	1,638	1,224	179	235
2	2,017	1,345	111	560	1,939	1,187	170	582
3	1,805	1,388	124	294	1,655	1,244	200	211
4	1,862	1,384	126	352	1,742	1,236	199	307
5	1,712	1,400	127	184	1,602	1,256	203	143
6	2,006	1,403	127	476	1,897	1,257	198	442
7	1,939	1,413	128	398	1,875	1,267	200	408
8	1,901	1,410	128	364	1,826	1,268	201	356
9	2,141	1,421	127	593	2,026	1,284	195	547
10	1,884	1,428	134	322	1,837	1,303	210	324
11	1,778	1,425	130	223	1,607	1,282	202	123
12	2,563	1,505	135	923	2,637	1,377	205	1,055
2003. 1	2,384	1,502	128	754	2,315	1,348	198	769
2	1,962	1,467	124	371	1,831	1,294	187	351
3	1,962	1,514	131	317	1,808	1,369	201	237
4	2,012	1,503	131	379	1,882	1,341	201	340
5	1,866	1,519	138	209	1,713	1,354	213	146
6	2,168	1,520	137	511	2,033	1,356	205	472
7	2,072	1,531	128	414	1,966	1,364	190	412
8	2,144	1,536	134	475	2,059	1,376	202	482
9	2,282	1,543	139	600	2,146	1,385	208	553
10	2,034	1,545	148	341	1,963	1,395	228	341
11	1,939	1,553	143	243	1,781	1,391	216	174
12	2,710	1,652	143	915	2,722	1,495	213	1,015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8	1,427	276	1,525	266	1,284	234	2,022	483	1,502	166	1,397	254	1,178	223
1999	1,544	325	1,563	274	1,443	301	2,304	565	1,576	245	1,426	260	1,052	123
2000	1,668	352	1,679	313	1,568	338	2,458	536	1,701	274	1,548	284	1,106	121
2001	1,752	365	1,745	309	1,659	361	2,835	715	1,687	221	1,725	331	1,174	129
2002	1,948	413	1,938	371	1,857	395	3,206	822	1,859	251	1,888	356	1,364	224
2003	2,127	460	2,229	493	2,018	441	3,649	914	2,072	278	2,089	412	1,439	213
1999. 4/4	1,644	383	1,658	320	1,567	380	2,595	834	1,627	245	1,528	332	1,072	125
2000. 1/4	1,594	333	1,542	246	1,470	298	2,290	421	1,670	293	1,429	229	1,068	126
2/4	1,610	304	1,624	265	1,505	287	2,348	477	1,579	164	1,475	214	1,094	102
3/4	1,721	383	1,790	408	1,637	371	2,579	649	1,791	349	1,630	343	1,135	137
4/4	1,744	389	1,765	333	1,655	394	2,615	598	1,764	288	1,657	350	1,129	119
2001. 1/4	1,718	365	1,587	204	1,625	364	2,744	676	1,632	206	1,644	288	1,138	134
2/4	1,675	299	1,747	325	1,579	295	2,660	624	1,632	174	1,644	247	1,148	107
3/4	1,793	394	1,837	375	1,706	391	2,709	612	1,772	281	1,751	343	1,212	153
4/4	1,825	401	1,812	334	1,728	393	3,230	951	1,716	224	1,863	447	1,200	124
2002. 1/4	1,862	374	1,825	309	1,744	342	2,938	646	1,794	239	1,826	323	1,299	188
2/4	1,860	338	1,883	321	1,747	297	2,845	535	1,772	182	1,819	290	1,337	205
3/4	1,994	452	1,990	421	1,909	437	3,401	1,032	1,932	310	1,925	386	1,385	237
4/4	2,076	490	2,057	437	2,028	501	3,636	1,074	1,937	274	1,983	427	1,436	266
2003. 1/4	2,102	481	2,112	446	1,984	452	3,527	814	2,058	340	2,064	417	1,409	197
2/4	2,014	366	2,161	467	1,873	319	3,488	759	1,937	173	1,985	326	1,415	192
3/4	2,165	496	2,222	489	2,056	482	3,552	875	2,144	325	2,141	454	1,436	229
4/4	2,227	499	2,425	570	2,155	509	4,033	1,211	2,152	274	2,158	449	1,491	232
2001. 12	2,215	754	2,188	683	2,148	795	4,548	2,090	1,958	448	2,377	931	1,250	161
2002. 1	1,763	268	1,628	85	1,638	235	2,479	148	1,762	195	1,686	181	1,264	141
2	2,017	560	1,841	416	1,939	582	2,946	629	1,877	356	1,983	493	1,381	284
3	1,805	294	2,006	428	1,655	211	3,388	1,162	1,743	165	1,810	296	1,253	140
4	1,862	352	1,689	133	1,742	307	2,696	418	1,790	207	1,800	280	1,366	239
5	1,712	184	1,761	161	1,602	143	2,473	169	1,675	88	1,666	131	1,236	103
6	2,006	476	2,203	672	1,897	442	3,364	1,018	1,852	252	1,993	460	1,409	273
7	1,939	398	1,779	211	1,875	408	2,915	574	1,867	258	1,842	299	1,355	215
8	1,901	364	1,928	349	1,826	356	2,669	341	1,796	177	1,826	297	1,399	253
9	2,141	593	2,264	704	2,026	547	4,615	2,176	2,133	496	2,106	562	1,400	243
10	1,884	322	1,822	205	1,837	324	2,846	396	1,760	112	1,838	300	1,414	253
11	1,778	223	1,771	173	1,607	123	2,718	211	1,768	125	1,690	148	1,345	173
12	2,563	923	2,578	934	2,637	1,055	5,348	2,618	2,282	585	2,418	830	1,548	373
2003. 1	2,384	754	2,159	473	2,315	769	3,312	650	2,312	591	2,247	571	1,458	230
2	1,962	371	1,957	348	1,831	351	3,307	539	1,947	264	1,989	373	1,448	242
3	1,962	317	2,212	517	1,808	237	3,956	1,250	1,918	166	1,960	309	1,312	118
4	2,012	379	1,896	218	1,882	340	3,155	432	1,925	174	2,012	367	1,440	222
5	1,866	209	1,894	203	1,713	146	2,847	135	1,826	78	1,816	143	1,312	84
6	2,168	511	2,683	975	2,033	472	4,459	1,708	2,061	266	2,140	469	1,502	271
7	2,072	414	1,969	246	1,966	412	2,959	275	2,048	258	2,070	384	1,409	188
8	2,144	475	2,139	407	2,059	482	3,021	364	2,067	254	2,096	401	1,480	257
9	2,282	600	2,556	814	2,146	553	4,667	1,980	2,313	461	2,276	584	1,430	244
10	2,034	341	2,168	328	1,963	341	3,162	458	1,976	127	1,983	295	1,507	264
11	1,939	243	2,074	269	1,781	174	3,019	293	1,979	100	1,892	189	1,388	126
12	2,710	915	3,040	1,120	2,722	1,015	5,920	2,884	2,501	593	2,600	863	1,577	308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8	1,351	222	1,967	550	1,329	240	2,190	607	1,484	316	1,765	364
1999	1,555	309	2,185	713	1,404	238	1,831	373	1,531	278	1,575	314
2000	1,744	352	2,396	777	1,495	247	1,932	381	1,581	258	1,756	380
2001	1,777	319	2,592	851	1,550	238	1,948	364	1,708	310	1,772	338
2002	1,926	389	2,941	1,022	1,753	249	2,393	540	1,824	390	1,869	383
2003	2,126	454	3,310	1,124	1,854	269	2,560	624	1,953	394	2,059	436
1999. 4/4	1,641	352	2,350	776	1,504	310	1,803	328	1,514	272	1,650	385
2000. 1/4	1,632	294	2,491	937	1,421	222	1,887	379	1,543	239	1,653	329
2/4	1,781	398	2,215	634	1,453	205	1,905	365	1,611	249	1,732	384
3/4	1,759	351	2,428	804	1,528	272	1,970	393	1,573	273	1,768	356
4/4	1,799	363	2,452	734	1,575	287	1,967	386	1,596	273	1,868	452
2001. 1/4	1,686	265	2,694	971	1,532	249	1,929	390	1,664	292	1,718	319
2/4	1,781	338	2,336	630	1,495	184	1,902	318	1,666	263	1,722	294
3/4	1,794	337	2,649	905	1,568	249	1,995	400	1,795	396	1,783	346
4/4	1,851	338	2,691	898	1,606	269	1,965	349	1,706	287	1,867	391
2002. 1/4	1,764	305	3,026	1,132	1,699	226	2,309	472	1,766	346	1,760	310
2/4	1,930	412	2,720	827	1,727	219	2,312	467	1,766	359	1,786	315
3/4	1,959	402	2,936	1,045	1,764	256	2,527	663	1,874	421	1,918	428
4/4	2,051	438	3,080	1,087	1,823	295	2,421	557	1,891	436	2,011	479
2003. 1/4	2,040	426	3,520	1,391	1,817	259	2,539	651	1,888	379	1,977	398
2/4	2,115	460	3,050	899	1,811	235	2,471	539	1,877	335	1,956	350
3/4	2,163	481	3,286	1,118	1,877	284	2,664	721	2,019	434	2,083	460
4/4	2,179	447	3,383	1,087	1,915	300	2,572	589	2,038	429	2,218	536
2001. 12	2,096	511	3,461	1,537	1,964	579	2,030	370	1,860	466	2,191	670
2002. 1	1,667	231	2,894	924	1,619	148	2,368	502	1,650	212	1,637	185
2	1,943	490	3,335	1,479	1,763	297	2,200	438	1,943	538	1,920	485
3	1,682	195	2,850	991	1,716	232	2,358	476	1,706	288	1,724	260
4	2,008	511	2,783	918	1,725	223	2,287	440	1,732	334	1,760	294
5	1,654	136	2,465	559	1,650	142	2,304	459	1,624	219	1,637	167
6	2,128	589	2,913	1,005	1,806	292	2,346	504	1,943	524	1,961	485
7	1,745	189	2,990	1,092	1,702	193	2,557	670	1,789	341	1,913	420
8	2,088	533	2,583	700	1,722	215	2,315	466	1,831	390	1,768	287
9	2,045	486	3,236	1,341	1,868	360	2,707	853	2,003	531	2,075	578
10	1,844	275	2,586	701	1,685	174	2,320	471	1,796	340	1,831	327
11	2,014	449	2,672	732	1,639	124	2,416	547	1,674	227	1,705	214
12	2,295	590	3,983	1,830	2,144	588	2,527	655	2,204	742	2,499	896
2003. 1	2,093	507	4,529	2,366	1,904	350	2,961	1,077	1,989	470	2,172	593
2	2,144	540	2,882	783	1,723	172	2,191	315	1,889	393	1,915	345
3	1,882	229	3,155	1,025	1,831	255	2,434	554	1,771	270	1,850	257
4	2,245	591	2,932	835	1,784	213	2,424	505	1,861	338	1,919	332
5	1,816	142	2,959	782	1,728	152	2,487	552	1,781	237	1,802	191
6	2,302	651	3,257	1,080	1,915	339	2,502	559	1,978	427	2,153	527
7	1,918	243	3,274	1,103	1,783	191	2,711	770	1,932	351	1,981	364
8	2,356	685	2,997	835	1,882	295	2,482	536	2,057	473	2,080	458
9	2,226	519	3,589	1,418	1,954	364	2,815	861	2,070	478	2,186	557
10	2,085	379	2,813	689	1,758	167	2,489	533	1,949	357	1,980	347
11	2,015	327	2,921	736	1,728	132	2,601	606	1,821	222	1,855	213
12	2,438	636	4,413	1,833	2,259	601	2,627	628	2,343	708	2,818	1,045

<표 33>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310	209	-	-	1,255	174	1,307	207
1999	1,401	244	1,192	138	1,376	241	1,439	253
2000	1,530	274	1,274	152	1,497	266	1,567	267
2001	1,615	281	1,344	153	1,606	278	1,680	294
2002	1,775	325	1,466	178	1,705	290	1,856	356
2003	1,906	346	1,543	169	1,808	293	2,005	398
1999. 4/4	1,467	274	1,216	146	1,425	264	1,522	286
2000. 1/4	1,472	268	1,243	151	1,480	289	1,498	260
2/4	1,481	233	1,242	113	1,422	201	1,516	231
3/4	1,582	310	1,317	194	1,560	318	1,624	296
4/4	1,582	285	1,292	149	1,524	256	1,630	282
2001. 1/4	1,577	280	1,321	158	1,600	309	1,622	277
2/4	1,545	223	1,294	109	1,510	195	1,605	232
3/4	1,662	314	1,391	191	1,667	319	1,737	331
4/4	1,677	308	1,370	156	1,648	289	1,757	338
2002. 1/4	1,711	301	1,437	173	1,679	293	1,794	335
2/4	1,709	282	1,421	149	1,654	258	1,789	310
3/4	1,826	368	1,519	227	1,745	325	1,919	410
4/4	1,855	367	1,503	187	1,767	321	1,925	394
2003. 1/4	1,865	351	1,509	175	1,787	311	1,965	409
2/4	1,827	278	1,479	118	1,728	221	1,910	314
3/4	1,951	384	1,595	210	1,857	335	2,061	449
4/4	1,978	369	1,586	172	1,862	305	2,078	418
2001. 12	1,981	573	1,542	308	1,912	525	2,133	675
2002. 1	1,649	229	1,406	142	1,583	184	1,771	302
2	1,811	426	1,488	236	1,807	440	1,856	431
3	1,674	249	1,418	140	1,646	255	1,755	272
4	1,702	270	1,383	113	1,605	207	1,792	301
5	1,602	153	1,365	83	1,540	132	1,668	162
6	1,815	364	1,468	180	1,741	331	1,890	390
7	1,792	329	1,491	198	1,717	297	1,881	360
8	1,714	261	1,419	134	1,613	196	1,802	301
9	1,974	516	1,645	349	1,905	482	2,073	569
10	1,695	228	1,411	111	1,615	191	1,739	225
11	1,670	202	1,389	79	1,604	171	1,739	231
12	2,198	671	1,709	369	2,082	602	2,297	724
2003. 1	2,067	548	1,648	312	1,939	462	2,252	694
2	1,734	242	1,424	97	1,677	216	1,761	227
3	1,793	263	1,455	116	1,748	255	1,884	307
4	1,813	277	1,450	103	1,695	199	1,880	299
5	1,737	183	1,441	81	1,687	173	1,827	211
6	1,931	376	1,547	171	1,800	291	2,037	434
7	1,895	330	1,581	207	1,798	274	2,002	389
8	1,913	348	1,543	149	1,820	300	2,010	400
9	2,044	474	1,672	275	1,953	431	2,173	558
10	1,817	234	1,495	95	1,694	168	1,901	266
11	1,798	209	1,482	75	1,712	168	1,864	230
12	2,319	663	1,781	345	2,180	579	2,468	756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382	252	1,720	446	1,570	338	1,765	480
1999	1,561	327	1,973	567	1,794	456	2,019	595
2000	1,713	385	2,147	624	1,973	516	2,195	655
2001	1,785	384	2,276	683	2,135	564	2,313	714
2002	2,067	476	2,629	761	2,357	597	2,718	815
2003	2,230	506	2,898	860	2,474	606	3,043	946
1999. 4/4	1,662	379	2,185	719	1,927	533	2,251	767
2000. 1/4	1,598	340	2,018	558	1,877	477	2,059	581
2/4	1,689	367	2,057	551	1,879	446	2,107	581
3/4	1,751	405	2,202	636	2,007	542	2,255	663
4/4	1,812	428	2,306	750	2,130	600	2,354	791
2001. 1/4	1,711	353	2,253	689	2,069	561	2,301	722
2/4	1,739	356	2,176	591	2,068	505	2,205	613
3/4	1,800	395	2,291	697	2,164	583	2,324	727
4/4	1,893	433	2,387	756	2,243	607	2,424	794
2002. 1/4	1,908	390	2,454	661	2,194	502	2,538	713
2/4	1,958	407	2,460	647	2,233	521	2,534	688
3/4	2,119	513	2,652	780	2,384	608	2,739	835
4/4	2,233	578	2,946	971	2,577	739	3,065	1,047
2003. 1/4	2,150	483	2,936	936	2,394	564	3,123	1,063
2/4	2,160	453	2,666	672	2,380	534	2,763	719
3/4	2,249	520	2,909	884	2,501	630	3,048	970
4/4	2,357	568	3,087	950	2,623	696	3,243	1,036
2001. 12	2,279	749	3,107	1,444	2,695	995	3,213	1,560
2002. 1	1,810	277	2,210	423	2,080	359	2,253	445
2	2,066	583	2,828	1,088	2,434	793	2,957	1,185
3	1,849	310	2,322	472	2,069	356	2,405	510
4	2,032	474	2,496	679	2,325	613	2,551	701
5	1,834	243	2,145	307	2,019	209	2,186	312
6	2,157	559	2,757	914	2,469	718	2,850	978
7	2,072	460	2,518	672	2,280	519	2,594	722
8	2,029	427	2,638	768	2,365	585	2,726	828
9	2,257	652	2,802	898	2,507	721	2,897	956
10	2,034	406	2,629	691	2,355	554	2,718	735
11	1,949	330	2,205	307	2,200	393	2,206	279
12	2,715	999	4,004	1,917	3,175	1,270	4,274	2,127
2003. 1	2,363	678	3,501	1,477	2,671	785	3,786	1,715
2	2,061	427	2,753	825	2,351	577	2,892	910
3	2,027	344	2,556	506	2,161	331	2,689	566
4	2,204	510	2,714	736	2,448	619	2,802	776
5	1,966	251	2,300	299	2,111	261	2,366	313
6	2,322	600	2,983	980	2,589	725	3,119	1,068
7	2,168	442	2,690	703	2,362	512	2,797	767
8	2,253	526	2,940	912	2,515	643	3,082	1,003
9	2,337	596	3,098	1,035	2,621	733	3,257	1,136
10	2,162	405	2,782	711	2,418	514	2,905	778
11	2,112	360	2,424	357	2,233	345	2,488	361
12	2,797	941	4,056	1,783	3,221	1,230	4,338	1,969

<표 34>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천원/월)

	남 성				여 성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8	1,579	1,157	115	307	1,006	755	61	191
1999	1,735	1,226	136	373	1,090	808	72	210
2000	1,885	1,320	156	408	1,178	870	81	227
2001	1,976	1,400	156	420	1,257	940	75	242
2002	2,193	1,574	148	472	1,393	1,035	76	282
2003	2,406	1,715	160	531	1,501	1,119	80	301
1999. 4/4	1,858	1,264	146	448	1,141	832	78	231
2000. 1/4	1,801	1,274	141	386	1,123	836	75	212
2/4	1,818	1,306	159	353	1,139	864	81	194
3/4	1,947	1,341	162	443	1,213	880	85	249
4/4	1,971	1,358	162	450	1,236	901	83	252
2001. 1/4	1,940	1,367	151	423	1,227	912	76	239
2/4	1,890	1,387	157	346	1,200	934	72	194
3/4	2,014	1,409	158	448	1,302	953	74	274
4/4	2,060	1,436	161	464	1,300	961	78	261
2002. 1/4	2,088	1,528	137	423	1,344	1,012	71	262
2/4	2,091	1,558	149	384	1,337	1,027	77	233
3/4	2,242	1,581	149	512	1,435	1,040	78	317
4/4	2,352	1,627	157	568	1,455	1,061	79	314
2003. 1/4	2,376	1,674	150	552	1,487	1,090	77	320
2/4	2,274	1,694	159	421	1,430	1,107	80	243
3/4	2,447	1,718	157	572	1,532	1,126	80	325
4/4	2,527	1,774	171	581	1,554	1,153	85	316
2001. 12	2,521	1,486	158	877	1,533	977	75	481
2002. 1	1,974	1,537	136	301	1,281	1,019	70	192
2	2,268	1,500	130	638	1,445	992	69	384
3	2,024	1,548	145	331	1,307	1,024	74	209
4	2,096	1,544	147	405	1,331	1,023	76	233
5	1,922	1,564	150	208	1,237	1,030	77	130
6	2,255	1,568	149	538	1,441	1,029	77	335
7	2,174	1,578	150	447	1,409	1,042	78	289
8	2,148	1,576	150	422	1,345	1,035	77	233
9	2,404	1,589	149	666	1,551	1,044	78	429
10	2,129	1,598	158	373	1,337	1,047	82	208
11	1,997	1,592	154	251	1,289	1,050	77	162
12	2,931	1,691	160	1,079	1,739	1,087	79	573
2003. 1	2,684	1,683	151	849	1,711	1,095	77	539
2	2,226	1,642	146	438	1,369	1,073	75	221
3	2,220	1,697	154	369	1,381	1,101	80	200
4	2,278	1,683	154	440	1,418	1,099	78	242
5	2,100	1,701	162	236	1,342	1,111	83	149
6	2,450	1,701	162	587	1,534	1,114	80	341
7	2,334	1,713	151	470	1,485	1,123	75	287
8	2,433	1,718	157	558	1,495	1,126	81	288
9	2,576	1,726	163	688	1,619	1,133	84	401
10	2,298	1,728	174	395	1,441	1,133	89	219
11	2,188	1,737	170	281	1,379	1,139	83	157
12	3,094	1,857	171	1,067	1,843	1,189	82	573

주·자료: <표 31>과 동일.

<표 35> 최저임금제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원)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최저임금(월환산액)	인 상 륜
1988	1그룹: 462.5 2그룹: 487.5	3,700 3,900	111,000 (240시간 기준) 117,000 (240시간 기준)	- -
1989	600	4,800	144,000 (240시간 기준)	-
1990	690	5,520	165,600 (240시간 기준)	15.0
1991	820	6,560	192,700 (235시간 기준)	18.8
1992	925	7,400	209,050 (226시간 기준)	12.8
1993	1,005	8,040	227,130 (226시간 기준)	8.6
1994. 1월~1994. 8월	1,085	8,680	245,210 (226시간 기준)	8.0
1994. 9월~1995. 8월	1,170	9,360	264,420 (226시간 기준)	7.8
1995. 9월~1996. 8월	1,275	10,200	288,150 (226시간 기준)	9.0
1996. 9월~1997. 8월	1,400	11,200	316,400 (226시간 기준)	9.8
1997. 9월~1998. 8월	1,485	11,880	335,610 (226시간 기준)	6.1
1998. 9월~1999. 8월	1,525	12,200	344,650 (226시간 기준)	2.7
1999. 9월~2000. 8월	1,600	12,800	361,600 (226시간 기준)	4.9
2000. 9월~2001. 8월	1,865	14,920	421,490 (226시간 기준)	16.5
2001. 9월~2002. 8월	2,100	16,800	474,600 (226시간 기준)	12.6
2002. 9월~2003. 8월	2,275	18,200	514,150 (226시간 기준)	8.3
2003. 9월~2004. 8월	2,510	20,080	567,260 (226시간 기준)	10.3

주: 1) 1988년의 1그룹과 2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1그룹: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의 12업종.

2그룹: 1그룹 외의 제조업 19업종.

2) 최초 실시연도인 1988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는 10인 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됨. 1990년부터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1999년부터는 5인 이상 전산업으로 그리고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6>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적용업종	적용대상근로자 (천명)	수혜근로자 (천명)	영향률 (%)
1988	10인 이상 제조업	2,267	94	4.2
1989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3	328	10.7
1990	10인 이상 전산업	4,386	187	4.3
1991	10인 이상 전산업	4,556	393	8.6
1992	10인 이상 전산업	4,620	392	8.5
1993	10인 이상 전산업	5,045	228	4.5
1994.1.~1994.8.	10인 이상 전산업	4,916	102	2.1
1994.9.~1995.8.	10인 이상 전산업	4,864	103	2.1
1995.9.~1996.8.	10인 이상 전산업	5,381	103	1.9
1996.9.~1997.8.	10인 이상 전산업	5,240	127	2.4
1997.9.~1998.8.	10인 이상 전산업	5,325	124	2.3
1998.9.~1999.8.	10인 이상 전산업	5,136	23	0.4
1999.9.~2000.8.	5인 이상 전산업	5,031	54	1.1
2000.9.~2001.8.	5인 이상 전산업	5,367	98	1.8
	(~2000. 11. 23)			
	1인 이상 전산업	6,692	141	2.1
	(2000. 11. 24~)			
2001.9.~2002.8.	1인 이상 전산업	7,152	201	2.8
2002.9.~2003.8.	1인 이상 전산업	상용 : 7,421 전체 : 13,216	상용 : 215 전체 : 849	상용 : 2.9 전체 : 6.4
2003.9.~2004.8.	1인 이상 전산업	상용 : 7,971 전체 : 13,631	상용 : 342 전체 : 1,035	상용 : 4.3 전체 : 7.6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적용대상근로자수×100

2) 2002. 8까지는 노동부기준 상용근로자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7>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단위 : 천원,%)

	소 득		근로소득		가계지출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6	2,153	12.6	1,838	11.9	1,603	13.7
1997	2,287	6.3	1,939	5.5	1,677	4.6
1998	2,133	-6.7	1,816	-6.4	1,536	-8.4
1999	2,225	4.3	1,873	3.2	1,731	12.6
2000	2,387	7.3	2,008	7.2	1,888	9.1
2001	2,625	10.0	2,211	10.1	2,058	9.0
2002	2,792	6.4	2,380	7.7	2,136	3.8
2003	2,939	5.3	2,593	8.9	2,280	6.8
1998. 1/4	2,232	-2.8	1,921	-0.1	1,584	-7.1
2/4	2,095	-5.3	1,744	-6.8	1,465	-10.7
3/4	2,072	-14.4	1,798	-12.8	1,463	-13.9
4/4	2,134	-3.8	1,798	-5.3	1,633	-1.9
1999. 1/4	2,222	-0.5	1,816	-5.5	1,725	8.9
2/4	2,102	0.4	1,772	1.6	1,662	13.5
3/4	2,248	8.5	1,974	9.8	1,711	17.0
4/4	2,327	9.1	1,932	7.4	1,823	11.7
2000. 1/4	2,349	5.7	1,943	7.0	1,919	11.2
2/4	2,331	10.9	1,953	10.2	1,841	10.7
3/4	2,443	8.6	2,087	5.7	1,872	9.4
4/4	2,425	4.2	2,051	6.2	1,921	5.4
2001. 1/4	2,580	9.8	2,150	10.7	2,060	7.4
2/4	2,476	6.2	2,106	7.8	1,974	7.3
3/4	2,735	12.0	2,297	10.0	2,079	11.0
4/4	2,710	11.8	2,290	11.6	2,117	10.2
2002. 1/4	2,788	8.1	2,317	7.8	2,201	6.8
2/4	2,714	9.6	2,305	9.5	2,084	5.6
3/4	2,863	4.7	2,457	7.0	2,153	3.6
4/4	2,804	3.5	2,439	6.5	2,106	-0.5
2003. 1/4	2,908	4.3	2,541	9.6	2,300	4.5
2/4	2,828	4.2	2,497	8.3	2,235	7.2
3/4	3,019	5.4	2,684	9.2	2,312	7.4
4/4	3,006	7.2	2,652	8.7	2,276	8.1

주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근로자가구 평균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표 38>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단위 : 천원,%)

	평균		2인		3인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8	1,536	-8.4	1,177	-9.0	1,411	-10.4
1999	1,731	12.6	1,339	13.7	1,566	11.0
2000	1,888	9.1	1,437	7.3	1,684	7.5
2001	2,058	9.0	1,553	8.1	1,874	11.3
2002	2,136	3.8	1,660	6.9	2,012	7.3
2003	2,280	6.8	1,687	1.6	2,154	7.0
1999. 4/4	1,823	11.7	1,415	15.9	1,662	10.2
2000. 1/4	1,919	11.2	1,438	8.7	1,710	10.2
2/4	1,841	10.7	1,433	9.3	1,586	5.5
3/4	1,872	9.4	1,413	8.0	1,672	8.0
4/4	1,921	5.4	1,464	3.5	1,767	6.3
2001. 1/4	2,060	7.4	1,493	3.8	1,865	9.1
2/4	1,974	7.3	1,462	2.0	1,789	12.8
3/4	2,079	11.0	1,625	15.0	1,884	12.7
4/4	2,117	10.2	1,633	11.5	1,959	10.9
2002. 1/4	2,201	6.8	1,720	15.2	2,043	9.5
2/4	2,084	5.6	1,613	10.4	1,967	9.9
3/4	2,153	3.6	1,684	3.6	2,034	8.0
4/4	2,106	-0.5	1,623	-0.6	2,004	2.3
2003. 1/4	2,300	4.5	1,674	-2.7	2,178	6.6
2/4	2,235	7.2	1,709	6.0	2,132	8.4
3/4	2,312	7.4	1,676	-0.5	2,192	7.8
4/4	2,276	8.1	1,688	4.0	2,114	5.5
	4인		5인		6인 이상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8	1,617	-8.2	1,825	-9.3	2,142	4.7
1999	1,873	15.8	2,055	12.6	2,181	1.8
2000	2,080	11.0	2,304	12.1	2,458	12.7
2001	2,245	7.9	2,581	12.0	2,752	11.9
2002	2,315	3.1	2,652	2.7	2,714	-1.3
2003	2,514	8.6	2,645	-0.2	2,761	1.7
1999. 4/4	1,969	13.3	2,157	9.5	2,389	12.4
2000. 1/4	2,081	11.2	2,428	18.3	2,430	11.3
2/4	2,027	12.8	2,235	13.5	2,795	41.2
3/4	2,090	12.7	2,273	11.4	2,273	4.7
4/4	2,120	7.7	2,278	5.6	2,335	-2.3
2001. 1/4	2,263	8.7	2,617	7.8	2,714	11.7
2/4	2,207	8.9	2,379	6.5	2,588	-7.4
3/4	2,252	7.7	2,595	14.2	2,808	23.5
4/4	2,258	6.5	2,732	19.9	2,896	24.0
2002. 1/4	2,361	4.3	2,801	7.0	2,901	6.9
2/4	2,263	2.5	2,648	11.3	2,516	-2.8
3/4	2,329	3.4	2,678	3.2	2,713	-3.4
4/4	2,310	2.3	2,479	-9.2	2,728	-5.8
2003. 1/4	2,534	7.4	2,657	-5.1	2,716	-6.4
2/4	2,437	7.7	2,524	-4.7	2,754	9.5
3/4	2,559	9.9	2,709	1.2	2,801	3.3
4/4	2,529	9.5	2,692	8.6	2,772	1.6

주 · 자료 : <표 37>과 동일.

<표 39>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지수 추이(제조업)

(단위 : 2000=100)

	물적노동생산성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지수 (원)	단위노동비용지수 (달러)
	전체 취업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1999	92.3	91.6	92.8	99.3	94.5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97.9	99.3	99.2	109.6	96.0
2002	105.8	107.5	106.3	110.4	99.8
1999. 1/4	87.9	87.0	88.9	102.4	96.7
2/4	89.8	89.1	92.5	96.6	91.8
3/4	91.7	91.3	93.6	102.3	96.8
4/4	98.6	98.1	95.8	96.7	93.2
2000. 1/4	97.9	97.9	95.3	95.9	96.4
2/4	100.7	100.7	101.3	95.5	96.7
3/4	101.5	101.2	104.4	104.8	106.2
4/4	100.1	100.0	98.7	103.7	100.0
2001. 1/4	95.1	96.6	96.8	111.6	99.2
2/4	97.6	99.2	98.9	102.4	89.3
3/4	95.9	97.2	99.1	114.3	100.6
4/4	99.8	101.6	101.0	111.4	97.5
2002. 1/4	104.0	105.7	103.6	113.7	97.4
2/4	104.8	106.7	105.2	105.9	97.8
3/4	105.2	107.1	107.2	120.2	113.5
4/4	109.2	110.8	108.5	117.7	109.1
2003. 1/4	107.5	108.9	108.7	122.9	115.6
2/4	109.2	111.3	111.4	111.3	104.2
3/4	110.0	113.1	114.7	125.3	120.7

주 : 1)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불변GDP)}}{\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단위노동비용지수 = $\frac{\text{시간당 임금지수(MH)}}{\text{물적 노동생산성지수(MH)}} \times 100$

2) 상용근로자의 노동투입량지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 전체근로자의 노동투입량지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와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취업자 수 및 근로시간을 추계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3)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월노동동향』 2002년 10월호 중 「노동통계연구」를 참조.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4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매및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8	199.2	20.0	190.0	20.6	200.0	23.8	212.6	28.8	192.4	6.8	193.9	9.0	194.6	10.6
1999	206.6	22.6	192.9	21.4	216.0	33.3	195.4	8.0	198.1	9.8	203.1	12.6	203.1	12.6
2000	204.8	23.4	193.6	23.4	213.1	33.3	193.2	8.7	194.2	8.7	204.2	14.5	204.2	14.5
2001	202.4	20.4	191.4	23.2	208.7	29.8	213.2	30.5	192.9	6.2	193.7	8.8	204.3	13.5
2002	199.6	18.0	195.7	23.6	206.4	28.7	207.2	26.2	190.5	5.4	191.7	8.1	200.0	10.3
2003	198.2	17.6	197.3	24.8	205.9	28.0	208.3	26.0	190.6	8.7	189.2	7.2	196.6	8.3
1999. 4/4	214.0	23.5	202.6	23.5	224.5	35.2	216.2	28.4	202.4	8.0	203.5	8.9	208.5	12.8
2000. 1/4	205.1	23.1	188.8	19.3	213.1	33.0	209.2	27.1	192.9	8.4	194.4	8.5	204.8	15.1
2/4	203.9	24.1	194.4	24.2	212.5	33.9	208.1	29.0	190.7	8.5	193.2	9.2	203.9	14.5
3/4	201.7	23.2	191.8	24.2	209.7	33.3	207.3	27.0	191.2	8.9	191.8	8.7	202.4	14.6
4/4	208.4	23.3	199.7	26.1	217.2	33.0	214.0	27.3	198.0	9.1	197.7	8.6	205.7	13.7
2001. 1/4	198.8	21.4	186.5	21.9	206.0	30.1	204.0	26.5	186.5	5.7	189.3	8.6	198.6	13.0
2/4	203.7	20.4	194.2	23.5	211.2	30.1	213.8	29.5	193.6	6.4	194.9	9.1	206.0	13.7
3/4	204.2	20.0	191.9	23.9	208.8	29.5	219.9	33.0	196.7	6.5	196.5	9.3	207.7	15.6
4/4	203.3	19.8	193.0	23.7	208.9	29.6	215.5	33.3	195.0	6.5	194.3	8.4	205.3	13.8
2002. 1/4	193.6	17.3	186.3	19.9	199.2	27.1	195.9	22.9	184.7	6.1	187.0	8.2	194.3	9.8
2/4	202.2	18.3	203.0	29.3	210.3	29.5	206.6	25.7	192.4	5.0	193.2	8.0	202.3	10.2
3/4	197.6	18.1	191.1	21.5	203.0	28.7	208.3	25.7	189.3	5.1	190.6	8.4	200.0	10.8
4/4	205.0	18.5	202.4	23.7	213.1	29.5	217.8	30.3	195.6	5.2	195.9	7.9	203.4	10.5
2003. 1/4	196.0	17.3	191.6	22.8	203.5	27.6	206.6	26.4	185.4	4.6	187.0	7.5	192.6	8.7
2/4	198.7	17.8	198.5	24.9	207.5	28.3	206.1	25.3	189.6	7.4	189.5	7.5	197.6	8.3
3/4	193.9	17.0	193.2	25.5	199.4	26.8	204.9	24.4	187.6	9.7	186.1	6.9	196.2	8.0
4/4	203.9	18.2	206.3	26.0	212.9	29.1	215.7	27.9	200.0	13.1	193.5	6.8	199.5	7.9
2001. 12	202.4	19.3	194.7	24.2	207.2	28.4	218.8	34.7	195.3	6.9	193.7	8.2	207.0	14.6
2002. 1	206.3	17.4	197.3	17.3	211.5	26.4	207.7	24.3	199.8	6.6	200.0	8.3	207.5	10.5
2	172.6	16.0	165.1	18.8	177.4	24.7	179.6	20.4	162.0	5.4	166.9	7.9	172.9	8.6
3	201.7	18.5	196.5	23.6	208.6	30.1	200.5	24.1	192.5	6.2	194.1	8.6	202.5	10.2
4	203.2	18.5	215.7	39.3	211.8	30.0	204.9	28.0	193.6	5.5	193.9	7.8	201.6	10.0
5	210.1	18.3	206.7	24.4	217.5	29.6	212.2	24.4	200.8	4.6	201.2	8.1	208.3	10.6
6	193.3	18.1	186.6	24.1	201.7	28.8	202.8	24.8	182.9	4.9	184.4	8.1	197.0	10.1
7	203.4	18.4	197.3	21.2	209.8	29.3	209.0	24.8	196.4	5.0	196.7	8.5	203.8	10.5
8	199.9	18.2	192.6	22.1	203.9	29.0	211.8	25.3	193.6	5.2	193.5	8.4	203.3	11.0
9	189.4	17.6	183.3	21.2	195.3	27.8	204.0	27.2	177.8	5.2	181.6	8.4	192.9	10.8
10	207.7	18.9	203.4	23.1	214.8	30.3	211.8	26.5	198.3	5.8	198.5	8.4	205.8	10.8
11	207.0	18.2	206.3	23.5	215.7	29.1	224.5	30.0	198.2	4.8	197.8	7.6	205.1	10.3
12	200.4	18.5	197.6	24.4	208.7	29.1	217.2	34.4	190.3	5.1	191.5	7.7	199.3	10.5
2003. 1	200.0	17.6	194.6	23.2	207.3	28.0	212.9	28.0	189.6	4.4	191.6	7.9	196.3	10.1
2	187.2	16.4	182.0	21.4	194.0	26.0	203.6	27.4	176.5	4.4	178.2	7.1	183.6	7.9
3	200.8	17.9	197.5	23.8	209.5	28.8	202.8	23.8	190.1	5.0	191.4	7.4	196.6	8.1
4	202.7	17.5	201.9	24.6	211.8	28.1	209.9	25.0	192.1	5.0	194.0	7.3	198.0	7.3
5	197.9	18.3	193.7	24.6	206.5	29.3	202.2	25.2	186.5	4.9	189.0	7.8	199.9	9.1
6	196.1	17.7	199.4	25.3	204.9	27.7	206.3	25.6	190.3	12.3	186.5	7.4	196.3	8.5
7	202.1	16.8	200.5	24.4	207.0	26.2	212.7	23.7	195.2	8.3	195.9	7.2	202.8	7.3
8	193.8	17.1	194.6	26.1	197.8	27.0	208.0	24.6	189.3	10.1	187.8	6.9	197.9	7.6
9	186.0	17.3	184.5	25.9	193.5	27.3	193.7	24.8	178.2	10.7	176.1	6.7	189.2	9.3
10	206.7	19.0	207.1	27.8	215.7	30.8	213.1	25.0	203.4	12.4	196.1	6.9	202.2	8.3
11	199.3	18.0	198.9	24.2	208.9	28.9	213.5	25.8	195.1	14.3	188.2	6.5	195.9	7.2
12	205.8	17.6	212.9	26.1	214.0	27.7	220.6	33.0	201.6	12.7	196.2	6.9	200.4	8.1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8	207.3	28.6	187.6	4.4	209.2	34.0	185.3	2.9	195.1	10.0	198.5	13.3
1999	215.9	30.4	188.3	6.1	206.2	26.3	192.9	10.5	195.2	9.3	196.6	9.4
2000	213.6	30.5	186.9	5.9	204.8	27.6	196.1	16.8	194.8	9.4	193.2	8.7
2001	212.0	29.7	185.5	4.7	203.7	15.8	190.9	12.5	195.4	9.2	195.8	8.9
2002	206.8	27.6	182.0	5.5	203.6	7.2	182.1	6.0	192.3	8.7	193.2	8.6
2003	205.1	27.2	174.8	4.7	202.9	6.9	180.2	5.6	190.0	7.4	193.2	9.3
1999. 4/4	220.5	31.4	198.3	7.8	212.2	25.3	202.3	12.7	200.0	8.5	202.1	8.5
2000. 1/4	213.3	29.7	188.2	5.9	204.5	24.8	202.6	20.6	194.4	9.8	193.3	9.0
2/4	214.3	32.3	185.1	6.8	201.2	27.1	197.4	19.2	195.7	10.9	193.4	9.9
3/4	210.7	29.4	182.7	5.4	203.5	28.3	191.4	15.8	190.6	8.4	190.7	8.1
4/4	216.1	30.5	191.5	5.6	209.8	30.2	192.9	11.7	198.4	8.6	195.5	7.8
2001. 1/4	208.1	29.2	182.9	6.0	199.6	26.2	185.2	10.5	192.6	9.9	190.7	8.0
2/4	212.0	29.3	184.4	3.7	202.4	15.0	193.6	14.0	195.3	8.7	196.6	9.8
3/4	214.5	30.2	188.4	4.2	208.4	12.1	191.9	13.4	197.3	9.0	198.8	9.3
4/4	213.6	30.3	186.6	4.9	204.6	10.3	193.0	12.3	196.6	9.5	197.1	8.8
2002. 1/4	201.7	26.3	179.2	5.0	197.9	7.7	175.8	5.3	186.7	8.8	187.8	8.5
2/4	207.2	27.7	185.2	5.4	204.3	6.9	185.5	6.2	194.6	8.6	194.5	8.8
3/4	206.9	27.8	180.1	5.6	203.1	7.1	179.1	5.7	190.7	8.8	192.5	8.7
4/4	211.5	28.7	183.5	6.1	208.9	7.2	187.8	6.7	197.2	8.8	198.0	8.4
2003. 1/4	202.4	27.0	175.1	4.7	202.1	6.8	179.3	5.9	187.7	7.9	189.6	8.6
2/4	204.6	27.4	175.3	4.9	201.8	7.1	180.7	5.9	189.8	7.5	193.9	9.5
3/4	202.7	26.6	170.8	4.4	200.9	6.9	176.4	5.3	187.7	7.2	190.7	9.4
4/4	210.1	27.6	177.9	4.5	207.1	6.6	184.8	5.1	195.8	7.2	198.2	9.6
2001. 12	215.1	31.0	185.2	5.1	204.2	10.2	190.5	11.4	195.9	9.2	197.0	8.8
2002. 1	212.0	27.0	192.8	4.8	211.4	9.6	188.1	5.7	201.3	9.3	201.2	8.8
2	185.7	25.4	159.1	5.4	176.6	6.8	154.6	4.8	164.3	8.5	166.4	7.9
3	207.5	26.5	185.7	4.7	205.6	6.8	184.7	5.3	194.5	8.7	195.7	8.7
4	207.0	27.0	187.6	5.4	205.1	6.7	185.7	6.1	195.1	8.4	194.8	8.8
5	213.3	28.1	194.6	5.5	213.0	6.7	196.4	6.4	205.0	8.6	203.3	8.8
6	201.3	28.1	173.5	5.4	194.9	7.2	174.3	5.9	183.8	8.7	185.4	8.7
7	211.5	28.6	184.3	5.5	208.1	7.3	181.3	5.8	196.8	8.6	199.0	8.8
8	210.9	27.9	183.3	5.5	206.5	7.2	182.3	5.7	193.6	8.7	195.8	9.0
9	198.2	27.0	172.7	5.8	194.7	6.7	173.8	5.7	181.8	9.2	182.5	8.4
10	214.8	28.7	188.2	5.9	212.5	7.4	192.2	6.0	200.9	9.2	201.4	9.1
11	210.9	27.5	184.7	6.2	210.3	7.3	190.1	6.9	198.9	8.3	199.5	8.1
12	208.9	29.8	177.5	6.2	204.0	7.1	180.9	7.1	191.8	8.8	193.0	8.1
2003. 1	207.4	27.5	178.1	4.7	205.9	6.7	183.0	5.9	192.6	8.3	193.0	7.9
2	192.6	24.5	169.0	4.9	193.0	6.8	172.3	5.7	179.7	7.7	182.5	9.1
3	207.1	28.9	178.6	4.7	208.2	6.8	180.6	6.0	189.3	7.8	193.8	8.9
4	207.5	27.8	182.0	4.8	205.2	6.7	185.9	6.2	192.4	7.0	196.8	9.2
5	206.9	28.5	172.2	5.2	200.4	7.3	179.2	5.9	189.4	7.7	193.2	10.3
6	200.9	26.2	171.5	4.8	199.3	7.3	176.9	5.7	186.7	7.6	186.7	7.6
7	210.8	27.3	182.1	4.7	208.6	6.6	185.1	6.0	196.8	6.9	199.4	9.4
8	203.6	26.4	170.0	4.4	201.0	6.7	178.1	5.2	187.9	7.2	192.3	9.3
9	194.6	26.2	160.2	4.2	192.1	7.5	167.0	4.7	178.5	7.7	180.1	9.6
10	212.3	28.4	180.3	4.3	209.7	7.0	187.3	5.1	199.2	7.8	201.5	10.2
11	206.3	27.2	171.2	4.3	201.9	6.4	179.3	5.2	191.1	7.1	193.4	9.2
12	211.6	27.3	182.1	4.9	209.5	6.4	187.8	5.1	197.1	6.6	199.8	9.6

<표 4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8	200.6	19.1	-	-	196.7	12.1	202.1	21.7
1999	206.7	20.7	196.6	8.8	202.4	15.9	209.9	24.7
2000	205.1	21.8	195.1	8.5	200.9	16.8	207.7	25.3
2001	203.1	18.6	194.5	7.0	200.0	14.2	205.1	22.1
2002	200.3	16.0	193.3	5.6	197.0	10.7	202.4	19.2
2003	198.8	15.7	192.5	6.9	194.6	9.5	201.7	19.2
1999. 4/4	213.9	21.5	203.3	8.9	210.0	16.7	217.2	25.3
2000. 1/4	205.4	21.3	194.9	8.7	200.7	15.8	209.0	25.5
2/4	204.7	22.7	194.9	8.8	199.7	17.1	207.9	27.1
3/4	201.8	21.5	192.0	8.1	198.0	17.0	204.2	24.9
4/4	208.5	21.6	198.7	8.2	205.1	17.1	209.7	23.6
2001. 1/4	198.6	19.5	190.2	7.7	194.9	14.9	200.2	22.2
2/4	204.2	18.7	195.4	7.0	201.0	14.5	206.4	22.1
3/4	205.5	18.5	196.9	6.7	202.9	14.1	207.5	22.3
4/4	204.3	18.1	195.7	6.7	201.5	13.3	206.6	21.9
2002. 1/4	194.2	15.2	187.7	5.6	191.0	10.2	196.0	18.4
2/4	198.6	15.8	191.7	5.6	195.3	10.5	200.5	18.9
3/4	198.5	16.0	191.6	5.5	194.9	10.6	200.6	19.2
4/4	205.7	16.4	198.1	5.6	202.4	11.2	208.1	19.7
2003. 1/4	196.6	15.5	189.0	5.3	192.5	9.5	199.5	19.1
2/4	199.1	15.9	192.8	6.7	194.7	9.4	202.0	19.6
3/4	194.6	15.1	189.2	7.2	190.9	9.2	196.7	18.3
4/4	204.5	16.2	198.5	8.3	200.3	10.0	207.6	19.6
2001. 12	204.0	17.9	195.3	6.8	201.1	13.0	206.1	21.4
2002. 1	207.4	15.4	200.5	5.9	204.7	10.8	209.6	18.4
2	172.7	13.9	166.2	4.9	169.5	9.4	173.5	16.7
3	202.6	16.2	196.2	6.0	198.7	10.4	204.8	20.0
4	203.7	16.5	195.8	5.8	200.3	10.7	206.5	20.1
5	211.3	16.6	203.9	5.7	208.0	10.9	213.8	19.5
6	193.7	16.0	187.4	5.3	190.6	10.7	194.8	18.8
7	204.9	16.5	198.3	5.9	201.6	11.0	207.0	19.8
8	201.2	16.0	194.3	5.4	197.7	10.7	203.4	19.0
9	189.5	15.5	182.2	5.2	185.5	10.3	191.3	18.6
10	208.8	16.7	200.9	5.5	205.2	11.2	211.7	20.0
11	207.4	16.2	200.4	5.7	204.5	11.2	210.0	19.7
12	200.8	16.4	193.1	5.5	197.5	11.0	202.7	19.6
2003. 1	200.9	15.8	193.1	5.2	197.0	9.9	203.8	19.3
2	187.2	14.6	180.9	5.3	183.3	9.2	190.0	17.7
3	201.6	16.3	192.9	5.4	197.5	9.6	205.0	20.4
4	203.0	15.7	195.0	5.8	198.5	9.4	206.2	19.1
5	198.2	16.3	191.9	6.0	194.4	9.7	202.4	20.7
6	196.1	15.7	191.6	8.5	191.0	9.1	198.9	19.1
7	203.3	15.1	197.0	6.8	200.7	9.3	205.9	18.3
8	194.6	15.1	190.4	7.4	191.1	9.4	196.5	18.4
9	185.8	15.1	181.3	7.5	181.0	8.8	187.9	18.3
10	207.4	16.9	201.6	8.3	202.6	10.3	210.9	20.7
11	199.6	16.0	193.4	8.4	195.6	9.8	202.5	19.3
12	206.5	15.8	200.4	8.1	202.9	10.0	209.5	18.7

주·자료: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8	203.4	24.1	195.6	22.5	199.6	22.7	194.4	22.4
1999	216.9	32.3	206.2	28.3	210.9	28.5	205.0	28.3
2000	214.4	33.5	203.7	29.1	208.3	29.4	202.5	29.0
2001	212.7	31.1	199.9	26.9	202.2	25.5	199.3	27.2
2002	209.3	29.8	196.7	26.1	201.5	25.0	195.2	26.4
2003	206.3	27.5	196.2	24.2	200.3	24.2	194.8	24.2
1999. 4/4	223.6	33.6	214.2	29.7	218.3	30.4	213.1	29.5
2000. 1/4	214.2	32.2	204.0	29.1	208.5	28.3	202.7	29.4
2/4	214.1	34.5	201.3	29.0	207.0	30.7	199.7	28.6
3/4	210.7	32.8	201.5	29.2	204.9	29.9	200.6	29.0
4/4	218.4	34.6	208.2	29.1	212.7	28.6	206.9	29.2
2001. 1/4	209.3	32.7	199.6	28.7	197.1	24.9	200.3	29.7
2/4	213.8	30.9	201.8	26.8	203.4	26.2	201.4	26.9
3/4	214.5	30.4	199.3	25.9	204.1	25.2	198.1	26.0
4/4	213.5	30.4	199.1	26.3	204.7	25.8	197.7	26.4
2002. 1/4	203.2	27.7	191.0	25.5	196.5	24.9	189.2	25.7
2/4	207.5	29.3	195.2	25.7	199.9	25.0	193.6	26.0
3/4	207.8	30.1	193.9	26.1	199.6	24.5	192.1	26.6
4/4	214.5	30.5	202.5	26.8	206.4	25.5	201.3	27.2
2003. 1/4	204.8	28.1	194.0	23.5	198.1	23.9	192.6	23.3
2/4	206.8	28.1	197.6	24.5	201.0	24.4	196.4	24.5
3/4	201.7	26.2	191.5	23.8	196.2	23.7	189.9	23.8
4/4	211.6	27.6	201.9	25.1	205.9	24.6	200.5	25.3
2001. 12	213.2	30.4	196.5	24.8	204.4	26.5	194.4	24.3
2002. 1	215.0	27.4	202.1	25.0	209.7	25.3	199.6	24.9
2	182.8	25.7	172.4	24.0	175.6	23.2	171.3	24.3
3	211.7	29.8	198.4	27.4	204.0	26.3	196.5	27.8
4	212.7	30.6	201.1	26.3	204.8	25.0	199.9	26.8
5	220.0	31.9	205.4	25.2	211.5	25.0	203.4	25.2
6	203.1	30.4	191.8	26.4	194.0	25.0	191.4	26.8
7	213.3	30.8	197.5	25.6	203.6	24.5	195.5	25.9
8	210.1	30.4	195.1	26.7	203.2	25.1	192.5	27.2
9	200.1	29.2	189.2	25.9	191.9	24.0	188.3	26.6
10	217.8	31.4	203.2	27.8	209.9	26.5	201.0	28.3
11	215.1	29.3	205.4	26.0	208.4	25.1	204.4	26.4
12	210.5	30.9	199.0	26.6	201.1	25.0	198.4	27.1
2003. 1	209.3	28.6	196.9	24.0	202.0	24.0	195.1	24.0
2	195.3	26.1	186.4	22.6	189.0	22.9	185.6	22.6
3	209.9	29.5	198.7	23.8	203.3	24.9	196.9	23.4
4	211.6	28.5	202.3	23.9	205.5	23.5	201.0	24.0
5	205.5	28.8	195.0	25.2	199.7	25.6	193.6	25.1
6	204.3	27.2	195.5	24.4	198.5	24.2	194.5	24.5
7	209.5	26.3	198.0	22.5	202.9	23.2	196.1	22.2
8	201.9	25.9	190.2	23.8	197.1	24.4	187.7	23.6
9	194.5	26.6	186.3	25.0	188.2	23.5	185.5	25.4
10	214.8	28.7	204.0	26.4	209.1	25.6	202.3	26.7
11	206.9	27.2	198.5	25.0	201.8	24.6	197.4	25.1
12	213.2	26.9	203.2	24.0	206.9	23.7	201.9	24.1

<표 42> 산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자동차용 품수리업
1997	50.1	46.0	56.3	52.4	50.1	46.0	50.3	52.0
1998	48.9	44.9	51.6	50.7	48.8	48.2	46.5	51.7
1999	49.8	44.9	47.3	49.2	50.4	47.7	47.6	52.2
2000	50.0	44.7	47.4	52.1	50.9	47.5	48.4	51.4
2001	49.7	45.2	52.0	51.5	50.5	47.1	48.7	51.0
2002	49.1	44.7	51.4	48.5	49.7	46.0	48.3	50.6
2003	48.2	43.0	48.5	53.6	49.4	45.9	46.9	49.4
1999. 4/4	50.6	43.9	50.8	49.8	51.2	47.4	48.5	52.4
2000. 1/4	50.1	42.5	44.2	49.9	51.4	48.1	46.8	52.2
2/4	50.0	45.6	45.2	52.3	50.6	47.0	49.1	51.3
3/4	49.4	46.3	51.1	51.9	50.5	46.7	48.3	50.7
4/4	50.4	43.5	49.8	54.4	51.2	47.9	49.1	51.3
2001. 1/4	49.8	43.1	51.0	50.2	51.1	47.3	46.3	51.6
2/4	50.7	46.8	50.6	53.5	51.1	48.7	50.4	51.4
3/4	48.3	45.3	52.8	50.5	49.1	44.8	48.2	49.8
4/4	50.2	44.8	53.0	51.7	50.8	47.4	49.7	51.4
2002. 1/4	49.7	42.3	51.9	50.4	50.7	47.1	47.5	51.4
2/4	49.8	46.4	50.9	49.9	50.1	47.2	49.5	51.2
3/4	47.3	44.6	51.8	46.4	47.8	44.2	46.7	49.3
4/4	49.7	44.6	51.1	46.6	50.3	45.5	49.2	50.6
2003. 1/4	48.8	42.6	46.3	51.4	50.5	45.9	47.0	50.2
2/4	49.3	43.8	49.5	55.7	50.3	47.3	48.3	49.9
3/4	45.7	42.8	49.2	55.7	46.6	43.6	44.7	47.6
4/4	48.8	42.9	49.0	51.6	50.0	46.6	47.6	49.8
2002. 2	49.8	42.0	50.6	51.2	50.6	47.5	46.8	51.6
3	50.5	44.7	53.9	51.4	51.0	46.2	49.2	51.5
4	50.4	45.4	49.7	52.1	51.0	47.8	50.1	51.5
5	50.3	45.7	48.1	49.4	50.9	48.6	49.2	51.6
6	48.8	48.1	55.4	47.8	48.3	45.0	49.2	50.5
7	47.2	43.1	53.7	48.7	47.2	44.1	46.4	49.2
8	45.0	42.7	45.0	45.4	46.1	42.6	44.1	47.7
9	49.7	47.7	56.0	45.0	50.0	46.1	49.5	50.9
10	49.9	46.6	48.0	46.4	50.6	45.5	49.8	50.8
11	49.7	45.0	51.2	47.6	50.4	45.7	49.6	50.5
12	49.5	41.9	53.3	45.7	50.0	45.4	48.2	50.5
2003. 1	48.2	42.2	45.3	50.5	50.5	45.7	46.8	50.6
2	48.8	42.0	45.6	50.5	50.5	45.5	46.9	50.2
3	49.2	43.2	47.8	53.1	50.6	46.5	47.3	49.9
4	49.3	43.3	48.7	55.6	50.4	47.5	47.6	49.9
5	49.4	44.7	50.6	54.6	50.4	46.8	49.2	49.9
6	49.2	43.4	49.4	56.8	50.1	47.7	48.2	50.0
7	45.8	40.9	47.5	55.1	46.2	42.2	43.5	48.0
8	43.1	43.3	48.4	54.9	44.5	40.2	43.7	45.6
9	48.3	44.2	52.1	57.1	49.2	48.5	46.8	49.1
10	48.9	45.9	46.9	54.6	50.0	47.5	48.9	49.5
11	48.7	42.3	50.4	52.4	49.9	46.1	47.2	49.8
12	48.7	39.8	49.4	48.6	50.1	46.1	46.6	50.1
2004. 1	47.9	40.5	47.7	43.1	50.3	46.6	45.8	50.3
2	48.1	40.0	49.3	44.2	50.0	46.4	46.0	50.0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7	56.1	54.7		45.9	52.0		39.6	49.4	50.1
1998	53.9	54.2		46.7	51.4		39.5	49.0	49.3
1999	54.4	55.0		47.6	52.7		39.6	50.0	50.0
2000	54.4	56.1	48.6	47.3	56.5	51.1	39.8	49.0	52.0
2001	53.5	56.1	49.6	47.1	55.8	50.8	39.3	49.1	52.0
2002	54.4	55.7	49.2	45.9	54.4	50.0	38.7	48.5	51.6
2003	52.4	54.5	47.2	44.9	53.2	49.7	38.2	48.7	50.4
1999. 4/4	55.2	55.3		48.6	53.1		42.4	50.5	51.0
2000. 1/4	55.2	55.8	49.5	48.4	56.5	51.5	37.7	50.1	52.3
2/4	54.7	56.2	48.4	47.1	56.2	50.8	41.7	49.6	51.7
3/4	54.1	55.9	47.5	46.2	56.4	50.7	37.3	47.8	51.5
4/4	53.8	56.5	49.0	47.5	56.7	51.4	42.3	48.8	52.5
2001. 1/4	53.6	56.3	49.4	47.5	56.4	51.4	37.5	49.9	52.9
2/4	54.0	56.8	50.8	48.1	56.4	51.7	42.8	50.1	52.5
3/4	52.9	55.4	47.7	44.7	54.9	49.0	35.0	47.3	50.9
4/4	53.4	56.1	50.5	48.0	55.6	51.3	41.8	49.1	51.8
2002. 1/4	53.9	56.4	50.4	48.0	55.4	51.8	37.3	49.5	51.6
2/4	54.4	56.4	49.6	46.9	55.4	50.6	41.1	49.1	51.6
3/4	54.2	54.4	46.4	43.0	52.9	47.3	34.5	46.8	50.7
4/4	55.1	55.7	50.4	45.8	53.9	50.6	41.8	48.9	52.4
2003. 1/4	53.0	55.5	48.5	46.1	54.1	50.7	36.2	49.5	51.5
2/4	52.9	54.9	48.5	46.7	54.0	51.0	41.8	49.8	51.5
3/4	51.8	52.9	43.9	41.4	51.5	47.1	33.9	46.5	48.3
4/4	51.8	54.6	47.6	45.3	53.0	50.5	41.1	49.0	50.5
2002. 2	54.1	56.3	50.4	48.1	55.5	51.3	39.7	49.5	51.2
3	54.3	56.7	50.6	47.8	55.9	52.0	42.4	50.0	52.5
4	54.5	56.9	50.4	47.5	56.3	51.3	42.0	49.4	51.9
5	54.4	56.9	50.5	47.9	55.3	51.5	41.5	49.4	52.0
6	54.3	55.3	47.9	45.1	54.7	49.0	39.7	48.4	51.1
7	54.7	53.8	45.7	42.6	52.8	47.1	36.0	46.5	50.2
8	53.2	53.0	44.0	40.4	51.9	44.8	26.0	45.0	49.7
9	54.7	56.5	49.5	46.0	54.1	50.0	41.2	48.8	52.2
10	55.1	56.1	49.9	45.9	53.5	50.8	41.7	49.0	52.7
11	54.8	55.8	50.1	45.6	53.9	50.6	41.7	49.1	52.3
12	55.3	55.1	51.3	45.9	54.4	50.5	41.9	48.7	52.1
2003. 1	53.1	55.4	49.0	46.3	54.6	50.9	28.9	49.5	51.5
2	52.9	55.6	47.9	46.1	53.9	50.9	37.9	49.0	51.4
3	53.0	55.5	48.7	45.9	53.8	50.2	41.6	49.9	51.5
4	53.1	54.9	48.2	46.7	53.6	50.9	42.1	50.0	51.4
5	53.2	54.6	48.5	46.8	54.4	50.8	41.6	49.8	51.6
6	52.2	55.2	48.7	46.4	54.1	51.2	41.6	49.7	51.5
7	51.7	53.2	44.3	41.3	52.5	47.0	36.2	46.5	49.2
8	51.5	51.4	40.3	38.1	49.6	44.3	24.4	44.4	45.9
9	52.2	53.9	47.3	44.9	52.5	49.8	40.8	48.7	49.8
10	51.9	54.6	47.6	45.0	52.8	50.5	41.4	49.0	50.7
11	51.7	54.6	47.2	45.5	53.2	50.5	41.4	49.0	50.1
12	51.8	54.7	48.1	45.5	53.0	50.4	40.3	49.1	50.7
2004. 1	52.3	54.8	49.1	45.6	53.0	50.5	29.0	49.2	50.8
2	52.3	54.4	48.9	45.2	53.1	50.0	34.2	49.4	50.4

<표 43> 직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직종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1997	50.1	48.8	43.7	47.1	48.0	55.0	
1998	48.9	49.5	44.3	47.5	48.3	53.7	
1999	49.8	50.6	45.3	48.8	48.9	54.0	
2000	50.0	50.0	45.2	48.7	48.6	54.0	50.2
2001	49.7	49.1	45.5	48.5	48.2	53.1	50.1
2002	49.1	47.8	44.5	47.4	47.3	53.2	50.0
2003	48.2	48.3	43.9	46.6	46.7	51.6	48.8
1999. 4/4	50.6	52.0	47.8	49.4	49.3	54.6	
2000. 1/4	50.1	50.9	44.1	49.6	49.4	54.5	51.1
2/4	50.0	50.4	46.3	48.4	48.4	54.2	50.0
3/4	49.4	48.6	43.1	47.9	48.0	53.4	49.8
4/4	50.4	49.9	47.4	49.1	48.7	53.8	50.2
2001. 1/4	49.8	49.4	44.5	49.3	48.8	53.5	50.5
2/4	50.7	50.4	48.2	49.6	49.1	53.7	50.3
3/4	48.3	46.7	41.7	46.6	46.3	52.2	49.1
4/4	50.2	49.9	47.4	48.6	48.7	53.1	50.4
2002. 1/4	49.7	49.2	43.8	49.0	48.6	53.0	50.7
2/4	49.8	49.3	46.8	48.2	48.1	53.4	50.3
3/4	47.3	44.6	40.4	44.7	44.8	52.7	49.1
4/4	49.7	48.0	46.8	47.6	47.8	53.9	50.0
2003. 1/4	48.8	49.2	42.5	47.6	48.0	51.9	49.8
2/4	49.3	49.9	46.9	48.0	48.2	52.5	48.9
3/4	45.7	45.0	39.7	43.6	43.5	50.6	47.2
4/4	48.8	49.2	46.3	47.3	47.1	51.5	49.0
2002. 2	49.8	49.5	45.1	48.9	48.4	53.2	51.1
3	50.5	49.7	47.6	49.4	49.0	53.6	50.6
4	50.4	50.1	47.6	49.2	48.9	53.6	50.3
5	50.3	50.2	47.8	48.7	49.0	53.5	50.9
6	48.8	47.6	44.9	46.6	46.6	53.0	49.7
7	47.2	44.9	41.3	44.4	44.5	53.1	49.1
8	45.0	41.4	33.7	42.2	42.3	51.3	47.7
9	49.7	47.4	46.2	47.5	47.5	53.7	50.5
10	49.9	48.1	46.8	47.7	48.1	53.9	50.0
11	49.7	47.8	46.9	47.5	47.6	53.7	49.9
12	49.5	48.1	46.7	47.6	47.8	54.1	50.2
2003. 1	48.2	48.8	37.4	47.5	48.1	51.5	50.2
2	48.8	48.9	43.6	47.7	47.8	51.9	50.0
3	49.2	49.9	46.6	47.8	48.1	52.3	49.2
4	49.3	50.1	46.9	48.0	48.3	52.8	49.1
5	49.4	49.7	46.6	48.1	48.3	52.7	48.8
6	49.2	49.8	47.1	47.8	48.0	52.1	48.8
7	45.8	44.7	41.3	43.8	43.5	51.2	47.6
8	43.1	41.5	32.2	40.3	40.1	49.2	45.9
9	48.3	48.9	45.6	46.5	47.0	51.6	48.2
10	48.9	49.4	46.3	47.3	47.3	51.5	48.7
11	48.7	49.2	46.6	47.3	47.0	51.7	48.8
12	48.7	49.0	46.0	47.4	47.1	51.4	49.4
2004. 1	47.9	47.6	37.9	47.3	47.3	50.8	49.7
2	48.1	47.8	41.5	47.4	47.1	51.0	49.4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농업 및 어업속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1997	51.7	51.2	53.8	49.0
1998	46.0	48.3	52.2	46.4
1999	45.7	49.8	54.1	46.5
2000	46.1	50.7	54.4	48.0
2001	47.3	51.0	54.0	48.0
2002	46.7	50.1	53.6	47.8
2003	47.6	49.2	52.6	47.0
1999. 4/4	46.9	50.8	55.2	46.9
2000. 1/4	42.1	50.1	54.5	47.6
2/4	46.4	50.7	54.1	48.2
3/4	48.4	50.6	54.1	47.9
4/4	47.1	51.3	54.7	48.3
2001. 1/4	44.8	50.3	54.2	47.8
2/4	48.3	51.8	54.5	48.6
3/4	47.4	50.3	52.9	47.1
4/4	48.3	51.4	54.3	48.3
2002. 1/4	44.7	50.3	54.5	48.0
2/4	46.8	50.9	54.0	48.0
3/4	46.1	48.6	52.0	46.9
4/4	49.0	50.6	53.8	48.4
2003. 1/4	45.5	49.8	53.4	47.5
2/4	47.8	50.1	53.4	47.7
3/4	48.7	47.3	50.4	45.5
4/4	48.0	49.5	53.3	47.4
2002. 2	43.9	49.9	54.4	47.9
3	47.6	51.2	54.7	48.5
4	46.3	51.6	54.9	48.3
5	45.6	51.2	54.7	47.8
6	48.7	50.1	52.5	48.0
7	44.5	48.4	51.6	46.2
8	43.2	46.6	50.8	45.7
9	50.1	50.9	53.6	48.8
10	48.8	51.2	53.9	48.8
11	50.0	50.8	53.9	48.3
12	48.1	49.7	53.6	48.1
2003. 1	47.1	49.8	53.3	47.6
2	42.4	49.9	53.3	47.6
3	47.2	49.7	53.7	47.5
4	46.0	49.9	53.4	47.4
5	48.6	50.5	53.4	48.1
6	49.0	50.0	53.3	47.8
7	47.6	46.6	49.7	45.2
8	47.8	46.1	48.8	44.3
9	50.4	49.1	52.7	46.9
10	50.4	50.2	53.2	47.9
11	46.2	49.3	53.3	47.1
12	47.4	49.0	53.3	47.3
2004. 1	47.8	48.9	53.4	47.4
2	46.8	48.6	53.0	47.4

<표 44> 규모별, 성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주)

	전규모			10인 미만			10~299인			300인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8	48.9	50.6	46.4	48.8	50.3	47.3	49.2	51.2	45.3	48.4	48.9	46.8
1999	49.8	51.8	46.7	49.4	51.3	47.6	50.2	52.6	45.7	49.5	50.2	47.2
2000	50.0	52.0	47.0	49.8	51.9	47.9	50.1	52.6	45.9	49.6	50.4	47.3
2001	49.7	51.9	46.6	49.7	52.1	47.4	50.0	52.5	45.7	48.9	49.8	46.5
2002	49.1	51.3	46.1	49.4	51.5	47.2	49.2	51.8	45.0	47.9	48.8	45.5
2003	48.2	50.3	45.2	48.2	50.3	46.2	48.0	50.6	44.1	48.4	49.7	45.0
1999. 4/4	50.6	52.7	47.5	50.0	52.0	48.0	51.2	53.6	46.8	50.4	51.1	48.0
2000. 1/4	50.1	52.1	47.1	49.9	51.8	48.1	50.2	52.6	45.9	50.5	51.2	48.1
2/4	50.0	52.0	47.0	50.0	52.0	47.9	50.3	52.7	46.1	49.1	49.8	47.1
3/4	49.4	51.5	46.3	49.6	51.6	47.6	49.4	51.9	45.0	49.0	49.8	46.5
4/4	50.4	52.4	47.4	50.1	52.2	47.9	50.7	53.1	46.8	49.9	50.8	47.4
2001. 1/4	49.8	51.9	46.9	49.7	51.6	47.9	50.0	52.5	45.8	49.8	50.6	47.5
2/4	50.7	52.9	47.4	50.4	52.9	48.0	51.1	53.6	46.9	49.8	50.7	47.3
3/4	48.3	50.5	45.0	48.9	51.3	46.5	48.1	50.8	43.4	47.0	47.9	44.4
4/4	50.2	52.5	47.0	49.9	52.4	47.4	50.7	53.2	46.6	49.1	49.9	46.7
2002. 1/4	49.7	51.9	46.5	49.5	51.6	47.5	49.9	52.5	45.5	49.3	50.3	46.4
2/4	49.8	52.1	46.7	49.9	52.2	47.6	50.1	52.7	45.9	48.4	49.2	46.2
3/4	47.3	49.2	44.5	48.2	50.0	46.4	47.0	49.6	42.7	45.5	46.2	43.4
4/4	49.7	51.9	46.6	49.8	52.0	47.5	49.9	52.4	45.8	48.6	49.6	46.0
2003. 1/4	48.8	50.8	45.8	48.8	50.8	46.9	48.3	50.9	44.6	49.4	50.7	45.8
2/4	49.3	51.5	46.3	49.0	51.2	46.8	49.4	51.9	45.6	49.8	51.2	46.2
3/4	45.7	47.7	43.0	46.6	48.6	44.7	45.2	47.9	41.2	45.4	46.4	42.5
4/4	48.8	51.0	45.6	48.3	50.6	46.2	48.9	51.6	45.0	49.2	50.6	45.6
2002. 2	49.8	51.9	46.7	49.5	51.5	47.5	50.1	52.6	46.0	49.2	50.1	46.6
3	50.5	52.7	47.2	50.2	52.4	47.9	50.9	53.5	46.6	49.5	50.6	46.6
4	50.4	52.8	47.1	50.3	52.7	47.8	50.8	53.5	46.5	49.5	50.5	46.7
5	50.3	52.6	47.1	50.0	52.2	47.8	50.7	53.4	46.4	49.6	50.4	47.2
6	48.8	50.8	46.0	49.5	51.7	47.2	48.9	51.4	44.9	46.1	46.6	44.7
7	47.2	49.0	44.5	48.1	49.6	46.5	46.9	49.5	42.7	44.9	45.7	42.9
8	45.0	46.9	42.3	46.7	48.2	45.1	44.0	46.8	39.5	43.3	44.0	41.3
9	49.7	51.8	46.7	49.9	52.2	47.5	49.9	52.3	45.9	48.2	49.0	46.1
10	49.9	52.1	46.8	50.1	52.4	47.7	50.1	52.6	46.0	48.7	49.7	46.1
11	49.7	51.9	46.5	49.8	52.1	47.3	49.9	52.5	45.7	48.6	49.5	46.1
12	49.5	51.6	46.5	49.5	51.5	47.5	49.7	52.2	45.7	48.6	49.7	45.7
2003. 1	48.2	50.4	45.1	49.0	50.8	47.2	47.1	50.1	42.6	48.9	50.2	45.4
2	48.8	50.8	46.0	48.8	50.8	46.9	48.6	50.9	45.1	49.3	50.7	45.4
3	49.2	51.3	46.3	48.7	50.7	46.7	49.3	51.7	45.9	49.9	51.2	46.4
4	49.3	51.4	46.5	48.9	50.9	47.0	49.4	51.8	45.9	49.9	51.2	46.4
5	49.4	51.6	46.3	49.3	51.7	47.0	49.4	52.0	45.6	49.7	51.0	46.2
6	49.2	51.5	46.0	48.9	51.2	46.6	49.2	51.9	45.3	49.8	51.2	46.0
7	45.8	47.7	43.2	46.7	48.6	44.9	45.5	48.0	41.8	45.0	46.1	41.9
8	43.1	45.1	40.3	45.2	47.1	43.3	41.7	44.8	37.0	42.3	43.2	39.9
9	48.3	50.4	45.4	47.9	50.1	45.9	48.4	50.9	44.7	48.8	49.9	45.7
10	48.9	51.3	45.7	48.6	51.1	46.2	49.1	51.8	45.1	49.3	50.7	45.7
11	48.7	50.9	45.6	48.2	50.4	46.1	48.8	51.5	44.9	49.3	50.6	45.7
12	48.7	50.8	45.6	48.2	50.2	46.3	48.8	51.5	45.0	49.1	50.5	45.4
2004. 1	47.9	50.4	44.4	48.3	50.2	46.4	47.1	50.5	42.0	48.8	50.3	45.2
2	48.1	50.5	44.7	48.2	50.5	45.9	47.6	50.7	43.2	48.9	50.3	45.1

주 :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5>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업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노 동 조합원수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5	6,103		1,568,723
2002	6,506	2	41	6,463		1,605,972

주: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노동부.

<표 46>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2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소, 명)

		조 합 수	조 합 원 수		
			계	남 자	여 자
전 체		6,506	1,605,972	1,306,221	299,751
계		4,063	876,889	716,807	160,082
한 국 노 총	한 국 노 총(직 할 노 조)	84	8,301	6,008	2,293
	섬 유·유 통 노 련	170	30,919	14,212	16,707
	광 산 노 련	23	6,275	5,947	328
	전 력 노 조	4	13,973	12,444	1,529
	외 기 노 련	41	20,419	14,366	6,053
	통 신 노 련	50	12,105	10,147	1,958
	항 운 노 련	58	30,831	29,370	1,461
	해 상 노 련	62	26,099	25,983	116
	금 융 노 련	92	81,144	56,724	24,420
	담 배 인 삼 노 조	5	5,343	4,499	844
	화 학 노 련	675	83,852	65,037	18,815
	금 속 노 련	676	109,140	84,555	24,585
	연 합 노 련	584	73,492	58,516	14,976
	출 판 노 련	58	3,564	2,554	1,010
	자 동 차 노 련	491	76,718	75,614	1,104
	관 광 노 련	143	13,640	8,238	5,402
	체 신 노 조	2	21,987	16,437	5,550
	전 택 노 련	614	164,721	163,093	1,628
	고 무 노 련	16	8,079	6,895	1,184
	도 시 철 도 노 련	8	8,878	7,943	935
	공 공 서 비 스 노 련	56	17,200	12,016	5,184
	아 파 트 노 련	34	3,430	3,315	115
	공 공 건 설 노 련	16	2,600	2,191	409
	의 료 산 업 노 련	8	3,809	1,190	2,619
	정 투 노 련	24	12,707	11,303	1,404
	예 능 인 노 련	22	2,518	1,686	832
	한 교 노 조	1	25,060	9,960	15,100
	식 품 산 업 노 련	46	10,085	6,594	3,512
계		1,529	685,147	554,880	130,267
민 주 노 총	민 주 노 총(직 할 노 조)	157	17,602	11,964	5,638
	연 론 노 련	73	19,793	18,388	1,405
	병 원 노 련	36	42,272	39,581	2,691
	전 국 대 학 노 조	10	8,831	5,988	2,843
	금 속 산 업 연 맹	240	183,190	174,259	8,931
	화 물 노 련	29	7,527	7,226	301
	시 설 관 리 노 련	33	1,685	1,440	245
	민 주 택 시 연 맹	139	21,298	21,065	233
	사 무 금 융 연 맹	223	75,355	46,748	28,607
	공 공 연 맹	235	128,582	113,182	15,400
	여 성 연 맹	18	2,937	30	2,907
	건 설 산 업 연 맹	115	34,393	32,938	1,455
	민 주 화 학 섬 유 연 맹	153	33,672	29,734	3,938
	전 교 노 조	1	93,375	44,775	48,600
	서 비 스 연 맹	67	14,635	7,562	7,073
상 급 단 체 미 가 입		914	43,936	34,534	9,402

주: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노동부.

<표 47>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65	22.4	23.5	19.1	11.6	11.7	11.2	-
1966	22.7	22.3	21.2	11.8	11.8	11.7	-
1967	22.2	22.1	22.5	12.4	12.4	12.5	-
1968	21.1	21.3	20.6	12.1	12.3	11.7	-
1969	21.3	21.3	20.9	12.5	12.9	11.6	-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6	22.7	14.1	15.8	19.0	10.6	17.2
1992	18.3	21.8	12.1	14.9	18.4	9.3	16.4
1993	17.2	20.5	11.3	14.1	17.4	8.8	15.6
1994	16.3	19.9	10.0	13.5	16.9	7.9	14.5
1995	15.2	18.7	9.3	12.6	15.9	7.4	13.8
1996	14.7	18.4	8.4	12.2	15.7	6.7	13.3
1997	13.5	17.5	7.0	11.2	14.9	5.6	12.2
1998	13.8	17.8	6.9	11.5	15.3	5.4	12.6
1999	14.9	18.7	8.4	11.8	15.5	6.2	11.9
2000	14.6	18.6	7.8	11.6	15.6	5.8	12.0
2001	14.5	19.0	7.4	11.8	16.0	5.6	12.0
2002	13.7	18.5	6.5	11.3	15.7	5.1	11.6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른 수치보정.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48> 주요 노사분규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0		322	133,916	4,487,151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2	93,859	1,580,404
2002.	1	12<11>	1,272<732>	31,160
	2	21<11>	16,615<732>	80,394
	3	30<11>	17,531<732>	212,450
	4	40<11>	18,021<732>	240,565
	5	172<11>	46,148<732>	395,669
	6	207<11>	65,334<732>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2	93,859	1,580,404
2003.	1	11<10>	1,324<714>	18,445
	2	17<10>	2,382<714>	28,041
	3	25<10>	5,214<714>	67,195
	4	56<10>	9,211<714>	91,460
	5	81<10>	13,954<714>	116,564
	6	118<10>	58,478<714>	245,832
	7	256<10>	123,144<71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9	290	126,992	1,148,515
	10	302	131,363	1,215,811
	11	308	131,775	1,270,270
	12	320	137,241	1,298,663
2004.	1	7<17>	20,023<492>	32,902
	2	10	20,083	54,455

주 : 1)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2)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 노동부.

<표 49>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88	-	33	1	49	5
1996	85	1	19	-	62	3
1997	78	3	18	-	51	6
1998	129	23	28	3	57	10
1999	198	22	40	-	89	47
2000	250	7	47	2	167	27
2001	235	6	59	-	149	21
2002	322	2	44	8	249	19
2003	320	5	43	3	249	20

자료: 노동부.

<표 50>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2003	320(100.0)	94(29.4)	124(38.8)	61(19.1)	41(12.8)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51>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산 업	제 조 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9.1)	9(10.2)	5(5.7)	9(10.2)
1996	85(100.0)	56(65.9)	8(9.4)	5(5.9)	9(10.6)	7(8.2)
1997	78(100.0)	42(53.8)	14(17.9)	4(5.1)	11(14.1)	7(9.0)
1998	129(100.0)	72(55.8)	37(28.7)	8(6.2)	9(7.0)	3(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2003	320(100.0)	167(52.2)	66(20.6)	29(9.1)	41(12.8)	17(5.3)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52>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체	노사 직접교섭	노조 자체종결	기 타
1996	83(100.0)	79(95.2)	2(2.4)	2(2.4)
1997	77(100.0)	55(71.4)	20(26.0)	2(2.6)
1998	121(100.0)	81(66.9)	37(30.6)	3(2.5)
1999	194(100.0)	147(75.8)	46(23.7)	1(0.5)
2000	250(100.0)	189(75.6)	37(14.8)	24(9.6)
2001	235(100.0)	154(65.5)	57(24.3)	24(10.2)
2002	322(100.0)	235(73.0)	66(20.5)	21(6.5)
2003	303(100.0)	201(66.3)	93(30.7)	9(3.0)

주: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53>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개소, %)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6.7	-
2003	5,751	5,292	92.0	6.4	-
2001. 1	5,218	21	0.4	5.8	3.9
2	5,218	129	2.5	5.8	4.8
3	5,218	286	5.5	5.4	5.0
4	5,218	628	12.0	5.4	5.2
5	5,218	1,262	24.2	5.7	5.4
6	5,218	1,803	34.6	5.7	5.5
7	5,218	2,589	49.6	6.1	6.1
8	5,218	3,187	61.1	6.1	6.0
9	5,218	3,720	71.3	6.0	5.9
10	5,218	4,072	78.0	6.0	5.9
11	5,218	4,588	87.9	6.0	5.9
12	5,218	4,857	93.1	6.0	6.0
2002. 1	5,401	74	1.4	7.4	-
2	5,401	154	2.9	7.0	-
3	5,401	420	7.8	5.5	-
4	5,401	630	11.7	6.1	-
5	5,401	1,435	26.6	6.6	-
6	5,401	2,103	38.9	6.7	-
7	5,401	2,887	53.5	6.9	-
8	5,401	3,517	65.1	6.9	-
9	5,401	4,161	77.0	6.9	-
10	5,401	4,377	81.0	6.9	-
11	5,401	4,655	86.2	6.8	-
12	5,401	4,991	92.4	6.7	-
2003. 1	5,751	107	1.9	5.0	-
2	5,751	214	3.7	5.9	-
3	5,751	413	7.2	6.0	-
4	5,751	718	12.5	6.5	-
5	5,751	1,306	22.7	6.7	-
6	5,751	1,856	32.3	6.7	-
7	5,751	2,491	43.3	6.7	-
8	5,751	3,372	58.6	6.6	-
9	5,751	4,503	78.3	6.5	-
10	5,751	4,700	81.7	6.5	-
11	5,751	4,958	86.2	6.5	-
12	5,751	5,292	92.0	6.4	-

자료: 노동부.

〈표 54〉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주: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5> 산업별 천인을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